

목 차

제 1 장 연혁 및 현황

I. 구 연혁 및 현황	43
1. 서대문구 연혁	43
2. 서대문구의 지역특성	44
3. 구정현황	45
II. 행정여건	48
1. 행정조직 및 인력	48
2. 재정규모	51
III. 의회연혁 및 현황	52
1. 지방의회의 연혁	52
2. 서대문구 의회연혁	53
3. 의회의 기능	54
4. 의회현황	55
5. 사무국조직 및 직원현황	56
6. 의회청사 현황	56

제 2 장 의회운영

I. 본회의 운영	59
1. 의의 · 집회 · 회기	59
2. 구 성	60
3. 현 황	61

II. 위원회 운영	68
1. 의회운영위원회	68
2. 행정관리위원회	76
3. 복지건설위원회	102
4. 특별위원회	121

제 3 장 기타 분야별 활동

I. 구정질문	157
1. 의 의	157
2. 현 황	157
3. 구정질문 및 답변	158

II. 행정사무 감사	235
-------------------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의회운영위원회	235
2. 행정관리위원회	238
3. 복지건설위원회	275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1. 의회운영위원회	299
2. 총무위원회	300
3. 시민건설위원회	324

III. 민원처리	345
1. 현황	345
2. 청원처리	345
3. 진정처리	346

IV. 의원세미나	349
1. 의원세미나	349

제 4 장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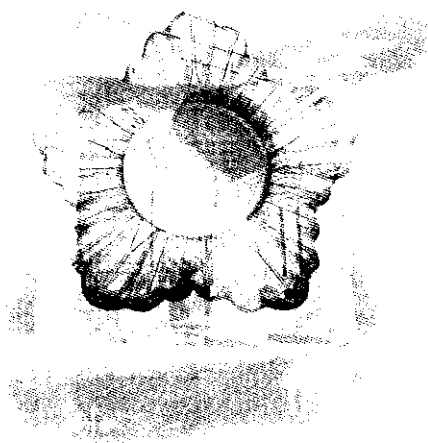
I. 역대 시·구의원 명단	353
II. 직능·유관단체 현황	357
III. 유관기관 전화번호 안내	361
1. 서대문구의회·구청	361
2. 서울시 민원전화	367
3. 서울시 각구청·구의회	368
4. 타구의회	369
5. 서울특별시 의회	370
6. 기타 유관기관	371

제 1 장 연혁 및 현황

I. 구 연혁 및 현황

II. 행정여건

III. 의회 연혁 및 현황



제 1 장 연혁 및 현황

I. 구연혁 및 현황

1. 서대문구 연혁

서대문 지역은 멀리 석기시대로부터 씨족끼리 취락을 이루며 농경과 수렵·어로활동 등을 통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온 곳으로, 당시 유물로 신촌에서 흑요석과 옥수석기 등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B.C 18년에 백제의 땅이었으나, A.C 475년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함에 따라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A.D 553년에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양군으로, 고구려시대에는 12목의 하나인 양주로 개칭되었으며, 문종 21년(A.D 1087년)에는 3소경제도를 채택하여 양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태조는 한양을 한성부로 개칭하고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대문구는 서부에 속하여 반송방, 반석방, 상평방, 연희방, 영은방의 일부지역으로 중국과의 교류시 진입로 역할을 하였다.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되면서 지금의 서대문구는 한성부와 경기도 고양군에 각각 분리 편입되었다. 1943년 6월 10일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서대문구역소가 경성부내에 설치되었으며, 1945년 10월 6일 서대문구역소를 서대문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6년 8월 15일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고, 그해 9월 18일 서울시가 경기도에 관할에서 분리되었고,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1946년 10월 일본식 동명 변경에 따라 정(町)을 동(洞)으로, 정목(丁目)을 가(街)로 통(通)을 로(路)로 고쳤으며,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은 평면 전부를 서대문구로 편입하여 은평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2년 12월 28일 대신동을 신설하고, 1964년 6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의 노고산동과 대현동 일부지역이 마포구로 편입되고, 마포구의 아현동 일부지역을 서대문구로 편입하였으며 1964년 10월 29일 안산, 녹번, 대광, 홍은동을 각각 1,2동으로 분리하여 행정구역 동수가 53개동이 되었다.

1973년에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대문구에 포함되어 진관동을 신설하였고, 마포구의 동교동, 서교동 일부가 서대문구에 편입되고, 서대문구의 성산동, 연희동 일부가 마포구로 편입되었다.

1975년 10월 구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 관할에 전례없는 변동이 일어났다. 즉 서대문구 관할의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행촌동, 송월동, 홍파동, 평동과 교남동, 교북동, 현저동, 충정로1가의 각 일부를 종로구에 넘겨 주었으며,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2가, 중림동과 의주로1가, 충정로1가, 합동, 충정로3가, 만리동 1,2가의 각 일부를 중구에 넘겨 주었으며, 상암동, 성산동과 수색동, 중동, 남가좌동, 연희동 각 일부를 마포구로 넘겨 주었고 만리동 1,2가 일부를 용산구에 넘겨 주었으며, 마포구의 동교동 일부를 서대문구에 편입하였다.

1979년 10월 1일 은평구청 신설로 그동안 은평출장소 관내의 녹번동, 불광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수색동의 13개동이 서대문구 관할에서 제외되고 은평출장소를 폐지하였다.

1980년에는 홍은4동을 폐지하였고, 1983년에 홍제1동 일부를 홍제2동으로 편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대현동 일부를 북아현3동으로, 북아현3동 일부를 충정로3가에 편입하고 1998년 10월 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저동이 천연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서대문구는 면적 17.6km²에 21개동을 관할하면서 구정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민선 제2기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서대문구 지역특성

서대문구는 종로구 만세문 비각 도로원표로부터 3~5km 지점에 위치하여 구의 동쪽은 종로구와 중구에 접하여 있고, 남쪽은 마포구, 서쪽은 은평구와 마포구 일부지역, 북쪽은 은평구에 접하고 있으며, 동경 126° 54' 45" ~ 126° 58' 06" 와 북위 37° 33' 23" ~ 37° 36' 58"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평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안산 등 5개산을 중심으로 임야, 분지, 구릉지로 되어 있으며, 안산(295m, 270ha)을 중심으로 충정로, 신촌, 북아현, 연희지역의 일부가, 인왕산(338m, 108ha) 북서쪽에 홍제지역이, 백련산(224m, 81ha)을 중심으로 홍은지역이, 연희동 일부지역에 궁동산(104m, 13ha)이 북한산(229m, 115ha) 동남쪽 기슭에 홍

은지역이 접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찍이 전형적인 주거지역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및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이 8개교, 초·중·고등학교가 40개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는 생활권이 다핵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하고 있어 신촌지역은 외곽기능역할증대에 따라 부도심권으로 성장, 상권형성 및 문화의 거리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모래내지역은 농산물 직거래 시장으로, 북아현지역은 가구 및 드레스 전문상가로, 남·북가좌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 구정현황

가. 일반현황

1) 지리적 여건

가) 위치

구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 명	극 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화동 168-6	동단	서대문구 미근동 315-5	북위 37° 33' 33" 012 동경 126° 58' 08" 022	동서간 6.154km
	서단	서대문구 북가좌동 254-1	북위 37° 34' 23" 761 동경 126° 54' 04" 616	
	남단	서대문구 창천동 30-16	북위 37° 33' 08" 408 동경 126° 56' 09" 822	
	북단	서대문구 홍은동 산 1-70	북위 37° 36' 28" 동경 126° 56' 58" 225	

나) 면 적 - 17.6km²(시의 2.9%)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녹 지 지 역
15.62km ² (88.8%)	0.25km ² (1.4%)	1.73km ² (9.8%)

다) 주요시설

- 공공기관 - 84개소 (구청1, 동사무소21, 경찰청1, 파출소22, 소방파출소4, 우체국18, 기타17)
- 학 교 - 48개교 (대학8, 고등7, 중등13, 초등18, 외국인학교2)
- 의료시설 - 309개소 (종합병원2, 병의원275, 한의원72)
- 문 화 재 - 30개소 (국보1, 보물11, 사적6, 무형문화재3, 민속자료3, 유·무등6)
- 복지시설 - 221개소 (도서관1, 복지관3, 경로당70, 보육시설등 147)
- 도시기반시설
 - 도로연장 290km(도로를 17.6%)
 - 상수도 933.5km(보급률 100%)
 - 지하철 8.2km(2,3,5호선)
 - 도로포장 2.28km(포장률 93%)
 - 하수도 398km(보급률 100%)
 - 도시가스보급 105,000가구(보급률 81%)

2) 인 구

가). 인구추이

(단위 : 명)

연도	세 대	인 구			인구밀도 (km ² 당)	면 적 (km ²)	세대당 인 구
		계	남	여			
1987	101,387	405,330	202,434	202,896	22,930	17.68	4.0
1988	103,151	396,892	198,541	198,351	22,449	17.68	3.8
1989	105,970	395,685	197,606	198,079	22,368	17.68	3.7
1990	103,372	387,089	194,964	192,964	21,882	17.68	3.7
1991	127,136	392,586	196,281	196,305	22,193	17.69	3.1
1992	122,844	390,140	195,000	195,140	22,054	17.69	3.18
1993	123,155	381,905	190,864	191,041	21,589	17.69	3.10
1994	123,325	374,662	187,350	187,312	21,179	17.69	3.04
1995	125,996	371,449	185,556	185,893	20,998	17.69	2.95
1996	127,125	366,134	182,525	183,609	20,803	17.69	2.88
1997	125,092	358,995	178,743	180,252	20,397	17.69	2.87
1998	128,812	366,726	182,269	184,457	20,731	17.69	2.85
1999	129,403	371,240	184,227	187,013	20,985	17.69	2.86

주) 1990년까지는 인구조사 결과이며, 1991년 이후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임 (외국인 포함)

나) 동별인구 현황

(기준일: '99.12.31)

행정구역 (동 명)	합 계			세 대	한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71,240	184,227	187,013	129,403	365,783	181,484	184,299	5,457	2,743	2,714
흥정로동	8,912	4,515	4,397	3,381	8,804	4,453	4,351	108	62	46
천 연 동	21,372	10,561	10,811	7,800	21,226	10,490	10,736	146	71	75
북아현1동	11,478	5,649	5,829	4,361	11,429	5,631	5,798	49	18	31
북아현2동	10,642	5,177	5,465	3,914	10,612	5,166	5,466	30	11	19
북아현3동	15,721	7,803	7,918	5,500	15,638	7,756	7,882	83	47	36
대 선 동	9,270	4,321	4,949	3,657	8,468	3,909	4,559	802	412	390
창 천 동	12,323	6,062	6,261	5,009	11,932	5,845	6,087	391	217	174
연 회1동	16,613	8,259	8,354	5,914	16,282	8,801	8,201	331	178	153
연 회2동	13,116	6,534	6,582	4,311	12,585	6,263	6,322	531	271	260
연 회3동	14,022	6,926	7,096	5,396	12,735	6,300	6,435	1,287	626	661
홍 제1동	16,494	8,020	8,474	5,800	16,352	7,945	8,407	142	75	67
홍 제2동	13,195	6,606	6,589	4,584	13,083	6,546	6,537	112	60	52
홍 제3동	22,697	11,276	11,421	7,820	22,627	11,244	11,383	70	32	38
홍 제4동	17,225	8,435	8,790	5,686	17,098	8,371	8,727	127	64	63
홍 은1동	11,802	5,887	5,915	3,766	11,698	5,832	5,866	104	55	49
홍 은2동	21,577	10,809	10,768	7,719	21,499	10,766	10,723	78	33	45
홍 은3동	30,140	15,007	15,133	9,950	29,455	14,675	14,780	685	332	353
남가좌1동	19,682	9,859	9,823	7,127	19,618	9,825	9,793	64	34	30
남가좌2동	30,530	15,213	15,317	10,297	30,375	15,129	15,246	155	84	71
북가좌1동	21,192	10,609	10,583	7,037	21,130	10,590	10,540	62	19	43
북가좌2동	33,237	16,669	16,538	10,914	33,137	16,657	16,480	10	42	58

II. 행정여건

1. 행정조직 및 인력

가. 인력현황

- 기 구 : 5국 1소 1담당관 23과 21동
- 인 력 : 정원 1,237명, 현원 1,298명

(’99.12.31 기준)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전문직
계	정원	1,237	684	182	252	86	19	14
	현원	1,298	687	191	288	103	17	12
구	정원	739	336	118	203	62	11	9
	현원	823	377	122	230	77	10	7
동	정원	398	330	19	25	24	-	-
	현원	376	292	23	37	24	-	-
보건소	정원	73	8	45	15	-	-	5
	현원	72	7	46	12	2	-	5
구의회	정원	27	10	-	9	-	8	-
	현원	27	11	-	9	-	7	-

나. 행정구역

동 명	면 적(km ²)	행정조직	
		동	반
21개동	17.69	548	4,358
충 정 로 동	0.51	20	134
천 연 동	0.97	36	276
북 아 현 1 동	0.28	17	143
북 아 현 2 동	0.18	15	116
북 아 현 3 동	0.62	22	167
대 신 동	2.02	17	121
창 천 동	0.61	21	148
연 회 1 동	0.90	27	206
연 회 2 동	0.58	22	166
연 회 3 동	1.57	17	133
홍 제 1 동	0.64	24	185
홍 제 2 동	0.59	20	161
홍 제 3 동	0.82	36	267
홍 제 4 동	1.06	24	185
홍 은 1 동	0.38	20	129
홍 은 2 동	1.22	33	255
홍 은 3 동	2.07	38	337
남 가 좌 1 동	0.49	33	269
남 가 좌 2 동	0.79	38	349
북 가 좌 1 동	0.54	28	248
북 가 좌 2 동	0.85	40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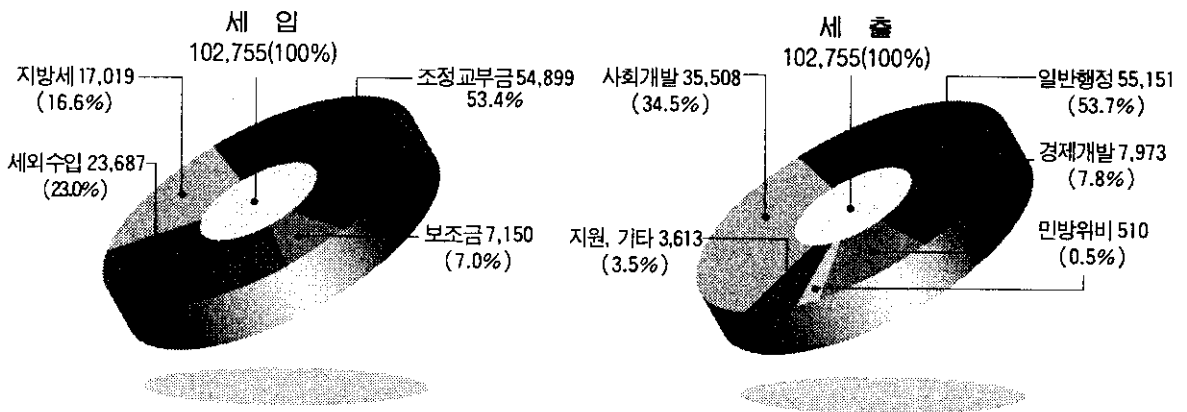
다. 구·동청사 현황

연번	구 분	주 소	대지면적 (m ²)	건물면적 (m ²)	건물구조	건축년도
1	구 청	연화동 168-6	5,120	9,685.09	철근,콘스라브	'77. 5.16
2	충 정 로 동	충정로3가 185-2	535.30	1,357.59	철근, 콘스라브	'97.11.15
3	천 연 동	영천동 101	663.70	882.49	철근, 콘스라브	'95. 6. 1
4	북아현 1 동	북아현 129-37	622.54	415.84	세, 벽돌,스라브	'79. 3.28
5	북아현 2 동	북아현 215-1	638.80	909.46	철근,콘스라브	'98. 9.21
6	북아현 3 동	북아현 1-90	476	637.33	철근,콘스라브	'75.12. 5
7	대 신 동	대현동 142-4	484	539.94	철근,콘스라브	'84.11. 4
8	창 천 동	창천동 4-62, 64	689.2	563.04	철근,콘스라브	'85.12.14
9	연 회 1 동	연회 122-17	478.70	579.30	철근,콘스라브	'86.12.20
10	연 회 2 동	연회 138-66	224	338.92	철근,콘스라브	'75. 1.10
11	연 회 3 동	연회 168-6	145.92	477.53	철근,콘스라브	'75. 5.16
12	홍 제 1 동	홍제 171-1, 4 173-9, 24	466	590.13	철근,콘스라브	'87.11.13
13	홍 제 2 동	홍제 85-1	501	764.40	철근,콘스라브	'92. 2. 5
14	홍 제 3 동	홍제 279-30	273	605.40	철근, 콘, 평	'95. 3. 1
15	홍 제 4 동	홍제 107-10	388.22	799.11	철근,콘스라브	'98. 6.30
16	홍 은 1 동	홍은 48-116,394 71-622~6	330	578.31	철근,콘스라브	'84. 1.11
17	홍 은 2 동	홍은 11-853	496	589.24	철근,콘스라브	'80.11.18
18	홍 은 3 동	홍은 425-3	396.80	785.44	철근,콘스라브	'80.10.13
19	남가좌 1 동	남가좌 250-6	347	599.37	철근,콘스라브	'86. 9.16
20	남가좌 2 동	남가좌 342-7, 37	433.10	1,313.77	철근,콘스라브	'99. 1.21
21	북가좌 1 동	북가좌 421-10,11	435.05	412.39	세,벽돌,평스라브	'73.11.28
22	북가좌 2 동	북가좌 324-13	408.06	644.92	철근,콘스라브	'87.11.23

2. 재정규모

2000년도 예산규모는 115,9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2,755백만원(88.6%), 특별회계 13,174백만원(11.4%)으로 편성하였다.

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아래 도표와 같다. (단위:백만원)



나.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0년도 규모는 13,174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구 성 비	비 고
계	13,174	100%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3,564	27.0%	
새 마을 소득 지원 사업 비 특 별 회 계	139	1.1%	
주 차 장 특 별 회 계	9,471	71.9%	

Ⅲ. 의회연혁 및 현황

1. 지방의회의 연혁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전의 지방자치는 고대관제나 지방제도를 통하여 그 연원을 상기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의 5부 3경 군현제나 신라의 9주 5소경 117군 283현 등과 고려시대에는 사심관제도와 상수리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중기 이후 향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말기의 을미개혁으로 생긴 향회제도가 있었으나, 일제 침략과 합병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된 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제도가 존재하였다. 제약적이거나 주민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려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유향소를 발전시킨 것으로 행정기관의 일부로 설치된 향청은 민선제와 명예직제로 구성되어 지방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방의회는 동일시 할 수 없다.

갑오경장 이후 1895년 11월 향회규정과 향약별무규정을 공포하여 각 지역단위로 주민이 선출한 공선인(公選人) 등으로 구성된 향회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주민이 당해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회의 구성이나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09년 한일합방이후 일제시대에 있어서 지방제도는 형식상으로 어느정도 지방자치와 비슷한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의 지방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현재의 의회기능을 수행한 것은 도회·부회·읍회이다.

1933년 4월 1일부터 도제(道制)가 실시되었는데 도(道)라는 집행기관에 대응하는 의결기관으로 도회(道會)가 구성되었으며, 부제(府制)는 오늘날의 시(市)와 같은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1930년에 의결기관으로 부회(府會)를 설치하였으며, 1931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읍면제가 시행되면서 그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결기관인 읍회(邑會)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의원의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으로써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도·읍·면에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6.25』로 말미암아 지방선거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지방의회 구성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이르러 비로소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1961년까지 9년간 3대에 걸친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된 바 있다.

- 제1대 : 1952~1956 (4년)
- 제2대 : 1956~1960 (4년)
- 제3대 : 1960~1961 (1년)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혁명』과 더불어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전면적으로 해산되었다.

이러한 지방의회 수난 속에서 제7차 개정헌법(1972. 12.27)에서 다시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동법 부칙 제10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 가능성은 아주 말살되었으며 지방자치의 암흑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제8차 개정헌법(1980.10.27)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 가능성에 일말의 희망이 비쳐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여·야 간에 정치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도 끝내 지방의회 부활을 보지 못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민주화의 열망속에 이룩된 제9차 개정헌법(1988.2.22일자 시행)에서 그러한 제한규정(지방의회 구성의 유보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정지방자치법이 1988. 5. 1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서대문구 의회연혁

서대문구의회는 관내 22개동에서 당선된 29명의 의원으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서대문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제2대의회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에 의거 1995년 7월 1일 구성하였으며, 제3대 의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가 개정되어 의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관내 21개동에서 당선된 21명의 의원으로 1998년 6월 4일 동시선거에 의거 1998년 7월 1일부터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다.

3. 의회의 기능

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의결권

- 구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구 예산안 심의·확정
- 구 결산검사 승인 등

나. 행정감사권

-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다. 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
- 회의의 개·폐와 회기 결정
- 질서유지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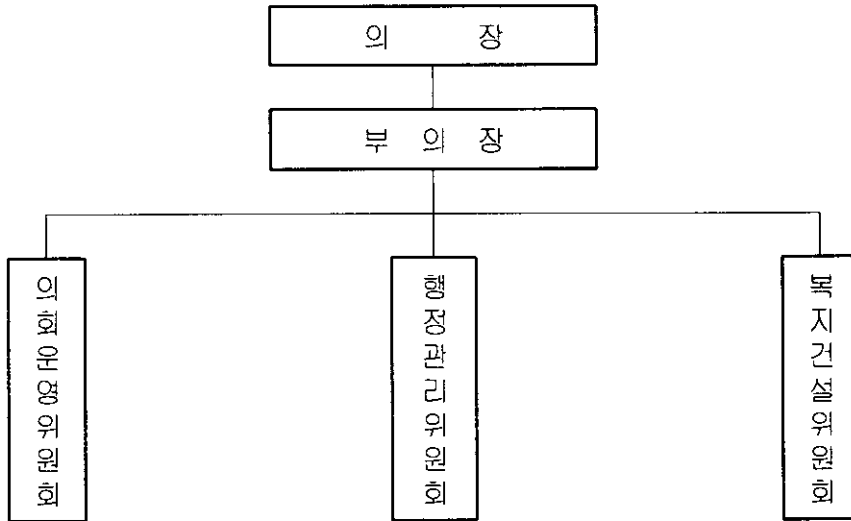
라. 청원의 수리

마.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요구

바. 의견서, 건의안 등 제출

4. 의회현황

가. 의회조직



나. 구성

- 의원 : 총21명
- 의장단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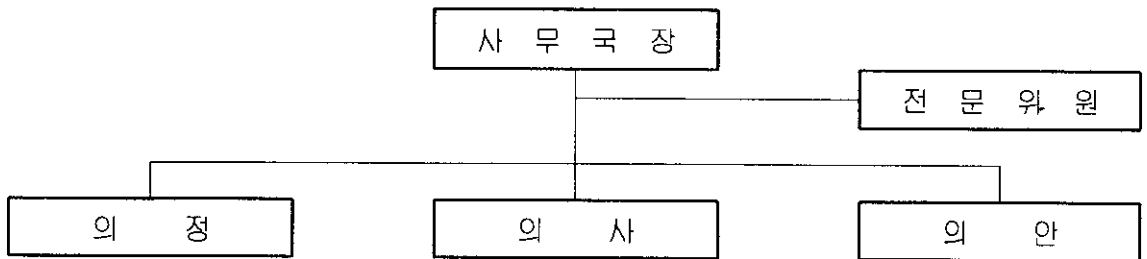
구분	직 위	성 명	경 력	출 신 동	재임기간
3대2기	의 장	오환인	2선	북가좌 1동	2000. 7. 8 ~ 현재
	부의장	김종철	2선	창 천 동	2000. 7. 8 ~ 현재

-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연번	위원회 명칭	위원수	상임위원장	소 관 업 무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진수의원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관리위원회	10명	최광진의원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10명	허준구의원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사무국조직 및 직원현황

가. 사무국 조직



나. 사무국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별 정 직				가 능 직					
		4급	6급	7급	8급	9급	5급	7급	8급	9급	운전	필기	방호	전기	기계	사역
정 원	27	1	3	3	2	1	2	2	2	2	2	2	1	1	1	2
현 원	27	1	3	6	1		2	2	2	2	2	2	1			2
과부족				+3	-1	-1				-1						

6. 의회청사 현황

가.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나. 면 적 : 345평 (3층 201평, 4층 143평)

【구의회 청사 현황】

(단위:평)

3층 (201)	의장실	부의장 실	부속실	제1 회의실	제2 회의실	사무국	사무 국장실	전문 위원실	자료실	방호원 실	복도 기타
	13.8	11	4.6	23	23	32	11	8.6	9	4	61
4층 (143)	본회의장		방청석		위원장실(3)		의원휴게실		복도·기타		
	65		10		9		1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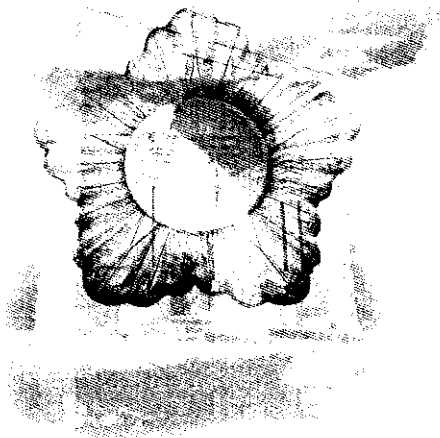
※ 25개의회 평균 의사당면적 : 551평 (의원1인당평균 면적: 26.88평, 우리구의회 - 16.38평)

※ 보건소이전후 의사당면적 : 779평 (의원1인당평균 면적: 37평)

제 2 장 의회 운영

I. 본의회 운영

II. 위원회 운영



제 2 장 의회운영

I. 본회의 운영

1. 의의·집회·회기

가. 의 의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되며,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집 회

-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한다.
- 회기기간에는 본회의와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폐회기간에도 본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의장 및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다. 회 기

-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하며, 지방의회는 정기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정례회 년 2회(6월 21일, 12월 1일) 매년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기는 정례회의 경우 시·도의회는 40일, 시·군·구의회는 3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도 시·도의회는 120일, 시·군·구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구 성

제3대 1기 의회가 1998년 7월 1일 구성되어 2000년 7월 7일 만료되었고 제3대 2기 의회는 2000년 7월 8일 구성되었으며 의장단 및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의 장 단		의 원	비 고
반기별	기 간	의 장	부의장		
제3대 1기	1999. 7. 1 ~ 2000. 7. 7	김정현 의 원	기창표 의 원	유규상 이기봉 김화형 전성장 김대봉 김종철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이문복 김영일 이진수 최용완 최광진 조재구 정일출 오환인 허준구 우유근 의원	총 21명
제3대 2기	2000. 7. 8 ~ 현재	오환인 의 원	김종철 의 원	상 동	총 21명

※ '99. 6. 16 임재선 의장의 사임에 따라 '99. 6. 24 제3대 1기 의장단 재구성

※ 2000. 6. 8 남가좌2동 보궐선거 실시로 우유근의원 당선

3. 현 황

가. 안건처리 현황

연 번	구 분	회의 일수	계	조 례 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요구안)	기타 안건
				소계	제정	개정	폐지	부결 (철회)						
	계	90	58	30	8	17	4	1	3	1	4	2	4	14
1	제70회 임사회	9	8	4	1	1	1	1	1	-	-	2	1	-
2	제71회 임사회	6	14	8	1	5	2	-	-	-	2	-	1	3
3	제72회 임사회	6	5	3	1	2	-	-	-	-	-	-	-	2
4	제73회 정기회	30	13	5	1	4	-	-	2	1	-	-	1	4
5	제74회 임사회	6	4	4	2	2	-	-	-	-	-	-	-	-
6	제75회 임사회	7	4	2	1	-	1	-	-	-	-	-	-	2
7	제76회 임사회	8	6	4	1	3	-	-	-	-	-	-	-	2
8	제77회 1차 정례회	18	4	-	-	-	-	-	-	-	2	-	1	1

나. 집회현황

회 기 별	집회공고일	개 회 일	폐 회 일
제70회 임사회	'99. 7. 15	'99. 7. 21	'99. 7. 29
제71회 임사회	'99. 9. 7	'99. 9. 13	'99. 9. 18
제72회 임사회	'99. 10. 25	'99. 11. 3	'99. 11. 8
제73회 정기회	'99. 11. 19	'99. 11. 25	'99. 12. 24
제74회 임사회	2000. 1. 18	2000. 1. 24	2000. 1. 29
제75회 임사회	2000. 3. 11	2000. 3. 18	2000. 3. 24
제76회 임사회	2000. 5. 15	2000. 5. 23	2000. 5. 30
제77회 제1차 정례회	2000. 6. 15	2000. 6. 21	2000. 7. 8

다. 회기별 집회요구 현황

회 기 별	집회공고일	집회 요구자	집회요구 이유
제70회 임시회	'99. 7. 15	정혜연 의원 외 7인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
제71회 임시회	'99. 9. 7	최광진 의원외 7인	구정질문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2건
제72회 임시회	'99. 10. 25	최광진 의원외 7인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9건
제73회 정기회	'99. 11. 19	지방자치법 제38조	'99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2000년 세입, 세출예산안의 9건
제74회 임시회	2000. 1. 18	이기봉 의원외 8인	2000년 구정업무보고청취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
제75회 임시회	2000. 3. 11	최광진 의원외 6인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4건
제76회 임시회	2000. 5. 15	최광진 의원외 6인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외 5건
제77회 제1차 정례회	2000. 6. 15	지방자치법 제38조	2000년도 행정사무 및 '99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라. 의회운영 현황

○ 본회의

('99. 7 ~ 2000. 7)

개 회 회 수			개 회 일 수		
계	정기(정례)회	임시회	계	정기회	임시회
8회	2회	6회	90일	48일	42일

○ 상임위원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관리(총무)위원회	복지건설(시민건설)위원회	비고
86차	23차	32차	31차	

○ 특별위원회

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도시가스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비고
34차	11차	12차	10차	1차	

마. 본회의 주요안건 처리내용 (제70회 ~ 제77회)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0회 임사회	'99. 7. 21 ~ '99. 7. 29 (9일간)	제1차 7. 21 (수)	1. 제70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2.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제70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행정관리국장 원안가결 " " 오환인 허준구
		제2차 7. 27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3차 7. 28 (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
		제4차 7. 29 (목)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 정보화 촉진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 및 구제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 조례안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 "
제71회 임사회	'99. 9. 13 ~ '99. 9. 18 (6일간)	제1차 9. 13 (월)	1. 제7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7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 유규상 기창표
		제2차 9. 16 (목)	1. 구정에 관한 질문 (권성장, 한한열, 김화형, 정일출, 김대봉, 이기봉)	
		제3차 9. 17 (금)	1. 구정에 관한 질문 (정혜연, 윗중완, 정일출, 유규상)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1회 임시회	'99. 9. 13 ~ '99. 9. 18 (6일간)	제4차 9. 18 (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및원인자부담금징수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9. 삼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 화재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견 12.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견 	<p>원안가결</p> <p>"</p> <p>"</p> <p>"</p> <p>"</p> <p>"</p> <p>"</p> <p>"</p> <p>"</p> <p>찬성의견채택</p> <p>"</p> <p>원안가결</p> <p>"</p>
제72회 임시회	'99. 11. 3 ~ '99. 11. 8 (6일간)	제1차 11. 3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2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72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p>원안가결</p> <p>이기봉 김화형</p>
		제2차 11. 6 (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사당 개·보수공사 세부추진 계획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p>원안가결</p> <p>"</p> <p>"</p> <p>"</p>
		제3차 11. 8 (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p>수정안가결</p> <p>"</p> <p>원안가결</p> <p>"</p>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73회 정기회	'99.11.25 ~12.24 (30일간)	제1차 11.25 (목)	1. 제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견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 4. 1998년도결정승인안제안설명 5.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변경의견 9. 제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견	원안가결 행정관리국장 " 재무국장 " 원안가결 정혜연외10명 원안가결 전성장 김대봉
		제2차 12.10 (금)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제3차 12.13 (월)	1. 구청에 관한 질문 (한한열, 최태중, 이기봉, 김화형, 이진수, 기창표, 정일출, 김대봉)	
		제4차 12.14 (화)	1. 구청에 관한 질문 (전성광, 이기봉, 최광건)	
		제5차 12.15 (수)	1. 구청에 관한 질문 (기창표, 정일출, 김대봉)	
		제6차 12.18 (토)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견 2.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7차 12.20 (월)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견 2. 2000년도노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보고의견 3.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 계획보고의견 4. 2000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보고의견 5.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견 6. 2000년도서대문구도노골착복구기금운용계획 보고의견 7.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견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 " " 건설교통국장 "
		제8차 12.21 (화)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0년도예산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9차 12.24 (금)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안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2000 서대문구 의정지

회의명	회기	차수	주요내용	비고
제74회 임사회	2000.1.24 ~1.29 (6일간)	제1차 1.24 (월)	1.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 " 김종철 정혜연
		제2차 1.29 (토)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가결
제75회 임사회	2000.3.18 ~3.24 (7일간)	제1차 3.18 (토)	1. 제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2. 제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한한열 최태중
		제2차 3.24 (금)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 "
제76회 임사회	2000.5.23 ~5.30 (8일간)	제1차 5.23 (화)	1.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외)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원(최광진의원 외 5인 발의) 3.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사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문복 김영일
		제2차 5.24 (수)	1. 구정에 관한 질문 (전성장, 이진수, 김영일, 한한열, 김종철, 정혜연)	
		제3차 5.25 (목)	1. 구정에 관한 질문 (유규상, 한한열, 김종철, 이진수)	
		제4차 5.30 (화)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원안가결 " " " " " "

회의명	회 기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7회 제1차 정례회	2000. 6.21 ~ 7. 8 (18일간)	제1차 6. 21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9회계년도예산비지출승인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우유근의원 재무국장제안설명 " 원안가결 김대봉의원외6인 이관수 최용완
		제2차 7.5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에 관한 질문 (최광진, 김화형, 한한열) 	
		제3차 7.6 (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청에 관한 질문 (최광진, 김대봉) 	
		제4차 7.7 (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제출) 3. 1999회계년도예산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5. 의장·부의장선출의건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 " 의장:오환인 부의장:김종철
		제5차 7.8 (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보류 보류

II. 위원회 운영

1. 의회운영위원회

가. 구 성

구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비고
제3대 1기	1999. 7. 1 ~ 2000. 7. 7	조재구 의원	최광진 의원	정혜연 허준구 이문복 이기봉 김종철 김대봉 최태중 의원	총 9명

나. 인건처리 현황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9회 임시회 폐회중('99. 7. 15) 최초 개의회 제7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의사일정협의의견 등 29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등 의회운영전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원	기타
	개정	제정							
29	3	1	1	1	1	-	3	-	19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9. 7. 15)	1.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99. 7. 21 ~ 7. 29 (9일간)	원안가결
제70회 임시회	제1차 (’99. 7. 2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 고 자 : 최홍진 사무국장	
	제3차 (’99. 7. 29)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에대한반안동의의견	원안가결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99. 9. 7)	1. 제7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99. 9. 13 ~ 9. 18 (6일간)	원안가결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9.10.22)	1.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99. 11. 3 ~ 11. 8 (6일간)	원안가결
제72회 임시회	제1차 (’99. 11. 4)	1. 1999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견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 세부추진계획안	원안가결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원안가결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99. 11. 19)	1. 제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99. 11. 25 ~ 12. 24 (30일간)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변경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3회 정기회	제1차 (’99. 11. 26)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 고 자 : 금동영 사무국장	
	제2차 (’99. 12. 10)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제안설명 : 배순태 재무과장 2. 2000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3차 (’99. 12. 23)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원안가결
제73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2000. 1. 8)	1.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2000. 1. 24 ~ 1. 29 (6일간)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4회 임시회	제1차 (2000. 1. 28)	1. 2000년도의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대상부서 : 의회사무국 - 보 고 자 : 정희용 사무국장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2000. 3. 15)	1. 제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2000. 3. 18 ~ 3. 24 (7일간)	
제75회 임시회	제1차 (2000. 3.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제2차 (2000. 3. 23)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 부추진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 3 차 (2000. 5. 15)	1.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 일정협의의건 - 의사일정 협의 : 2000. 5. 23 ~ 5. 30 (8일간)	원안가결
제76회 임시회	제 1 차 (2000. 5. 2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3.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채택의건 - 내용 : 감사계획서작성·채택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제 2 차 (2000. 6. 16)	1.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의사일정 협의 : 2000. 6. 21 ~ 7. 7 (17일간)	원안가결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2000. 7. 3)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견 - 내용 : 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 3.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변경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라. 의안심사 내용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0. 1. 18 이기봉 의원의 1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2000. 1. 18 제73회 정기회 (폐회중)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1999.12.31)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안 설명 및 제1조, 제3조, 제7조)
-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개정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이기봉 의원의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사 채택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0. 1. 18 이기봉 의원의 1인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1. 18 제73회 정기회(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1999.12.31)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범위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개정
(안 제2조 제3호)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이기봉 의원의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심사 채택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

1. 제 안

2000. 3. 22 최광진 의원의 1인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3. 22 제7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9.08.31)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1999.12.31)되어 지방 의회의 정례회의를 연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례회의를 매년2회 개최하고, 정례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
-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1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8월 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
-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최광진 의원의 1인이 발의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0. 5. 8 정혜연 의원의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5. 26 제7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 소관 각국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명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내용중 제2호 『총무위원회』 를 『행정관리위원회』 로 제3호 『시민결설위원회』 를 『복지건설위원회』 로.
-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내용중 제2항 제2호 제2호 『총무위원회』 를 『행정관리위원회』 로 제3호 『시민결설위원회』 를 『복지건설위원회』 로 각각 개정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정혜연 의원의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2. 행정관리위원회

가. 구 성

구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비고
제3대 1기	1999. 7. 1 ~ 2000. 7. 7	최용완 의원	김대봉 의원	유규상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기창표 김정현 이기봉 오환인 의원	총 10명

나. 안건처리 현황

행정관리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 (1999. 7. 12) 최초 개의하여 제77회 제1차 정례회까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3대 전반기 후기 원 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구행정사무감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계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원	기타
	개정	제정 (폐지)							
32	10	5 (1)	-	4	-	-	2	-	11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0회 임시회	제1차 (’99. 7. 1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대상부서 : 기획예산과 - 보 고 자 :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제2차 (’99. 7. 23)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대상부서 : 재무과 - 보 고 자 : 배순태 재무과장	
	제3차 (’99. 7. 24)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내 용 :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제4차 (’99. 7. 2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및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에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71회 임시회	제1차 (’99. 9. 14)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99. 9. 15)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72회 임시회	제1차 (’99. 11. 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수정안가결
	제2차 (’99. 11. 5)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3회 정기회	제1차 (*99. 11. 26)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정순영 감사담당관, 장원석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배순태 재무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2차 (*99. 11. 27)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3차 (*99. 12. 6)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차 (*99. 12. 8)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0년도예산안 - 보고자 : 정순영 감사담당관 장원석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5차 (*99. 12. 9)	1. 2000년도예산안 - 보고자 : 배순태 재무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6차 (*99. 12. 10)	1. 2000년도예산안 - 보고자 :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제7차 (*99. 12. 11)	1. 2000년도예산안 - 내 용 : 행정관리위원회소관 계수조정	수정안가결
	제8차 (*99. 12. 1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차 (*99. 12. 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10차 (*99. 12. 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1차 (*99. 12. 23)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채택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4회 임사회	제1차 (2000. 1. 25)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정순영 감사담당관, 장원석 총무과장, 이혜경 시책추진반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제2차 (2000. 1. 26)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배순태 재무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서영현 세무2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3차 (2000. 1. 27)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진준희 의약과장,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류
제75회 임사회	제1차 (2000. 3. 20)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회의에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
	제2차 (2000. 3. 21)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76회 임사회	제1차 (2000. 5. 2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2차 (2000. 5. 2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견	원안가결 심사채택
제76회 임사회 (폐회중)	제3차 (2000. 6. 16)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견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2000. 6. 2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정순영 감사담당관, 장원석 총무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제2차 (2000. 6. 23)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배순태 재무과장 변영범 세무1과장 박 활 지적과장	
	제3차 (2000. 5. 29)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견 - 보고자 : 임진숙 보건행정과장 백영주 보건지도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원안가결
	제4차 (2000. 5. 29)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견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작성채택

라. 의안심사 내용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1. 제 안

'99. 7. 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7. 26 제70회 임시회 제 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시·군·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의거 지역정보촉진협의회를 구성, 지역정보센터설치운영 등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정보촉진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3장)
 - 구성 : 10인 이내
-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운영 및 전산정보자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및 제5장)
- 업무정보화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및 컴퓨터 시스템 운영 (안 제6장 및 제7장)
-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장 및 제9장)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7.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7. 26 제70회 임시회 제 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북아현2동, 홍은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에 대하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장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는 인장업 신고업무(별표중 제1호)를 삭제함 (사무위임조례)
-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에 대하여 구청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별표중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동장(북아현2동장,홍은1동장 제외)”로 함 (사무위임조례)
-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를 “동장(북아현2동장,홍은1동장 제외)”로 함 (구세조례)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9. 14 제7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구조조정안에 맞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그 분장사무중 민방위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민방위교육,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에 이관하고 병사업무를 민원봉사과 이관함. (안 제4종, 제5조)
-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토목과를 토목하수과로 하고 하수과를 삭제하며 그 분장사무중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관리 업무를 재무국(재무과)에 이관함. (안 제6조, 제9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9. 14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구조조정안에 맞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총정원 : 1,247명 → 1,135명 (감 112명)
 - 집행기관 : 1,224명 → 1,108명 (감 116명)
 - 의회사무국 : 23명 → 27명 (증4명)
- 경과조치 : 1999년도 감축인원 27인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공무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2000년도 감축인원 40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공무원은 2001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부칙 제2조, 제3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 제 안

'99. 8.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9. 15 제71회 임시회 제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38-4외 6필지 구유재산 대지 및 도로 158.9㎡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1. 제 안

'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9. 15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지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상사무 기준, 선정기준, 지휘·감독 및 이의신청 등 우리구 민간위탁 추진에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대상사무 선정기준은 단순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함. (안 제4조)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안 제6조)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구의회의원, 소관국·과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함 (안 제7조)
-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함. (안 제11조)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함. (안 제13조)
-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음. (안 제17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 제 안

'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9. 15 제7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마약법시행 제9조 제2항 “제1항의 용지교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보건소수가조례중 관련 규정인 별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란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별표중 6. 제증명 확인발급 [가.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란을 삭제함.
(제2조 제2항 관련)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중 “의료부조 대상자”를 삭제함. (안 제3조 제1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10.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11. 4 제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의 사회경제 활동에 따라 전반적인 통장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통장에 위촉되면 관할 통의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어, 활동적인 위촉대상 통장연령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97. 7. 1 통합 전·출입시행으로 사실상 통장의 통·반적부 관리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통장 위촉대상 연령 상향조정과 자격기준 완화
-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함.
(안 제5조 제2항)
- 통장의 임무중 "통·반적부 관리"를 삭제함. (안 제7조 제1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 제 안

'99. 11.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12. 6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나. 주요골자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1-2외 2필지 구유재산 대지 1,174㎡를 대법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 하고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I. 제 안

'99. 11.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12. 6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

나. 주요골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214외 7필지 구유재산 학교용지 3,531㎡는 이화학당에서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코자 하며,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46-23외 6필지 대지 등 1,826㎡는 재건축조합설립인가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근거에 의거 매각처분코자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11.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12. 16 제73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우리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총정원 : 1,135명 → 1,152명 (증 1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108명 → 1,125명 (증 17명)
- 부칙 제2조중
 - 표1의 정원의 총수 "1,220명"을 "1,2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93명"을 "1,210명"으로 하고,
 - 표2의 정원의 총수 "1,180명"을 "1,1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53명"을 "1,170명"으로 한다.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11.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12. 17 제73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 대부·매각제도를 '99. 4. 30일 자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고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율, 대부료의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정함으로써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균형을 기하여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제21조의 2)
 -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 : 10년 연 5% → 20년 연 5%
 -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10년 연 5% → 20년 연 5%
 - 당해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 주택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인하 (제22조 제6항)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 → 1000분의 15
- 주택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율 인하 (제27조 제10항)
 - 연 15% → 연 10%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99. 11. 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9. 12. 22 제73회 임시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개정이유

도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분할납부 등을 개정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점용료 조정, 감면, 반환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명을 개정함 (안 조례명)
 - 현행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수료
 - 개정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 (안 제2조)
 -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수 있는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규정을 신설 (안 제4조)
 - ※ 변상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20% (법 제80조의2, '99. 2. 8개정) 종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 점용료의 110%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변경없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연 8%의 이자율 적용(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 점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함.
-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비고 제4호)
 - 표시 총면적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1. 제 안

2000. 3.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3. 21 제7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폐지이유

1994년 정부의 국제화 추진계획에 의거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화 추진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를 준칙안으로 서울특별시 각 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98. 4. 6 서울특별시 세계화 추진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우리구의 국제교류 사업중 특별히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적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1. 제 안

2000. 5.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5. 27 제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9.08.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0. 5.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5. 27 제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본인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등록 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진함. (안 제2조 및 제2조의 2)
-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면제로 전환. (안 제8조)
-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 (안 제8조)
-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 (안 제10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조항중 "5세대"를 "2세대"로 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본문단서 조항의 인용조문중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로 함. (안 제13조 제1항)
- 아파트형 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중 인용조문을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하의"를 "동법 제28조의2의"로 함. (안 제17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중 인용조문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로 함. (안 제21조의2)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 안

2000. 5.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5. 29 제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특별휴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안 제24조 제2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함.
(안 제23조 제4항 신설)
- 퇴직준비휴가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함 (안 제24조 제8항)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대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을 “7일”로 하고 경조사별 대상에 여계친족도 포함함.
(3촌이내의 친족 모두 포함) 【별표3】

2.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및설치운영조례안 ◆

1. 제 안

2000. 1. 1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0. 1. 27 제7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보류되었다가 2000. 7. 3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며 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 기반 구축
-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중단 논란 불식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함(안제4조)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함(안제6조)
-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안제6조)
-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안제7조, 안제10조)
-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안제11조)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안제13조)
-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안제14조)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안제15조, 안제16조)
 -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15인 이상 25인 이내)(안제17조)
 -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제17조)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안제23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3. 복지건설위원회

가. 구 성

구 분	운영기간	위원장	간 사	위 원	비 고
제3대 1기	1999. 7. 1 ~ 2000. 6. 30	이진수 의원	최태중 의원	허준구 김종철 이문복 최광진 김화형 전성장 김영일 정일출 의원	총10명

나. 안건처리현황

복지건설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부터 제7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안건과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결산안 등 현안업무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심의처리 하는 등 총19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였고 또한 매년 1회에 한하여 소관부서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 수행된 업무는 장려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효율적인 구정실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계	조 례 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예산안	청원	기타
	제정	개정	폐지							
19	3	4	2	1	1			4		4

다. 회기별 안건 처리내용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0회	제 1 차 (’99.7. 2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재안설명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세부설명 : 주택과장 정일택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 2 차 (’99.7. 23)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세부설명 : 토목과장 서창기 하수과장 허찬욱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제 3 차 (’99.7. 24)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수정안 가 결
	제 3 차 (’99.7. 2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71회	제 1 차 (’99. 9.1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 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2 차 (’99. 9.15)	1.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찬성의견채택 찬성의견채택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2회	제 1 차 (*99.11. 4)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계 류 원안가결
	제 2 차 (*99.11. 5)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채택의견	수정안가결 작성채택
제73회	제 1 차 (*99.11.26)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대상부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 보고자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주택과장 정일택, 주택개발과장 허한욱 도시정비과장 정시운, 건축과장 박영규	
	제 2 차 (*99.11.27)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 보고자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주택과장 정일택, 주택개발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정시운, 건축과장 박영규	
	제 3 차 (*99.11.2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수정안가결
	m제 4 차 (*99.12. 8)	1. 1998년도결산승인안 - 제안설명 : 재무과장 배순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제안설명 : 재무과장 배순태 3. 2000년도예산안 - 제안설명 :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 세부설명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청소행정과장 부성철	원안가결 원안가결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3회	제 5 차 (’99.12. 9)	1. 2000년도예산안 - 세부설명 : 주택과장 정일택,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건축과장 박영규	
	제 6 차 (’99.12.10)	1. 2000년도예산안 - 세부설명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공원녹지과장 정시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지도과장 심규표	
	제 7 차 (’99.12.11)	1. 2000년도예산안 -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수정안가결
	제 8 차 (’99.12.16)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제 9 차 (’99.12.17)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현장확인 활동
	제 10 차 (’99.12.22)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
제74회	제 1 차 (2000. 1.25)	1. 2000년도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대상부서 : 생활복지국 - 보고자 : 사회복지과장 이경현, 환경위생과장 상병욱 청소행정과장 심규표, 지역경제과장 김진태	
	제 2 차 (2000. 1.26)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대상부서 : 도시관리국 - 보고자 : 주택과장 부성철, 주택개량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이규상, 건축과장 박영규	
	제 3 차 (2000. 1.27)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대상부서 : 건설교통국 - 보고자 : 토목하수과장 윤무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심성구, 교통지도과장 팽상욱	
	제 4 차 (2000.1.28)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수정안 가결

2000 서대문구 의정지

회기별	차 수	주 요 내 용	비 고
제76회	제 1 차 (2000. 5.27)	1.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원안가결
	제 2 차 (2000. 7.29)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견	작성채택

라. 의안심사내용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 ◆

1. 제안

1999. 7.10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폐지조례안은 1999. 7.26 제70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대문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각동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89. 6. 7부로 제정된 본 조례가 '97.12.31 부로 개정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및 제3조의 "권리의 포괄승계 등"의 조항에 의거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함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

19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 9.14 제7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하수도법의 개정 ('99. 8. 9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의 일부가 변경되었음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과태료 부과대상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법 제2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함.(안 제2조 제1항 4호)
- 2) “과태료의”를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의”로함.(안제5조, 제7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

19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 9.14 제7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의 일환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유료화계획 및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과 관련, 우리구에서도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내집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은 “100분의 30”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운영에 따를 추가비용 필요시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 제2항)
- 2) 위탁관리수수료를 분기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 운영경비 등의 지원을 위해 최초 개시한 주차장의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3)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근거를 두기 위하여 제5장 “용자”를 “용자 또는 보조”로함. (안 제19조, 20조, 제21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

1. 제안

19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 9.14 제71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본조례는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허가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 6.25일자(제210호)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건축법('99.2.8) 및 건축법시행령('99.5.9)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가 시조례에 통합운영토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99.7.31(조례 제3665호)자로 개정·공포시행(자치구조례 흡수통합)되었기에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를 폐지함.”

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건축허가수수료 및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제한 및 건축구조에 관한 규정

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제안

19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1999. 9.15 제71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나. 상세계획 결정(안) 입안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홍제상세계획구역	홍제동 330번지 일대	186,790㎡	
가좌상세계획구역	남가좌 295번지 일대	72,500㎡	
충정상세계획구역	미근동 21번지 일대	25,300㎡	
천연상세계획구역	천연동 89번지 일대	47,970㎡	
아현상세계획구역	북아현 998번지 일대	15,080㎡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채택, 가결하였음.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1. 제안

1999. 9. 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청취안은 1999. 9.15 제71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도시민의 자연휴식처로 보존하고 공원의 지정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용도지역 중 일부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함임.

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조서

연번	구분	용도지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1	기정	일반주거지역	연희동 산118번지 일대	107,426	궁동근린공원
	변경	자연녹지지역			
2	기정	일반주거지역	현저동 101번지 일대	108,682.8	독립근린공원
	변경	자연녹지지역			
3	기정	일반주거지역	창천동 4 - 55 일대	6,322	창천근린공원
	변경	자연녹지지역			
4	기정	일반주거지역	홍제동 454-2	9,888	홍제근린공원
	변경	자연녹지지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 가결 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 제안

1999.10.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11.4.5 제72회 임시회 제1, 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신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식경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신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함.(안제2조)
- 2) 입주대상 및 입주시설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안 제4조, 제6조)
- 3) 입주자의 부담금은 소정의 임대료(입주보증금 포함), 공공요금 등을 부담함.(안 제7조)
- 4)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제공, 경영기술 지원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

1999.10.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11.4 제72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서울시 행정규제정비 표준안』에 의한 '99. 행정규제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중 국공유지 점유권 인정면적완화와 가격평가 신청시 제출서류 등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1)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99.3.31일자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서 삭제되었음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국공유지 연고권 인정 면적을 165㎡에서 200㎡로 완화함.(안 제17조 제3항)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

1. 제안

1999.11.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12. 6 제73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맑은 공기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도시가스의 효율적인 보급 확대를 도모코자 '92년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 운용하던 중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2%를 상회하자 관련조례의 부칙규정에 의거 '98.12월말에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아직도 보급률이 극히 낮은 일부지역 등에 대해 설치비를 지속적으로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며,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 추진과 보다 합리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함. (안 제2조)
- 2) 기금의 용도는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및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에 한하여 사용함.(안 제3조)
- 3)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생활복지국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제7조)
- 4) 기금의 융자한도는 사용시설비 70% 이내로 하고 대부이자는 연 7%로 함.(안 제13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첨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

1999.11.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1999.12.16 제73회 정기회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9. 8. 9부로 개정되었음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폐기물을 적치할시에 적용되는 행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1) 사업장폐기물 범위를 "1회 1톤 이상 배출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에 의한 1주 1톤 이상 배출"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 개정 (안 제2조 제2호)
- 2) 건설폐기물 범위를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개정.(안제2조 4호)
- 3) 폐기물무단투기의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4)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폐기물을 적치할시 행위 규정을 마련 (안 제5조의3)
- 5)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 3항"으로 하고, "재생처리하는 자"를 "재활용하는 자"로 개정.(안 제10 제1항 제2호)

2.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사유지내의 각종 폐기물 적치에 따른 행위규정을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코자하는 조치로서, 조례의 목적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 ◆

1. 제안

1999.11.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동의안은 1999.12.17,22 제73회 정기회 제9,1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 이유

우리 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보다 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7조 규정에 의한 것임.

나. 주요 골자

가. 대상 사무 :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나. 시설 현황 : 13개소

다. 위탁 범위

- 공중화장실 건물 및 위생시설 유지관리(단, 화장실 시설비, 공공요금은 제외)
- 화장실 내 청결 및 쾌적한 환경 유지
- 화장실 소모품 비치 관리

라. 위탁 예정일 : 2000년 상반기

2. 심사결과

타구 사례를 미루어 보아 민간위탁시 청소 등 관리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민간위탁은 아직 이르다는 중론에 따라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함.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 제안

2000. 1.13 전성장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2000. 1.28 제74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21C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기금의 조성은 서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안제3조)
- 2) 기금의 용도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장애인 단체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자활지원과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제4조)
- 3)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제6)
 - (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분의 1이상을 반드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
 - (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명,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나 시설분야 종사자로 한다.

- 4)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안제7조)

2.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전성장”의원외 1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홍제 · 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

1. 제안

2000. 5. 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규약안은 2000. 5.27 제76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홍제 · 불광천유역에 위치한 서북지역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홍제 · 불광천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홍제 · 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홍제 · 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안 제4조)

가) 구성범위: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나) 추진사업(안 제10조)

- ①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사항
- ③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④ 홍제 · 불광천살리기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⑤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효력발생 : 각 자치단체의 의회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간 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 등에 고심함으로써 효력발생

2.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4.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점사와 때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하는 바,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명	활동기간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999. 7.21 1999. 7.26 ~ 1999. 7.28 (4 일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위원장 : 정혜연 의원 간사 : 유규상 의원 위원 : 김대봉 의원 최태중 의원 김영일 의원 최광진 의원 허준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999.11.25 1999.12.16 1999.12.17 1999.12.18 1999.12.20 (5 일간)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4. 2000년도예산안	위원장 : 이문복 의원 간사 : 유규상 의원 위원 : 이기봉, 김화형 의원 김대봉, 김종철 의원 정혜연, 한한열 의원 최태중, 김영일 의원 최광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0. 6.21 2000. 7. 4 (2일간)	1.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결 2.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	위원장 : 한한열 의원 간사 : 최태중 의원 위원 : 이기봉 의원 전성장 의원 김대봉 의원 최광진 의원 우유근 의원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7.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1999.7.26~28 제70회 임시회 제2~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예산규모 등 심의·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경비에 중점을 두어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Y2K대책비 등의 편성과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함.

나) 주요골자

○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안) (A=B+E)	기 정 예 산 액			금 회 추 정		비 고
		계 (B=C+D)	당초예산액 (C)	간주처리 (D)	예 산 액 (E)	증(△)감%	
총 계	116,996,601	108,122,567	96,387,478	11,735,089	8,874,034	8.2	
일 반 회 계	103,826,463	95,566,212	84,111,123	11,455,089	8,260,251	8.6	
특 별 회 계	13,170,138	12,556,355	12,276,355	280,000	613,783	4.9	
의료보호기금	2,809,819	2,801,032	2,801,032		8,787	0.3	
주민소득지원	683,339	637,490	637,490		45,849	7.2	
주 차 장	9,676,980	9,117,833	8,837,833	280,000	559,147	6.1	

다) 위원회별, 예산과목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단위:천원)

위원회별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예산과목	장 별			
	총액		103,826,463	95,566,212	8,260,251
운영위원회	소계		1,269,631	1,171,006	98,625
	일반행정	지방의회운영	11,269,631	1,171,006	98,625
총무위원회	소계		62,707,158	56,418,004	6,289,154
	일반행정	기획관리	25,835,252	24,014,775	1,820,477
		공보관리	3,670,156	2,469,237	1,200,919
		행정감사	81,284	81,284	
		내무행정	23,859,801	21,512,790	2,347,011
		재무행정	1,683,370	1,067,461	615,909
	사회개발	보건	3,064,533	2,792,695	271,838
		도시개발	203,166	173,166	30,000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413,455	410,455	3,000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3,896,141	3,896,141	
시민건설위원회	소계		39,849,674	37,977,202	1,872,472
	사회개발	보건	77,288	76,988	300
		생활환경	17,084,904	16,974,904	110,000
		공원녹지관리	2,293,323	2,069,455	223,868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장별	항별			
시민건설위원회	사회개발	일반사회복지	10,590,805	9,881,639	709,166
		주택사업	245,058	238,022	7,036
		도시개발	471,707	470,078	1,629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5,576,298	5,214,445	361,853
		치수및재해대책	153,480	153,480	
		도로관리	2,670,456	2,231,456	439,000
		교통행정관리	686,355	666,735	19,620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위원회별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회추경)
	장별	항별			
총액			13,170,138	12,556,355	613,783
총무위원회	소계		683,339	637,490	45,849
	사회개발	주민소득지원	683,339	637,490	45,849
시민건설위원회	소계		12,486,799	11,918,865	567,934
	사회개발	의료보호기금	2,809,819	2,801,032	8,787
	경제개발	주차장	9,676,980	9,117,833	559,147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요지

1)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자 : 최광진의원)

- 심사일시 : '99. 7. 22. 제7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예산회계 910,28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11,660천원보다 98,625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토록 요구함.

2) 총무위원회

(보고자 : 김대봉의원)

- 심사일시 : '99. 7. 22.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99. 7. 24. 제7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3,390,487천원, 특별회계가 683,33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일반회계 59,055,494천원, 특별회계 637,490천원보다 각각 6,335,003천원과 45,849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산정보운영 자산 취득비 1개사업 5,000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회계 동행정운영시설비및부대비 1개사업에 증액하도록 재석의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토록 요구함.

3) 시민건설위원회

(보고자 : 최태중의원)

- 심사일시 : '99. 7. 22. 제7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상정
'99. 7. 24. 제70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9,849,614천원, 특별회계가 12,486,79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일반회계 49,896,067천원, 특별회계 11,918,865천원보다 각각 2,440,406천원과 567,934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등 8개사업 100,000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회계 시설비등 2개사업에 증액하도록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토록 요구함.

마)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2~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9. 7. 26 ~ 7. 28)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과장(윤내원)의 동의를 받아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음.

※ 유 첨 :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79

1999. 7.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거 편성·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 소수계층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 또는 효과면에서 주민의 편익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패창과 소모적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을 감액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관내도로정비공사등 주민복지 시설에 투자하도록 조정·편성하여 서대문구 재정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자 함.

2. 수정골자

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116,996,601천원

- 일반회계 : 103,826,463천원
- 특별회계 : 13,179,138천원

나. 세출예산 수정내역

- 수정규모 : 133,734천원
- 총 괄 - 감액 : 9개항목 133,734천원
 - 증액 : 4개항목 133,734천원
- 일반회계 - 감액 : 8개항목 79,000천원
 - 증액 : 3개항목 79,000천원
- 특별회계 - 감액 : 1개항목 54,734천원
 - 증액 : 2개항목 54,734천원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감액 8건(₩ 79,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쪽
세항	목(세목)		'99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계			607,673	528,673	△79,000	
소계			607,673	528,673	△79,000	
전산정보운영	자산취득비	전원장치 (메인라우터용)	5,000	0	△5,000	43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여성복지센터간판제작	1,500	1,000	△500	75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	한시적생보자생계비	452,316	427,316	△25,000	74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개원행사비	3,000	2,000	△1,000	86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웬스설치비	40,000	30,000	△10,000	87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사무실브라인드설치비	11,250	3,750	△7,500	87
지역경제관리	자산취득비	사무실집기류등	74,607	64,607	△10,000	89
녹지관리	시설비	학교주변 자연학습장조성	20,000	0	△20,000	71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증액 3건(₩ 79,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쪽
세항	목(세목)		'99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계			69,950	148,950	79,000	
소계			69,950	148,950	79,000	
동행정운영	시설비	주민자치센터설치	19,950	24,950	5,000	55
공원관리	시설비	관내 시설물정비·도색	0	20,000	20,000	70
도로건설	시설비	관내 도로정비공사	50,000	104,000	54,000	90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2. 특별회계

- 감액 1건(₩ 54,734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쪽
세항	목(세목)		'99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계			521,670	466,936	△54,734	
소계			521,670	466,936	△54,734	
주차장관리	적립금	주차장시설적립금	521,670	466,936	△54,734	124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2. 특별회계

○ 증액 2건(₩ 54,734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쪽
세항	목(세목)		'99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계			0	54,734	54,734	
소계			0	54,734	54,734	
주차장관리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0	20,525	20,525	122 신설
주차장관리	복리후생비	가계안정비	0	34,209	34,209	122 신설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8.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결산승인안은 1999.12.16 제73회 정
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얻기위함.

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

□ 총 괄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이월액내역		
				사고이월	보조금잔액	세계잉여금
합 계	132,960,045	110,980,632	21,979,413	3,838,690	615,907	17,524,815
일반회계	119,442,920	104,381,941	15,060,978	3,821,001	615,907	10,624,069
특별회계	13,517,125	6,598,691	6,918,435	17,689	0	6,900,746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고
합 계	127,432,889	151,144,251	132,960,045	18,184,206	
일반회계	116,300,228	128,058,082	119,442,920	8,615,162	
특별회계	11,132,661	23,086,169	13,517,125	9,569,044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위 액(B)	지출액 (C)	이월액 (원인미필)	불용액 A-(C+D)=F	비고
합 계	144,765,443	114,599,777	110,980,632	3,838,690	29,946,121	
일반회계	131,011,239	107,983,398	104,381,942	3,821,001	22,808,296	
특별회계	13,754,204	6,616,379	6,598,690	17,689	7,137,825	

3)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8.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결산승인안은 1999.12.16 제73회 정기 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얻기위함.

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

□ 총 괄

(단위 : 천원)

회계별 /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합계	2,160,603	2,110,537	2,110,537	50,065	
일반회계	2,160,603	2,110,537	2,110,537	50,065	
특별회계	0	0	0	0	

○ 19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현황으로는,

북아현2동 청사 신축공사외 9개 사업에 대하여

- 지출결정액 : 2,160,603천원에서,
- 지출액 : 2,110,537천원이며,
- 50,065천원은 불용처리되었음.

다) 심사결과

19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

■ 2000회계년도예산안

1999.11.1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1999.12.16~20 제73회 정기회 제2~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규모와 심의·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이유

2000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

□ 총괄 (區 전체)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00예산액	'99예산액	증(△)감		비 고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15,929	96,387	19,542	20.3 %		
일 반 회 계	102,755	84,111	18,644	22.2 %		
특 별 회 계	소 계	13,174	12,276	898	7.3 %	
	의료보호기금	3,564	2,801	763	27.2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139	637	△498	△78.2 %	
	주 차 장	9,471	8,838	633	7.3 %	

□ 일반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구분	예산액 (2000년도)	전년도예산 ('99년도)	증(Δ)감		비고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2,755,238	84,111,123	18,644,115	22.2%	
110 지방세	17,019,102	16,743,919	275,183	1.6%	
210 경상적세외수입	7,754,043	7,684,186	69,857	0.9%	
220 임시적세외수입	15,932,983	13,033,816	2,899,167	22.2%	
510 조정교부금	54,899,288	41,108,195	13,791,093	33.5%	
610 국고 보조금등	2,797,593	1,975,791	821,802	41.6%	
620 시·도비보조금	4,352,229	3,565,216	787,013	22.1%	

□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구분	예산액 (2000년도)	전년도예산 ('99년 도)	증(Δ)감		비고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3,174,067	12,276,355	897,712	7.3 %	
의료보호기금	3,563,602	2,801,032	762,570	27.2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39,584	637,490	△497,906	78.0 %	
주차장	9,470,881	8,837,833	633,048	7.2 %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0예산액	'99예산액	증(△)감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15,929,305	96,387,478	19,541,827	20.3%
일 반 회 계	소 계		102,755,238	84,111,123	18,644,115	22.2%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2,493,212	1,171,006	1,322,206	112.9%
	일반행정비	기 획 관 리	34,445,230	31,701,011	2,744,219	8.7%
		공 보 관 리	3,891,668	1,426,737	2,464,931	172.8%
		행 정 감 사	114,225	99,546	14,679	14.7%
		내 무 행 정	13,150,112	10,348,183	2,801,929	27.1%
		재 무 행 정	1,072,826	911,201	161,625	17.7%
	보건및생활 환경 개선	보 건	3,386,942	2,864,983	521,959	18.2%
		생 활 환 경	16,994,142	16,910,305	83,837	0.5%
		공원녹지관리	1,460,144	968,255	491,889	50.8%
	사회 보장	일반사회복지	12,139,419	9,253,378	2,886,041	31.2%
	주택및지역 사회 개발	주 택 사 업	406,164	230,222	175,942	76.4%
		도 시 개 발	664,076	540,844	123,232	22.8%
	지 역 경제 개발	지역경제개발	554,417	541,237	13,180	2.4%
	국토 자원 보존 개발	치수및재해대책	165,835	153,480	12,355	8.0%
		도 로 관 리	7,089,040	2,194,698	4,894,342	223%
	교통 관리	교통행정관리	604,639	526,930	77,709	14.7%
	민방위관리	민방위 관리	510,339	372,966	137,373	36.8%
	예 비 비	예 비 비	3,612,808	3,896,141	△283,333	△7.3%
	특 별 회 계	소 계		13,174,067	12,276,355	897,712
의료보호기금		사 업 비	3,563,602	2,801,032	762,570	27.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		사 업 비	139,584	637,490	△497,906	△78.0%
주 차 장		사 업 비	9,470,881	8,837,833	633,048	7.2%

구 분	예 산 과 목		2000예산액	'99예산액	증(△)감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15,929,305	96,387,478	19,541,827	20.3%
일 반 회 계	소 계		102,755,238	84,111,123	18,644,115	22.2%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2,493,212	1,171,006	1,322,206	112.9%
	일반행정비	기 획 관 리	34,445,230	31,701,011	2,744,219	8.7%
		공 보 관 리	3,891,668	1,426,737	2,464,931	172.8%
		행 정 감 사	114,225	99,546	14,679	14.7%
		내 무 행 정	13,150,112	10,348,183	2,801,929	27.1%
		재 무 행 정	1,072,826	911,201	161,625	17.7%
	보건및생활 환경 개선	보 건	3,386,942	2,864,983	521,959	18.2%
		생 활 환 경	16,994,142	16,910,305	83,837	0.5%
		공원녹지관리	1,460,144	968,255	491,889	50.8%
	사회 보장	일반사회복지	12,139,419	9,253,378	2,886,041	31.2%
	주택및지역 사회 개발	주 택 사 업	406,164	230,222	175,942	76.4%
		도 시 개 발	664,076	540,844	123,232	22.8%
	지 역 경제 개발	지역경제개발	554,417	541,237	13,180	2.4%
	국토 자원 보존 개발	치수및재해대책	165,835	153,480	12,355	8.0%
		도 로 관 리	7,089,040	2,194,698	4,894,342	223%
	교통 관리	교통행정관리	604,639	526,930	77,709	14.7%
	민방위관리	민방위 관리	510,339	372,966	137,373	36.8%
	예 비 비	예 비 비	3,612,808	3,896,141	△283,333	△7.3%
	특 별 회 계	소 계		13,174,067	12,276,355	897,712
의료보호기금		사 업 비	3,563,602	2,801,032	762,570	27.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		사 업 비	139,584	637,490	△497,906	△78.0%
주 차 장		사 업 비	9,470,881	8,837,833	633,048	7.2%

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요지

1)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자 : 최 광진 의원)

- 심사일자 : '99.12.10 제73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내용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2,493,212천원에 대하여 의사운영, 대한민국헌법령집구입등 7개사업에 129,890천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 조정 하도록 요구하였음.

2) 총무위원회 (보고자 : 김 대봉 의원)

- 심사일자 : '99.12.8~11일 제73회 정기회 제4,5,6,7차 총무위원회
- 심사내용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60,195,972천원, 특별회계 139,584천원, 합계 60,335,556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서무관리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등 12개 사업에 36,920천원을 증액하고, 예산운영 사회단체 임의보조 등 19개 사업에 174,700천원을 삭감하도록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증액 및 삭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3) 시민건설위원회 (보고자 : 최 태중 의원)

- 심사일자 : '99. 12.8~11일 제73회 정기회 제4,5,6,7차 시민건설 위원회
- 심사내용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0,066,054천원, 특별회계 13,034,483천원 합계 53,100,537천원에 대하여 사회복지 어버이날행사 등 총8개 사업에 441,563천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사회복지 현황판 제작 등 28개 사업에서 441,563천원을,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고지서 발송 1개 항목에서 42,588천원을 각각 삭감하도록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삭감 및 증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 하도록 요구하였음.

라)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2~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9.12.16~12.20)에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과장(윤내원)의 동의를 받아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하였음.

※ 별 첨 :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15

1999.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제출된 2000년도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이나 사업의 효과측면과 주민복리증진 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팽창 및 소모성예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조정하여 노인복지 및 결식아동 등의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행정의 향상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 등에 예산을 증액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우리구의 재정운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수정골자

가. 2000년도 예산 총 115,929,305천원

- 일반회계 : 102,755,238천원
- 특별회계 : 13,174,067천원

나. 세출예산 수정내역

- 총 괄 (수정규모 : 833,508천원)
 - 삭감 : 39개항목 833,508천원
 - 증액 : 35개항목 833,508천원
- 일반회계
 - 삭감 : 38개항목 790,920천원
 - 증액 : 34개항목 790,920천원
- 특별회계 :
 - 삭감 : 1개항목 42,588천원
 - 증액 : 1개항목 42,588천원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감액 총38건 (₩790,92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쪽
세항	목(세목)		2000예산안	조정안	증(Δ)감	
총계		38개 사업	1,664,756	873,836	Δ790,920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방송장비 구입	130,277	37,911	Δ92,366	66
예산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임의보조	40,000	31,000	Δ9,000	97
"	시설비및부대비	기타공공시설물정비	200,000	170,580	Δ29,420	101
정산정보운영	연구개발비	인터넷홈페이지 영문판제작	10,000	0	Δ10,000	114
감사관리	업무추진비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3,000	2,000	Δ1,000	158
"	자산취득비	냉장고	700	0	Δ700	159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구정 보고회 등	6,000	5,000	Δ1,000	174
"	업무추진비	신년 인사회	6,000	5,000	Δ1,000	174
"	시설비및부대비	사무실정비 등	45,000	30,000	Δ15,000	175
"	감리비	난방배관공사 감리비	6,025	4,820	Δ1,205	177
사회진흥	자산취득비	소독용동력분무기	11,550	6,050	Δ5,500	188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업무추진	20,000	18,000	Δ2,000	204
"	일반보상금	여성구정평가단 문화교양 강사료	800	600	Δ200	206
"	일반보상금	여성구정평가단활동 위원시상	1,260	660	Δ600	206
보건관리	재료비	차량용 연막기(경유)	9,250	3,142	Δ6,378	257
"	재료비	휴대용 연막기(경유)	3,080	1,017	Δ2,063	257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쪽
세 항	목 (세목)		2000예산안	조 정 안	증(△)감	
청 소 관 리	일반운영비	차량운행 일지대장	1,976	1,200	△776	298
"	일반운영비	종량제 안내문	7,200	3,600	△3,600	299
"	일반운영비	청소작업구역 조정 안내문	2,280	1,140	△1140	305
"	일반보상금	청소 관련 홍보 및 시설 견학	2,100	1,500	△600	312
"	자산취득비	2.5톤 진개덤프	238,000	204,000	△34,000	315
공 원 관 리	시설비 및 부대비	백련배수지 상단 체육공간조정	20,000	0	△20,000	328
사 회 복 지	일반운영비	현황판 제작	1,000	500	△500	341
"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운영 사례집 발간	2,000	1,500	△500	341
"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모집홍보 현수막 제작(대)	1,400	900	△500	341
"	일반운영비	감정평가 수수료	3,639	0	△3,639	342
"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수당	1,800	0	△1,800	343
여 성 복 지	일반운영비	플래카드(대)	1,200	800	△400	357
주 택 기 획	자산취득비	예방단속용스쿠터 구입	15,624	10,496	△5,128	377
중소기업관리	일반운영비	현황판 제작	1,500	900	△600	411
"	"	현수막(대) 제작	500	300	△200	411
"	"	개관기념 대형현수막 제작	4,000	2,000	△2,000	411
"	민간이전	시카고상품전시관매장 운영	39,900	0	△39,900	419
도 로 건 설	재료비	염화칼슘	69,025	55,220	△13,805	434
"	시설비 및 부대비	북가좌초교 앞 보도 육교 철거 및 설치	340,000	60,000	△280,000	437
"	시설비 및 부대비	황단보도 턱낮추기	410,000	210,000	△200,000	437
교통기획행정	업무추진비	마을버스업체 대표 간담회	400	0	△400	443
"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차대 평의자 설치	8,000	4,000	△4,000	446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증액 (총 34건 ₩790,92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쪽
세항	목(세목)		2000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계		34개 사업	1,131,027	1,921,947	790,920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0	4,000	4,000	53
"	업무추진비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	0	5,000	5,000	61
"	여비	국외여비	20,000	50,000	30,000	61
"	업무추진비	구내식당 운영	10,000	15,000	5,000	62
"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	1,000	5,000	4,000	64
"	자산취득비	의사당실별 집기류	51,579	81,579	30,000	66
의정활동	의회비	의회운영위원회비교 시찰 등	11,346	20,000	8,654	67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지역지 및 지방지	80,000	98,000	18,000	118
"	업무추진비	구청장기 대회	12,000	14,300	2,300	139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등	2,000	6,000	4,000	160
"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선수단 육성	0	10,000	10,000	174
"	자치단체이전	군부대지원	0	21,036	21,036	183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3개동설계 공모비	0	9,000	9,000	207
"	일반운영비	공모심사 수당	0	1,500	1,500	207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키폰장비 유지비	0	4,224	4,224	253

제 2 장 의회운영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쪽
세 항	목 (세목)		2000예산안	조 정 안	증(△)감	
보건지도	자산취득비	초미립자 살포기	0	2,200	2,200	259
"	자산취득비	수동식 분무기	0	1,400	1,400	259
"	민간이전	인플루엔자	21,300	36,300	15,000	264
"	자산취득비	냉 장 고	0	238	238	271
"	자산취득비	카 메 라	0	240	240	271
의약관리	자산취득비	냉 장 고	0	300	300	279
"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0	620	620	279
"	자산취득비	노분석기	0	5,500	5,500	279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1,000	10,000	9,000	312
공원관리	배상금 등	홍은동유족배상금	0	153,000	153,000	329
녹지관리	재료비	국민식수용 묘목 구입	5,000	10,000	5,000	333
"	재료비	산림용 비료구입	980	2,100	1,120	333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어버이날 행사	8,400	21,000	12,600	344
"	시설비 및 부대비	홍은1동종합사회 복지관 부지매입	524,562	800,000	275,438	353
"	출연금	노인복지 기금	50,000	70,000	20,000	354
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	결식아동 지원	53,400	66,750	13,350	363
유아복지	민간이전	보육시설교재 교구비 지원	77,660	87,660	10,000	368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만원실수리비	800	10,000	9,200	399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홍은동 9의699~8의512 도로개설보상비 및 공사비	200,000	300,000	100,000	435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2. 특별회계

○ 감 액 (총 1 건 42,588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쪽)
세항	목(세목)		2000예산안	조정안	증(△)감	
계		1 건	101,088	58,500	△42,588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고지서 발송	101,088	58,500	△42,588	P514

○ 증 액 (총 1 건 42,588 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쪽)
세항	목(세목)		2000예산안	조정안	증(△)감	
계		1 건	3,668,140	3,710,728	42,588	
주차장관리	기타내부거래	주차장시설적립금	3,668,140	3,710,728	42,588	524

나.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회명	활동기간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99.8.2~9.30 (2개월)	아래"결과보고" 참조	위원장 : 최광진 의원 간사 : 최태중 의원 위원 : 김대봉, 김화형 오환인, 이문복 한한열 의원
	제2차 '99.10.1~10.19 (19일)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I. 운영목적

많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도시가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활동하였음.

II.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

- 위원회 명칭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제1차 기간 : 1999. 8. 2 ~ 9. 30 (2개월)
 - 제2차 기간 : 1999. 10. 1 ~ 10. 19 (19일)

III. 주요 활동분야 및 확인점검 대상

- '99년도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 및 배관시공 완료지역-73개소
 - 규정매설깊이 준수여부
 - 장애물구간 보호판 설치여부
 - 모래투입 및 되메우기 다짐 상태

- 가스배관 상층부 보호포 설치여부와 가스누설 및 노후상태

- 정압기 시설 - 29개소
 - 원방감시장치 작동여부
 - 배관도색 및 노후상태
 - 주 1회 순회점검 실시여부
 - 통풍시설 설치여부 및 기타 관리실태
- 특정가스사용시설 - 163 개소
 - 가스누설 여부
 - 배관도색 및 노후상태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 지상노출 가스배관 및 기타 안전관리 사항
-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 6 개소
- 도시가스 보급확산 방안 강구
- 도시가스 신청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등의 문제점과 대책
- L.P.G 판매시설(업소) 규정사항 준수실태 및 기타 가스관련 사항

IV. 추진방향

-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키 위한 현장중심의 활동
- 도시가스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 중심으로 운영
- 도시가스 민원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주의 확인점검 활동
- 전문강사를 통한 전문지식 사전 확보로 내실있는 활동 추진

V. 현장활동 운영체제

위원 6인 1개반, 합동으로 확인·점검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Ⅵ. 위원회 운영(활동) 경과

월 일	추진 (활동) 내역	비고
'99.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 - 최광진 의원 外 5인 발의 	
'99. 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승인) -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99.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채택 - 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99.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9.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도시가스 업무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보고부서 : 지역경제과 	

월 일	추진 (활동) 내역	비고
'9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습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10:15 ~ 12:20 · 장소 : 구의회 제2회의실 · 강사 : 송태호(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검사1부장) · 내용 : 도시가스전문지식 및 안전점검착안사항 습득 · 대상 : 특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 서울도시가스(株)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 14:00 ~ 16:40 · 내용 : 1. 회사현황 및 도시가스 관련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 우리구 민원사항 처리촉구 및 처리계획 청취 	
'99.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회 임시회(폐회중) 제5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도시가스(株)의 현황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구의회 제2회의실 · 내용 : 1. 도시가스 관련 우리구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2. 우리구 민원사항 처리촉구 및 처리계획 청취 - 서울도시가스(株)의 현황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구의회 제2회의실 · 내용 : '99. 9. 10로 연기 (보고자의 보고자료 미비) 	
'99.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회 임시회(폐회중) 제6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및 운영기간 연장계획서 작성 및 채택 - 위원회 활동세부일정표 작성 및 채택 - 서울도시가스(株)의 현황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구의회 제2회의실 	

월 일	추진 (활동) 내역	비고
'99.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1. 도시가스 관련 우리구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2. 우리구 민원사항 처리촉구 및 처리계획 청취 - 극동도시가스(株) 관리시설물 안전 등 확인 현장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압기 점검·확인 : 삼호아파트 정압기 등 · 특정가스사용시설 점검·확인 : 동명여자중고등학교 사용시설 등 	
'99.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및 운영연장계획서 승인 -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99.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1회 임시회(폐회중) 제7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 위원회활동 - 도시가스배관공사완료지역 배관심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단지내 · 문화촌 아파트 입구 GOV'R 인입관 공사 완료지역 (홍제3동 266-145, 274-53, 273-41 일대) · 북가좌2동 2번지 일대 · 수행자 : 구청(토목과, 지역경제과) 관계자 서울도시가스(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99.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1회 임시회(폐회중) 제8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 - 정압시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3동 정압기(연희동 141번지 동진빌라 입구) · 가좌현대 정압기 (남가좌 2동 191-20 현대아파트) · 신촌동 정압기 (신촌동 92-8) · 가좌한양 정압기(북가좌1동 145 한양아파트) -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지역관리소 (연희2동 77-5) · 제36지역관리소 (홍제1동158-29) - L.P.G 판매시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가스 (천연동 112번지) · 신성가스 (충정로3가 3-378) 	

월 일	추진 (활동) 내역	비고
'99.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1회 임시회(폐회중) 제9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동 지역(민원다발 지역) 배관심도 측정.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동 40번지 일대 (행운부동산 앞) · 천연동 98번지 일대 (천연목욕탕 앞) · 천연동 120번지 일대 (형제슈퍼 앞) - LOOP주변 배관공사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동 124번지 일대 - 종로학원(충정로3가 72 - 6) 정압시설 점검 	
'99.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1회 임시회(폐회중) 제10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회사)에 대한 도시가스 관련 질의답변 - 건의사항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 제정 ▶ 영세계층의 도시가스 보급확산을 위한 저렴한 시공 방안 강구 ▶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주민 명예감독제 강화.시행 - 위원회운영(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Ⅶ. 활동결과(기관별 지적사항) : 건의사항 9건, 시정요구사항 8건

구분	확인·점검내용	기관(회사)별 건의·시정요구 현황												비고	
		계	서울도시	극동도시	한국가스	서대문	L.P.G	두산아파							
			가스(주)	가스(주)	안전공사	구청	판매소	트관리소	건의	시정	건의	시정	건의		시정
계		17	2	4 (1)	5	1	2	(3)	2	1					
배관 시설	○ 공사현황판. 안전유도 시설 미설치	1			1			(1)							
	○ 공사 감리원 근무실태	1				1									
지역 정압 기	○ 정압기 원방감시 장치 보호시설 미흡	1		1											
	○ 정압기 원방감시기 전화선 설치 허술	1			1										
	○ 정압기 건축물 통풍구 지지 벽 일부 파손	1			1										
	○ 정압기 건축물 외벽 벽 일부 균열	1		1											
	○ 정압기 건축물 통풍구 창살 빈약	1		1											
	○ Test Box 관리미흡	1			1										
	○ 정압기 건축물 외벽 미정비	1		1											
지역 관리 소	○ 제반 운영실태 - 관리소위치 부적절	1	1												
LPG 판매 업소	○ 가스용량 미측정 판매	2						(2)		2					
기타	○ 배관심도측정 불량 - 장비불량 및 관계자 작동기술 미숙	1			1										
	○ L.P.G 통 위치 부적절	1									1				
	○ 가스기금설치조례제정	1					1								
	○ 도시가스 공사비 인하 방안 강구	1	(1)		(1)										
	○ 배관공사에 대한 주민 명예감독관제 강화	1					1								

※ () 1개 기관이상 공통 해당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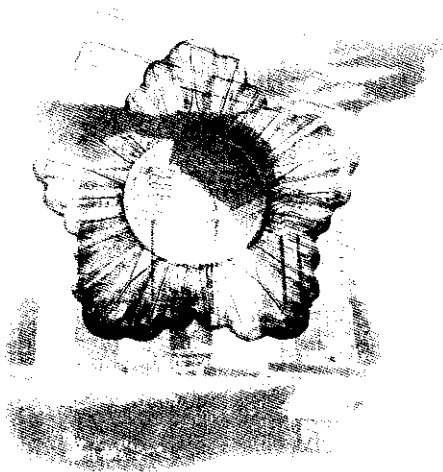
제 3 장 기타 분야별 활동

I. 구정질문

II. 행정사무감사

III. 민원처리

IV. 의원 세미나



제 3 장 기타 분야별 활동

I. 구정질문

1. 의 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처리상황과 장래계획을 물어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케 함으로 자치단체의 바른 구정실현을 유도하고, 정치적 자세와 책임을 명확히 부담시켜 정책을 변경 또는 대체케 하거나 시정시키는 등으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중의 하나이다.

2. 현 황 (30인 79건)

구 분 회 기 () : 질문일자	질 문 의원수	질문 건수	부서별 해당 질문현황					
			감 사 담당관	행 정 관리국	생 활 복지국	도 시 관리국	건 설 교통국	보건소
계	30	79	-	27	12	20	20	-
제71회 임시회 (99. 9.16~ 9.17)	9	22	-	7	1	10	4	-
제73회 정기회 (99.12.13~12.15)	10	32	-	13	6	7	6	-
제76회 임시회 (2000.5.24~5.25)	8	18	-	5	4	2	7	-
제77회 정례회 (2000.7. 5~7. 6)	3	7	-	2	1	1	3	-

3. 區政質問 및 答辯

■ 제71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 ('99. 9.16 ~ 9.17)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전성장 의원	■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 [區廳長 李政奎] 마포, 은평, 종로 등 인근구와 비교조사하는 등 우리구 청소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p> <p>'98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구가 187억, 은평이 164억, 마포가 202억이고 '99년도 예산은 우리구가 158억, 은평이 140억, 마포가 134억이 책정되어 있어 우리구의 청소행정 관련 예산이 다소 많은 걸로 파악이 되지만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의 시설투자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한 의외로 많은 퇴직청소원의 퇴직금 4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p> <p>그리고 금년도 쓰레기봉투판매실적은 우리구가 13억원으로 마포구 15억원, 은평구 15억에 비해 다소 저조한데 이유는 직영비율이 은평은 55%, 마포는 50%임에 비해 우리구는 25%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을 44개반 92명이 새벽 2시까지 순찰하는 등 열심히 감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청소행정 평가에 있어서 서울시 25개구에서 2등을 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보충답변] 청소행정에 있어서 직영을 폐지하고 완전대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청소행정 방향입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이 그동안 우리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사람들인데 예산문제를</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거론하며 하루아침에 완전대행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생계에 위협을 초래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완전대행을 위해 미화원의 퇴직에 의한 빈자리는 일체 충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항은 염두해 두고서 미화원, 청소행정과 직원, 동장 등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하겠습니다.</p>
	<p>■ 관내 가로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p>	<p>➔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현장을 순찰하여 사진도 찍어 가시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염려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p> <p>아시다시피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2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와 수십만명의 노숙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들이 리어카 등을 구입하여 노점상으로 나서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에 비해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생계와 직관된 일이니 만큼 이들은 단속에 결사적으로 항거하기 때문에 단속에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단속은 하지만 나라 전체적인 경제난을 감안할 때 리어카를 강제수거하는 등으로 전에 처럼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인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순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한한열 의원	<p>■ 구청의 일부 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 및 기피하는 경향을 일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대책과 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區廳長 李政奎) 직원의 사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호부서와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의 인사원칙은 어려운부서에서 일한 직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서를 옮겨주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자리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한정된 탓에 100%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조직을 지휘해 가고 조직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부서에 꼭 필요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하고 있지만 원칙은 타의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친절강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담도 되겠지만 저는 직원들 불평 때문에 구민에게 불친절할 수 없는 일이며, 대구민 친절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 생각합니다.</p> <p>(서면답변)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근무평정 및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하고 특히 승진시에는 서열명부에 가점을 부여하는 실적가점제를 실시하여 많은 격무부서 직원이 많은 진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호부서에 여러직원이 두루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p>
<p>■ 조직원으로서 소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서면답변) 업무수행능력, 성격, 가치관, 근무수행태도 등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화합단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소양교육, 전문위탁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승진, 전보상의 혜택을 부여하겠음. 반면 부서내 부적응직원에게 대해서는 가치관 및 행태변화를 위한</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노력으로 부서장의 애정어린 관심과 면담을 통해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나 인사상담을 활성화하여 갈등과 불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실을 활짝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p>	<p>➔ [區廳長 李政奎] 저는 구청장실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직책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대여섯번을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집단으로 몰려와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솔직히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저는 구민 한분 한분과 좋은 인연을 맺고 대화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개방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방원칙을 고수하며 노력하겠습니다.</p>	
<p>■ 연희 B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연희B지구아파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었습니다. 남산의 제모습을 찾기 위해 6,0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선 500세대가 살던 연희B지구를 말끔히 정리해서 이주시키고 공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안산기슭의 연희B지구 아파트는 E급판정을 받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였기에 저도 퇴근길에 비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면 그 아파트 축대밑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며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슴을 눌러오는 압박감을 가누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p> <p>그래서 재개발은 해야하나 주민들이 경제적인 능력</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이 안되어 아파트를 시공하겠다는 시공회사들이 불지를 얹으니까 시공사와 합의점을 좁혀가면서 사업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아파트의 높이와 안산의 조망권 확보를 두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조망권확보에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p> <p>안산에 대하여 제가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연희B지구 아파트는 당초에 정부에서 안산을 뚫고 지은 곳입니다만 한평의 공원용지도 훼손하지 않고 단지 아파트 층수를 올렸던 것은 이시대에 우리 능력으로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p> <p>안산을 지키자며 한양아파트 건축은 저지하고 연희B지구 아파트는 층수를 늘려 조망권을 저해함으로써 안산에 대한 일관성 없는 구정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양아파트 건축은 안산을 무너지게하고 사후에 1,000억을 투입해도 회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p>
<p>김화형 의원</p>	<p>■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관계, 시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법여부를 판단케함으로 부당부적법한 일들은 강력히 제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일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p> <p>P씨라고 하신 분이 아마 박재훈씨로 짐작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키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또한 조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조합장으로 승인한 것이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억지로 선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시공에 있어서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화조가 부실하다면 오늘부터 확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p>정일출 의원</p>	<p>■ 서대문구의 젓줄인 홍제천을 자연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방안은 없는가 ?</p>	<p>➔ (區廳長 李政奎) 몇년전에도 정의원님께서 홍제천을 물이 흐르고 고기가 뛰노는 등의 녹지대가 형성되는 하천으로 만들 수 없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력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의외로 빠르게 접근이 되어 가고 있어 정의원님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제천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p>
	<p>■ '97년도에 우리구 가좌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 한 이후 이 지역 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주어졌고, 어떠한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위락시설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p>	<p>➔ (區廳長 李政奎) 학교주변지역의 위락시설 허가 여부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토대로 하여 교육구청에서 심의한 후 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위락시설 허가사항은 일률적이지 못하고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모래내시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구청에 찾아가 교육구청장과 협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만 저와 우리관내 국회의원, 시의원과 구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해결통로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아울러 말씀 드릴사항은 현재 우리구를 4개 경제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모래내시장의 현대화를</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중점으로 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용역을 주어 그 분석 중간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지역의 상권분석과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상권내 지역주민의 생활구조와 교통흐름과 현대화 방향 및 모델을 확인하며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분석도 같이하여 현대화추진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마케팅분야, 상품분야, 고객관리분야 등의 부분별 전략을 수립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제도출은 어떻게 어느 것부터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용역성과보고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행정력을 지원하여 빠른 시간내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김대봉 의원</p>	<p>■ 서대문구의 녹지환경사업은 과연 있는가?</p>	<p>→ [區廳長 李政奎] 우리구 녹지공간 문제와 관련해서 염려하여 주시면서 뒷골목 유희지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구민의 노력을 구정에서는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공적인 화단조성이나 집앞 화단 조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다든지 사용료를 부과한 현황을 파악해서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안산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직을 떠나도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청장이기를 소망하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상과 현실중 어느 한쪽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안산을 보호하고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남산과 같은 명산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이기봉 의원	<p>■ 북아현 1,2,3동 철로변 소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p>	<p>➡ [區廳長 李政奎] 선거때마다 많은 분들이 북아현동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등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방음벽을 설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설치했음에도 주민들께서는 방음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철로와 주택이 너무 근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터널형식으로 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p>
정혜연 의원	<p>■ 연화2동 제3차력재개발 사업에 대하여</p>	<p>가. 사업종료시점은 언제인가 ? ➡ [서면답변] 현재 동구역은 환지확정처분을 위해 공람공고를 거쳐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를 '99.8.16자로 마친 상태로 '99.10월초에 사업완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 등기 절차등에 관하여는 아래의 일정과 순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10월초 : 사업완료 공고 - '99.10월말 : 환지확정처분 고시 - '99.11월 : 감정평가 의뢰 - '99.12월 ~ 2000년 2월 : 청산조서 작성 - 2000년 3월 : 청산금고지서 송부 - 2000년 4월 : 등기축탁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나. 사업착수후 20년 동안 방치한 결과 주민에게 미친 심적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하고 위로할 것인가?</p>	<p>➔ [서면답변] 자력재개발사업이란 환지 후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주관하고 주택개량은 주민 스스로 행하는 사업으로 상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사업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구역은 주택개량 미완료, 환지확정측량시 환지에정경계선 및 도로침범, 이해토지주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피해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이 미완료되었더라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공공시설공사, 환지확정을 위한 용역시행 등을 하여 '99. 5. 7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99. 8.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을 시행하였고, '99.10월에는 사업완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등기절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원활한 재산권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연회3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상 일부개량이 완료된 주택(홍연아파트 등)만을 별도로 환지확정이나 부분사업완료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기에 건축을 완료한 건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구역 사업조기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다. 대지(환지) 징수가격 적용기준을 사업개시년도인 '79년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감정가로 할 것인가?</p>	<p>[서면답변] 청산금 산정기준에 대한 지침은 분양시점이었으나 '96. 9.25일 이후에는 공사착수전(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적용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적용시 청산금 지급대상자의 민원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 협의 및 타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 변 내 용
	<p>라. 홍연아파트 부지를 20여년 동안 등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p>	<p>➔ [서면답변]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상 일부개량이 완료된 주택(홍연아파트 등)만을 별도로 환지확정이나 부분사업완료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조기에 건축을 완료한 건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구역 사업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우리구 관내 시민아파트는 31개동으로 그중 금화지구 영천동 소재 15개동은 주거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연희지구, 홍제지구의 15개동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모두 철거하여 공원화할 것이라 하는데, 대다수의 영세거주민의 이주문제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시행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개보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 ?</p>	<p>➔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저희구의 시민아파트 현황은 31개동에 1,413세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화지구 15개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홍제지구와 연희a지구는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철거토록 되어있습니다. 철거비용은 208여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건의하였고 계상이 되면 주민들이 이주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토록하고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p>
<p>최용완 의 원</p>	<p>■ 동사무소를 주민복지회관 등으로 그 기능을 전환함에 있어 예산미편성, 시설·비품 부족, 행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99년도 2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1단계 시범실시추진지침에 의거하여 우리구는 '99. 7.30부터 북아현2동과 홍은1동, 2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상세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p> <p>또한 전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법규정비, 시설계획, 행정지원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며, 총무과 자치행정계를 시책추진반과 병합, 지방자치과로 승격시켜 동기능전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p>	<p>출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전동을 실시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전동의 기능을 전환하는데 동사무소 여유시설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보수하여 주민의 복지관으로 운영함을 활성화 하기위해 운영비, 강사료, 집기구입비, 시설비 등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각종 법규나 지침은 행정자치부 추진일정에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 후에 조례,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자치행정계의 과로의 승격문제 등은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부서편성문제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추진상황과 우리구의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주민들의 애향심 및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우리구 상징물인 독립문 로고를 스티커 등으로 제작하여 구민의 차량에 부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구민의 애향심과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독립문 형상인 우리구 로고인의 홍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또한 지역신문 케이블 TV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께서 우리구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차량에 로고를 붙이는 사항은 원치 않는 분들도 있는 문제로 강요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정일출 의원	<p>■ 남가좌1동 124~ 147번지 일대 달동네의 개발에 대해서는 무책이 상책인가?(보충질문 : 주차장설치문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어도 되는가, 그리고 주차장보다는 어린이 놀이터나 시민공원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 조성할 경우 소요예산은 얼마인가?)</p>	<p>➔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이지역의 연장길이는 150m 정도이며 대지폭이 13~16m 정도로 매우 좁은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이 위에 1960년대초에 건립된 노후불량주택이 81동이 있고 10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재개발 등으로 시급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하는 지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재개발 방법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하여 본 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15.8평형 4층규모로 11개동에 81가구를 지을수 있으나 가구당 6,500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다수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른 방법은 이지역이 남가좌동 시장에 인접해 있어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주차장으로 만들고 거주민들을 시영아파트로 입주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면주차장을 만들시에는 총 14억원 소요되고 2층 주차장으로 할 때는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주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보충답변 : 주차장설치사항은 하나의 예시로서 주민들께서 이주하실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공공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공익과 구발전을 감안하여 차후 검토할 사항이라 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11억 4,400만원,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약 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 '99년도 9월 현재 관내 (서면답변)

각종 인·허가(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조명 등)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1. 도로굴착 승인 현황

구분 (인·허가명)	신청건수	처리 현황			비고
		계	인·허가 및 승인	불가	
계	2,528	2,528	2,395	133	
상하수도	1,696	1,696	1,696		
도시가스	731	731	598	133	
한전	23	23	23		
채신	33	33	33		
기타	45	45	45		공공기관공사 등

2. 도로점용허가와 4

구분 (인·허가명)	신청건수	처리 현황			비고
		계	인·허가 및 승인	불가	
계	81	81	81		
도로점용료허가	2	2	2		
배수시설비시공대행인가	4	4	4		
차량진입로 허가	44	44	44		
하천점용허가	6	6	6		
시설안내표지판허가	25	25	25		

3. 공원점용허가와 1

구분 (인·허가명)	신청건수	처리 현황			비고
		계	인·허가 및 승인	불가	
계	16	16	16		
공원점용허가	2	2	2		
조수등수출허가	14	14	14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	-------	-------

4. 건축 인·허가 현황

건축허가	계	건축허가	가설건축물허가	설계변경허가	비고
	109	81	2	26	

사용승인	계	건축물사용승인	가설건축물사용승인	비고
	83	81	2	

용도변경 허가·신고	계	'99. 5. 9 이전(개정전)		'99. 5. 9 이후(개정후)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허가·사용승인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사용승인
	46	9	24	11	2

반려	건축물표시변경	위치	건축주	사유
	1	북아현동 134-16	경수창	정화조 용량미달 (20인조 미설치)

-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민원부서 공무원을 선진국에 파견, 연수시킬 용의는 없는가? →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IMF이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날과 결혼시 그리고 자녀입학시에는 조그마한 선물을 지급하였고 명절에는 무료 귀향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가철에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양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수련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였고 또한 격무부서 직원과 격무부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시찰과 아울러 국외 연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IMF이후에는 국난국복의 총체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98년도에는 직원들의 봉급을 10% 반납했으며 '99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구행정물품구입 방법의 개선책은 있는가 ?</p>	<p>➔ [財務局長 崔泓鎭] 인접구에서는 행정전자제품 수입에 있어서 1,600만원 정도를 절감했다는데 우리구도 그러한 점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해야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구 행정에도 바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뿐만 아니라 기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이 내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행정의 집행 방향이 공정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물품매입 현황은 총934건에 13억 7,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품구매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물품구매관계는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수요부서에서 직접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연간단가계약 사항도 현재 40개 품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산장비 소모품 등 10개 품목을 더 추가하여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가일층 예산절감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p>
<p>유규상의원</p>	<p>■ 20여년 전에 충청로지역 도심재개발을 위해 지구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p>	<p>➔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도심재개발은 도심,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키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심재개발사업지구는 24개지구가 있습니다. 북아현2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충청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심재개발 추진현황은 총34개구역에 457개지구가 있고 이중 170개 지구만이 사</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으로 약36%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224개지구중 8개지구가 완료되었고 5개지구가 시행중으로 약54%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 전체로 보아 우리구 사업추진율이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5개지구는 전부 충청로지역으로서 3개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개지구는 조합설립인가만 받고 있고 모두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지구를 맡고 있는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진행이 더디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도심재개발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기타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개발방향을 정한 후 사업인가를 신청해야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여 임대 사무실이 비어있는 곳이 많아 재개발로 업무용빌딩을 지어 놓고도 분양 및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으로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건설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시공업체로 참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상에 기존업무시설 용도외에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즉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어 공동주택의 건립도 가능하다면 사업추진이 좀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불량주택재개발의 경우 지구지정을 하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충청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p>	<p>➡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정상적으로 동의하여 조합이 결성되고 관련서류가 작성이 돼서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계산할 경우 빠르면 7개월,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이고 조합결성 등이 지연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건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천년대에 7개구역, 15만㎡에 대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구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주어 재개발구역을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용이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선 7개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충청로지역 재건축에 대하여 한두명의 부동산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착공전까지 100% 동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가?</p>	<p>➡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충청로3가 124-4외 64필지 3,144.12㎡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에 110세대 지하4층 지상 19층으로 사전결정이 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건으로서 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단지내 소유권이 미확보된 6개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필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착공을 한 다음에 소유권이 차차 확보되면 계획을 변경하는게 어떻겠는가 하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6개필지가 전체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승인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2/3만 동의하면 재개발조합에서는 나머지 집을 강제로 철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5만 동의하면 나머지 1/5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100%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도 불가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부동산자가 터무니 없는 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철거하고 이주한 조합원들에게도 회복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100% 동의없이 사업승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 제73회 정기회 제3,4,5차 본회의 ('99. 12. 13 ~ 15)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한한열 의원	<p>■ 정원의 공무원의 감축에 상에 따른 대책은 무엇 인가 ?</p>	<p>➔ [서면답변] 정원의 공무원은 현재 28명으로 직 종별로 천공1명, 사역원 8명, 검침원 1명, 조무원 1명입니다. 이들은 1998년 제1단계 지방행정조 직 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사실상 근무기한이 정해져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 구조조정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공무원들이 그동안 공 복으로서 주민에 봉사한 공로와 근무경력 등을 감 안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유사직무에 대한 직렬변경 및 자격증에 의한 신규채용(예 : 전산, 필기 등)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 니다.</p>
	<p>■ 연희3동 동진빌라의 재 건축방안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재건축의 요건은 건물의 준공일 로부터 최소한 20년이 경과되었거나 안전상에 심 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온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 동진빌라는 1985년말에 준공된 건물로 서 아직 14년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또한 1999년 10월에 전문가의 진단결과 통상적인 결함으로 보 수·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기 때 문에 지금으로서는 재건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아시다 시피 이지역은 풍치지역으로서 건폐율이 30%밖 에 나오지 않아 3층이하로 재건축할 시에는 조합 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입니 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최태중 의원	<p>■ 우리구의 환경보존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종합적인 추진부서 부재와 종합추진계획 부재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먼저 안산주변에 최소한도의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을 아끼는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기존에 훼손된 지역의 개발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되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된 지역은 안산 어느 지역 어느 명분으로도 파괴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무부서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기능이 다소 분산된 점도 있으나 IMF를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단행이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환경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염두해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기초는 환경이고 환경이 주체가 되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염두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전성장 의원	<p>■ 구정전반에 대한 대주민 홍보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언론기관에 보도된 구정 홍보 보도건수는 885건이고 취재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한 것은 2,522건 기사가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 489건으로 총 3,011건이 보도되었고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구청장 의 동향 보고건수는 서대문이 57건, 은평이 52건, 마포가 13건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자료를 제공하며 보도요청을 하고 있지만 언론기관의 사정과 기사량에 따라 전부 보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이기봉 의원	<p>■ 노점상에 대한 '99. 단속실적과 노점상 일소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 ?</p>	<p>➔ [區廳長 李政奎]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상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노점상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마는 노점상을 일거에 퇴치한다거나 일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니 상호연계하여 우리구 대책장구에 노력하겠습니다.</p>
	<p>■ 전화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접수대장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향후 전화진정을 체계적으로 접수, 처리할 의향은 없는가 ?</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현재 전화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처리건은 47건이며 다만 익명 등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건은 민원처리규정상 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p>
	<p>■ 보안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	<p>➔ [서면답변] 보안등은 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현재 우리구 21개동에 8,772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98년 12월까지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관리하였으나, 동별 보안등 보수비가 소액으로 보수기피 현상에 따른 민원지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월부터 구청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 전문보수체계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업무가 통합되어 업무처리 간소화가 되었으나, 공개경쟁입찰로 보수업체(2개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지리과악의 미숙으로 보수지연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안등 야간순찰반을 편성하여 주2회 야간순찰 및 점검과 보수여부 등 처리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동사무소 기능전환</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등 정부시책에 따라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의 업무이관 등을 신중히 검토시행하겠습니다.</p>
	<p>■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보충질문 : 거택보호자가 6개월 이상 입원하면 진료비가 아닌 생계비가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p>	<p>➔ (區廳長 李政奎) 의료보호진료비는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료기관의 청구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11명에 대하여 38억원을 지급했습니다.</p> <p>(보충답변) 생계지원비와 의료진료비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저희 간부들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까 현재로서는 다 지원된걸로 확인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로서 어떻게 지원이 안되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여 업무를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p>
<p>최광진 의 원</p>	<p>■ 친절행정구현에 아직도 역행하는 직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지난 '95년도부터 친절향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97년도에 친절최우수기관, 또한 '98년도에는 서울시 최우수기관, '99년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0개시민단체에서 25개구중에서 행정만족도가 가장우수한 1등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한 전직원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구내방송을 통하여 전화 및 내방구민에 대한 인사연습을 실시하는 등 반복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 생각하며, 친절행정에 역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특별승진 등으로 격려하며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만족의 친절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평통위원회의 행사에 비협조적인 일부 동장의 향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p>	<p>➔</p>	<p>〔行政管理局長 羅松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정기월례회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일부 동장의 비협조적인 사례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상호협조가 긴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앞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가?</p>	<p>➔</p>	<p>〔都市管理局長 崔洪大〕 홍은동 277-65 건축물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연면적은 984.34㎡로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으로 '94년 10월 12일에 허가되어 동년 12월 2일에 착공했는데 지상 3층공사중에 인근의 백련사와 주민들이 현행 도로를 침범하였고 사생활침해와 관련하여 층수를 6층에서 4층으로 조정해 달라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측량한 결과, 도로를 침범한 사실은 없으나 건축선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를 두어 건축물을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1995년 4월 13일 부로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토록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낙하물방지망 및 가림막 설치를 지시했으며 그후 건축주가 1995년 4우러 21일 일부를 시정한 후에 공사중지해제요청을 한 바 있으나 위반부분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해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주가 1995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사중지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1997년 2월 13일 서대문구청이 패소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불복하여 1997년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 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건축주의 손해배상관계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조치가 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홍은2동의 삼성조합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방안은 없는가 ?</p>	➔	<p>(都市管理局長 崔洪大) 홍은2동 조합아파트는 한국은행 직장주택조합의 10개 조합과 삼성중공업이 시행자로 되어 있는 조합아파트입니다. 규모는 아파트 5개동에 499세대이고 부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2년 9월 2일에 사업승인이 났고 1992년 10월 14일에 착공되었습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일주공영이었는데 일주공영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회에 걸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자체공사중단이 되다가 시공사인 삼성중공에서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삼성중공업 직원 2명이 교대로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직장조합 등 11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고 골조형태로 현재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며 또한 주변에 위험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를 빨리 재개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p>
<p>■ 홍은2동의 8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신청을 한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p>	➔	<p>(都市管理局長 崔洪大)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청공무원들의 잦은 이동과 구청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더 큰 원인은 추진위원회가 3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지역은 진입로가 폭이 15m에 165m의 공동진입로를 확보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구역자체가 3개 구역을 합쳐도 1만여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여러가지 추진사항의 편의를 위해서도 3개구역이 함께 개발을 해야만 사업성도 올라가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며 진입로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고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부분이 있어서 더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좀 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p>
김희형 의원	<p>■ 우리구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은 우리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 48회에 3,80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른 사고와 바른 인생관으로 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3개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7위로 하락되었는데 많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p> <p>구청장을 포함한 1,350명의 직원들이 좀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더 바르게 공도를 걸어가라는 채택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p>
	<p>■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지방자치행정이 성숙된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성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구정평가단은 약 600여명으로 구정의 10개분야 43개항목을 여성의 섬세한 눈으로 구정을 평가하고 있고 이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우리 구정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p>	<p>➔</p>	<p>(區廳長 李政奎) 백련산체력단련장을 국선도 단전호흡수련장으로 만든 저의는 무엇이나고 하셨는데, 고건 시장에게 처음부터 단련호흡수련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받았고 구비에서 사용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표석 또한 구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천명이상되는 회원들이 푼푼이 모은 돈으로 표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새벽4시 50분과 6시 10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단전호흡을 가르쳐 왔는데 아직도 하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 두 번을 되풀이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몸으로 구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한 봉사하고 싶어서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인데 시장이 쓸데없는 일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봉사할 생각이며 여기에는 추호도 개인을 위한 다른 뜻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파견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자체 회원들이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p>	
<p>이진수의 원</p>	<p>■ 공공근로사업의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p>	<p>➔</p>	<p>(區廳長 李政奎) IMF사태하에서 발생한 실직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절한 공공근로사업을 마련치 못한 고충과 근로자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과 소홀했던 점들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내년에는 대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보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기창표의원	<p>■ 2000년도 맞이 특별행사계획은 무엇인가 ?</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현재 저희구의 2000년도 맞이 특별행사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형무소 관련자료들과 봉수대 및 연못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p>
	<p>■ 국도 등의 대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한 각종 피해보상계획은 ?</p>	<p>→ [建設交通局長 崔聖根] 1번 국도상에는 의주로와 통일로가 있는데 폭이 20m이상인 국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맨홀뚜껑이 덜컹거리는 원인은 맨홀의 고무파킹이 마모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우리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관리주체는 서울시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도 1번상의 맨홀에는 상수도, 하수도, 한전, 체신시설 등 여러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여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p>
	<p>■ 윈스톱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p>	<p>→ [서면답변] 윈스톱행정이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일컫는 용어로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 등을 담당공무원이</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업무처리흐름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여 주관과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게됩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총204건으로 1일 평균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1회 방문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자료 및 관계기관,부서의 협조 등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여 법정처리기간 보다 1~2일정도를 앞당겨 처리하겠으며 처리진행상황을 수시로 유선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p>
	<p>■ 물품관리의 획기적인 관리방안은 ?</p>	<p>➔ (財務局長 崔泓鎭) 물품은 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을 절약한다는 것은 곧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공직생활 32여년 동안 물품이 돈이라는 인식아래 과연 절약을 했느냐 자문해 볼때는 사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물품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과, 동,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등 전 부서에 물품관리시스템을 설치했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이 모두 전산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염려하시는 관리측면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만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에게 물품을 아끼는 정신을 주입하고 지도하여 달성도를 체크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몽당연필도 사용</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p>	<p>했던 공직생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끼는 정신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도한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일시에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두고 정착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시일내에 시정해서 물품관리도 돈의 관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p> <p>→ [財務局長 崔泓鎭] 물품구매와 관련한 일부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견적서에 의한 물품구매의 나쁜 관행이 있고 행정편의상 도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으니 시정하라는 말씀인데 이부분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물품을 구매할 때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하나의 견적서로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은 생략해도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적당히 견적서를 만들어서 붙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재확인하여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물품구매시는 조달청장이 제시한 가격이나 물가정보지 즉 재경원에 등록된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정보지에 의한 가격 또는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p> <p>지적하신 도장을 오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을 통해서 또는 동에 관련 공무원들의 복무점검을 통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행정기관의 타운화가 되었을 때 구민의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p>	<p>➡ (區廳長 李政奎)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거리상 불편함이 많을 것인 바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책을 강구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구간부 및 주민들이 함께 참여, 연구하여 행정타운화에 따른 교통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p>	
<p>■ 옥천동 69~45간 도로 개설구간 업무 언제까지인가 ?</p>	<p>➡ (서면답변) 우리구에서 '97 도로개설사업으로 시행한 옥천동 69~45번지간 폭4m, 연장 90m 도로개설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기존 고압한전주 3본을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이설하려 하였으나, 한전주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간 협정에 의거 한국전기통신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설 장소 합의시에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주 이전장소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구와 한전,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이설장소를 협의하였음에도 「내집 근처 전주 이전 반대」로 이설하지 못하였습니다.</p> <p>앞으로 구와 한전측에서 이해 관계인을 계속 설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정일출 의원</p>	<p>■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 지적향상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p>	<p>➡ (生活福祉局長 全沅培)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고 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임으로 그들의 지식 함양과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감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은평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대지가 약 2,000평이상, 건평이 약1,500평인데 이 정도면 적어도 한 150억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계획이 아닌가 싶기에 장기계획으로 하여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사이는 주식도 60%이상이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고 금년도</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수출입에 있어서도 거의 20% 가까운 양이 인터넷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사이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지식제공이나 도서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지식산업센터의 150대 컴퓨터를 가지고 무료교육을 시키고, 거기 인터넷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30대를 두고 청소년들이 항상 정보를 검색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각 동에서도 청소년들이 가까이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책도 보고 지식도 얻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인터넷도서관을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운영 해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p>
<p>■ 시카고 상설전시판매장과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대하여</p>	<p>➔</p>	<p>〔生活福祉局長 全沅培〕 시카고 상설전시장은 鄭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를 대비한 사항인 만큼 지금 수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왜 이익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가 하시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으로 생각되기에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상품 하나라도 더 세계시장에 진출을 시키고 하나라도 더 장기 PR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연설때마다 전국민이 신지식인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고 지식정보시대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청와대의 경제정책보고회 때 박사나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 자장면 배달부, 우편 배달부, 농부 이런 사람들인 신지식인 아홉명이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신지식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여야만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하는 일이나 맡은 업무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혁신, 개혁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신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대문이 21세기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지식인을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신지식센타를 만들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사거리는 교통요충지이고 우리 지역내에서는 신촌, 모래내, 홍은·홍제 지역이 교통 편리하죠. 유동인구도 많죠.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상업, 경제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앞으로 경제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신지식산업센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타는 시립대학하고 연계해서 한 30여 개의 벤처기업이랄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가진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전망좋은 사업을 가진 이런 업체들을 키우는 겁니다. 거기서 키우고 기술지원도 하고 또 육성시켜 주고해서 바라기는 빌게이츠 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가가 우리 관내에서 30개가 아니라 하나만 나와도 대성공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컴퓨터 150대를 지원하여 우리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1년 연중 계속 교육을 시켜 주고 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전국 지방과 지역에 몇 군데 설치할 하는데 강북 지역에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바라기는 식음료 개발실 같은 것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 김치나 된장같은 것의 그명맥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이런분야가 또한 우리가 그 맥을 이어가야 할 책</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연구보급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사명감이 느껴 집니다. 鄭 議員님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IMF 위기랄지 지금 어려시기를 대통령이 잘 마무리하시고 나라가 최악을 상대는 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계기를 만들어 주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세대, 이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위치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상아탑 성 처럼 우리 지역사회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훌륭한 도서관들을 가진 대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도 빌려보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연세대, 이대를 비롯한 관내 8개 대학에 협조를 구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은 책을 보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p> <p>그리고 13만명이 운집한 홍은동 지역에 복지센터가 없지 않느냐 하여 그 지역에 '97년도에 홍은동에 종합복지센터를 짓고자 경찰청 땅 170평을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쪽 추진을 해오고 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3억을 더 편성해 주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명실상부한 복지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백련산, 안산공원 주위)납골공원을 설립할 의향은 ?</p>	➔	<p>(區廳長 李政奎) 연구 깊은 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시대의 고민스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장묘문화는 구민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 만큼 이해시켜서 추진할 사안으로서 관내 백련사라든가 봉원사 같은 큰 사찰 등에 권고하고 논의하여 보겠습니다만 백련산이나 안산에는 관련 법상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제성당에서 교회지하에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국민적인 고민을 끌어 안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 「오라, 동방으로!」 2002년 월드컵 대회전후에 상업지구인 가좌지역 위락시설에 대한 조건부 허가라도 승인할 수 없는가 ?</p>	➔	<p>(生活福祉局長 全沅培) 조건부허가는 일종의 내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대규모 시설을 하는 경우에 투자를 했다가 만일 허가가 안 나면 재산상의 큰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 즉 학교정화구역이랄지 도시계획구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맞을 경우에 일종의 내인가를 해주어 그 시설이다 되면 정식허가를 해주는 것이 조건부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허가의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대상은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안되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만 해당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1년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든지 허가기준에 맞아야 이 조건부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모래내지역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면 鄭 議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라 모래내로!” 할 정도로 모래내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실 모래내 지역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적에 남북시대가 열리고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 교통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 또</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거점이 돼야 할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현대화 계획을 용역을 주어 그 계획에 의하여 현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점도 개발했는데 그곳의 몇 군데 업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란주점이 유흥업소인데 물론 월드컵에 오시는 분들이 술도 먹고 단란주점에도 가고 하겠죠. 그러나 기본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그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왔을 때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p> <p>(보충답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은 절대허가가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인데 이지역은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경우에 허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m이상 대로가 있고 철길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바로 성사중학교 학생들이 남가좌1동 290번지 일대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근 1km이상을 걸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학교정화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지역에 대한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건건이 반대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기에 鄭議員님하고 똑같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에 특별한 단서를 두어서 예를</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들어서 25m이상 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간다거나 또는 철길, 담장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학 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이지역은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했으니까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과 집행부인 구청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설득해 나가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 나가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p>
<p>■ 남가좌동 124-147의 구유지 불량주택 정비계획에 대하여 (환경개선지구와 주차장시설의 경우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의 보상비용, 임대아파트 혜택 여부)</p>	<p>➔ (서면답변) 남가좌1동 124번지 일대는 대지폭이 B=13~16m L=150m 대지폭이 좁은 부정형의 토지(국공유지 4개 필지 2,432㎡)위에 1960년대 초에 건립된 노후불량주택(무허가 81동 103세대)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의 경우와 주차장시설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비교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방안은 지역주민 건축물 소유자 2/3이상과 3월 이상 거주 세입자의 1/2이상 동의 절차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다세대주택 건립의 현지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은 전체면적 2,432㎡중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면적 900㎡가 필요하고 약 3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부지면적은 1,532㎡에 불과하며, 개략적인 검토결과 건폐율 70%이하로 건축시 다세대 16평형 4층 규모로 건립시 11개동에 약 80가구 건립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건축할 경우 가구당 토지 및 건축비 65,000천원이 소요되며 건물주의 보상금은 없으며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혜택이 없고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경제</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적 부담능력이 적어 주거개선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p> <p>두 번째 방안인 남가좌지역 발전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15억내지 2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시 건물주는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한 보상금과 타지역에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APT 입주권이 부여되고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또는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 APT 입주권이 선택적으로 부여됩니다.</p> <p>향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차장 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심신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요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통한 사업시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조건 : 주민동의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예산확보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 : 교통행정과(도시정비과) ○ 결정 및 고시 : 도시정비과 - 소요예산(개략공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주차장 건설시 : 1,447백만원 ○ 2층의 주차장 건립시 : 2,527백만원 ○ 보 상 비 : 1,144백만원 ○ 공 사 비 : 303백만원 <p style="text-align: right;">(2층건립 : 1,383백만원)</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김대봉 의원	<p>■ 마을버스운행에 따른 문제점은 ?</p> <p>■ 독립문소공원(독립문파출소 뒷편)에서의 무료급식제공에 따른 문제점의 대안은 ?</p>	<p>➔ (區廳長 李政奎)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초에 운수업체의 대표와도 회동하고 우리구 친절교육팀과 연계하는 등의 협력을 통하여 관계자들의 의식이 바뀌어 친절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p> <p>➔ (生活福祉局長 全沅培) 저도 평소에 그 옆을 지나다 보면서 12시쯤에 노인네들이 빵조각이나 얻어먹고 하는 것이 사실 가슴아팠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저렇게 소홀히 대접해도 되는가 하는 자책감도 들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은 김종인씨라는 분이 한길봉사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97년 2월부터 본인의 사비로 10년 이상 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150명 정도가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미관상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인근 100m 거리에 천연동사무소 지하에 노인들에게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김종인씨에게 이용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등 金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에 그러면 급식대인 컨테이너박스라도 치워달라고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금년 말까지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치우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한길봉사회측에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건물을 구해서 실내에서 급식을 제공 하라는 것인데 이들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건물임차를 해서 실내에서 급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 문제가 해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신촌역 앞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반 대책은 ?</p>	<p>➔</p>	<p>지금 다시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에서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담당직원들이 반드시 이틀에 한 번씩은 전 지하철 역사 또 공원과 빈집 등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 가기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노숙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p> <p>[行政管理局長 羅松柱] 신촌역앞 의류상가를 찾는 외국인이 대략 300여 명에서 1,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주로 중국계와 동남아시아계이고 구매품목은 티셔츠류, 엑세서리류, 신발류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신촌 지하철 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청 현장민원실내에다 외국관광객 안내소를 병설 설치해서 외국인을 안내하고, 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p> <p>그리고 신촌기차역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월드컵 대비 일환도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즉 내년 상반기 이 공중화장실을 시비 약 3억 5,000 만원을 투입해서 현대식으로 완전히 개축합니다. 그 앞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고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신촌지역을 관광하는데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그곳에 배치할 안내요원 확보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예산형편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예산 확보가 인되어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p>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p>현재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외국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보충답변〕 신촌전철역에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에 외국인 관광객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국 관광객들 중에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어 전철이용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내년도에 신춘기차역 앞에 약 3억 50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지을 때 그곳 공간에 휴게소와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p> <p>그 다음에 관광버스 기사나 안내원들의 불친절문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회사와 기사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친절교육을 다시 한번 시킨다든지 해서 관광버스 기사나 가이드가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가번영회분들을 통해서 전체 상인들이 친절히 외국인을 대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p> <p>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신촌에 오시는 분들의 국적, 구매품목,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불법주차 단속을 일부 지역에만 집중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p>	<p>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촌지역이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고객들도 많이 찾아와서 번영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p> <p>[建設交通局長 崔聖根] 단속이 일부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차량 5대, 단속원 28명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도로는 물론 동장 책임 하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 이대입구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이면서도 사람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대입구는 일방통행지역으로서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특히 저녁시간대에는 불법주차가 더욱 극심하며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야간불법주차가 극심한 곳이 되겠습니다.</p> <p>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20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13일, 22일, 29일 모두 수요일, 금요일로서 통계적으로는 야간불법주차가 특히 극심한 때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 단속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이지 불법주차단속을 그 지역에 편중해서 실시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그 지역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p> <p>앞으로 단속할 때에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친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동별, 월별과 10월중에 날짜, 시간, 동별 실적에 대해서는</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의회에서 요구한 12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서면제 출토록 되어있어 현재 작성중에 있으니 그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p> <p>(보충답변) 10월 20일 13대를 단속한 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날 집중단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특정일, 특정지역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10월 중에 하루에 14대 이상 견인할 날이 17일이 되겠습니다.</p> <p>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일방통행로 지역에다가 항상 교통이 혼잡한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뿐이지 고의적인 단속은 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지금까지 10월 20일에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셨는데 특정일에 날짜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 <p>그리고 1년간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중에 하루에 14대 이상 견인한 일자가 한 달 30일중에 17일간이나 됐습니다.李文馥 議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7일, 10월 22일 이런 날은 17·18대, 10월 29일 24대, 10월 30일, 31일은 19대씩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견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막힌다든지 극단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주차난이 극심한 신촌지역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는가 ?</p>	<p>➔ (建設交通局長 崔聖根) 신촌지역뿐 아니라 우리 전 지역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촌일대는 타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팔려는 주민이 없어서 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p> <p>우리구에서도 앞으로 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적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또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말씀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주차장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촌 민자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때는 주차장이 어느정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보안등의 잦은 고장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p>	<p>➔ (建設交通局長 崔聖根) 보안등은 폭 12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등입니다.</p> <p>현재 21개동에 8,772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동별 보안등 보수비가 소액이다보니 보수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전년도 구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각동에 분산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괄조치하라는 지적사항도 있고 또 아시겠습니까만 금년도 2개동의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또 내년 6월 1일자로 나머지 여타 동도</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며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는 주택, 건설, 청소 이런 업무들이 전부 구로 이관되고 또한 작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할 때보다는 지리파악 미숙 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p> <p>그래서 저희들이 조를 짜서 1주일에 2회씩 2번 이상 순찰을 돌면서 부전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빠진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그리고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로 보안등을 이관하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기구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p> <p>그리고 보안등 번호표 문제는 현재 보안등 8,700개를 자동점멸기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p> <p>타이머를 설치해 자동점멸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대체된 보안등에 번호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번호표 부착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 제76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 (2000. 5.24 ~ 5.25)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전성장 의원	■ 안산식수계획 이대로 좋은가 ?	<p>→ (區廳長 李政奎) 안산은 우리구 중심부에 위치해 하루에도 한 3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매우 좋은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안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p> <p>우선 벚꽃길을 조성하고 기념식수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협조하여 한양아파트 부지를 사들인 일과 안산의 숲길조성 하는 것 그리고 자연과 우리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우리가 직접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안산에 자연사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들이 안산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래서 매년 수형이 불량한 수목들을 제거하여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와 유실수와 꽃나무등을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만 98년부터 금년 2000년 5월 현재까지 12억 8,500만원에 상당하는 수목을 식재했는데 그중에 수목 55,398주, 초화류 29,650본, 덩굴식물 600본을 심었습니다.</p> <p>앞으로 수목식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또 사시사철 푸른안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와 상록수를 식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p> <p>우리가 안산가꾸기 종합 5대 테마공원조성계획에 따르면 830억을 투입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약 140억이 투입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p> <p>두 번째로 정치인이 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안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계층, 어느 직업, 어느 신분</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을 가진 특정인만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체구민, 정치인도 모두 안산에 대한 애정은 똑같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들은 자기 인기관리와 관련하여 안산을 떠올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구민의 인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안산을 가꾸는 문제는 정치는 아닙니다.

확연하게 구분하자면 행정적 실무에 따라서 안산은 가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정치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산을 이렇게 저렇게 가꾸는 등의 그런 흔들리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합니다.

안산을 가꾸고 안산을 챙기고 안산에 식수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과 의원님 여러분의 몫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군부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면구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산에 그런 쓰레기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1991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당시 동작구에서 부구청장을 할 때에 환경미화원들에게 맨 처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묻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레기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쓰레기는 적당히 숨겨두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산에다 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제가 성북에 시민국장을 했을 때인데 지금 어느 곳이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다 분노를 부어가지고 그 산이 못쓰게 된 곳 그런 곳도 있습니다.</p> <p>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때 70년대부터 주둔한 군부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데 지난 3월에 식수적합성 여부를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6월말에 또 한 번 점검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p>
<p>■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후, 우리구의 시행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p>	<p>→</p>	<p>〔서면답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위법시공하여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처리하므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000. 1. 2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2000. 2.28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0. 3. 1부터 2000.12.16까지 한시적 운용되는 특별법으로 대상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1998.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며, 우리구에서는 기한내 대상 건축물이 모두 사용승인을 받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존하고 누락되어 불이익처분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대상건축물을 파악하여 안내하고, 4월 반상회지에 홍보하는 등 모든 구민이 알고 신고하도록 노력하고 있</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현지 개량건축물은 우리구 북아현3동 등 8개동에서 68년경부터 무허가양성화사업 및 현지 개량사업으로 진행되어 1981년도에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로 많은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으나 현재까지 무허가로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대상여부를 적극 협의하여 많은 구민이 양성화 혜택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이진수 의원</p>	<p>■ 안산의 환경관리를 위한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 는가 ? (보충질문) 군부대의 주둔은 국가안보 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안산 문제가 동 아일보 5월 8일자에 보도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왕산에도 '94년도에 청 구아파트 주민들이 계곡에 서 흘러내려오는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PVC관을 산 꼭대기에서 아래 평지까지 하수관 연결공사를 했습니 다. 오폐수를 흘러내리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부 실공사로 인해서 바람 불 고하면 전부 망가지니까 다 시 철거해갔어요. 그 후에</p>	<p>➔ [區廳長 李政奎] 군부대의 책임문제가 표면화 되었을 때에 군부대 책임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런 군부대는 만날 필요없고 구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군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리고 잘 이해 못하는 점에 대해선 군부대에서 앞장서야 하는데 군부대에서 몰래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안산을 파괴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상당히 분노를 했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장은 책임을 다했느냐 묻는다면 저도 책임을 다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미리 발견해서 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역시 반절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만나서 철저히 치워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치웠습니다. 도로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자로 재가지고 허가된 만큼만 도로로 하고 훼손된 옆길 부분을 나무를 심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처리결과를 사진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오폐수를 어떻게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안산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였다면 그 부대도 역시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p> <p>우리구 공원녹지과에는 산불감시원이 매일 산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진입도로 부분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말로 배수로를 만들고 흩어진 데는 석축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토사가 유출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후대책을 여쭙봤는데 그냥 나무를 심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재 쓰레기를 어떻게 운반하고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했고 구청장의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p> <p>(보충답변) 먼저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관심 갖기에도 쉽지 않은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 보안을 이유로 해서 출입 자체가 일단 어려워 민간시설 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에 대해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오폐수 문제는 법에 적합하도록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왕산의 경우는 李鎭壽 議員이 구체적으로 PVC관로를 철거한다 거기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인왕산의 경우 오폐수 문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단지 예를 들면 안산처럼 쓰레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을 직접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철저하게 할 것이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챙겨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 안산 쪽에 도로를 확장한 부분이 석축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직까지 재가 보고받기로는 석축을 쌓을 만한 곳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둘러보고 현장에 맞도록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를 처리할 것이 있으면 처리하고 관을 묻을 곳이 있으면 묻고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 공사를 했는데 '99년 우기에</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는 토사가 흘러내린다는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p>
<p>김영일의 원</p>	<p>■ 그간 서대문구가 친절행정으로 대외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과연 서대문구 1,300여 공직자가 그 명성에 걸맞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가?</p>	<p>➡ [區廳長 李政奎]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린다고보다 우리가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구민앞에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친절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흡사 친절을 종합적인 예술품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p> <p>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작품을 만들 때에도 한 두번 손질해 가지고 작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절은 분명히 타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앞서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도 더 자세를 낮추고 네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우리 직원들이 따라와서 친절문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p> <p>제가 한동안 작은 문제로 의원님들에게 이것저것 말하는 것보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p>
	<p>■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원의 사후관리가 안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	<p>➡ [區廳長 李政奎] 공원관리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나무가 죽고하는 것은 대단히 안 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p> <p>문화촌 소공원 조성은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노래방, 단란주점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과잉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區廳長 李政奎] 우리 구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작은 소공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영업장, 음식점을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지난해 6월에 씨랜드화재사건과 또 10월에 인천 무허가호프집에서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우리 온 국민이 가슴아파했습니다. 이 문제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음식점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p> <p>그래서 부득이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호프집과 단란유흥주점 등 비디오방 그리고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도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식품접객업소가 5,600개가 있고 노래방, 비디오방 등 문화체육시설이 90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p> <p>첫번째는 지난 작년 11월 29일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을 총 단속인원 119명과 민간인 60명, 경찰관 11명, 공무원 48명이 합동으로 단속 점검을 해서 8,047개의 업소 중 총 457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2단계로는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정성확보를 위해 민간인 12명, 경찰관 2명, 공무원 9명 총 23명이 1,446개소를 점검해서 5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p> <p>1단계 집중단속 결과 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눈속이는 그런 위반사례가 적발이 되곤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이나 단란주점에서 유흥형태의 무도행위를 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민간인과 경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과잉단속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선 과도기의 어려운 시기에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업자와 시민 모두가 좀 참고 인내를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개개별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지만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근본 마음속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업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능한 한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金 議員님과 저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잘 지도하면서 우리 구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한한열 의 원</p>	<p>■ 우리구와 인접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임원 및 응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구의 홍보 및 구세입증대 방안 강구 등 종합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p>	<p>→ (區廳長 李政奎) 대회기간에 외국관광객들이 틀림없이 우리구 신촌에 와서 최대의 관광쇼핑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우리구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작년에 8월부터 내외국인을 맞이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p> <p>먼저 문화와 관광부분을 대충 살펴보면 대회기간 중에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북아현 일대의 전통가구점을 십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하고 또 전통결혼식 등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호기심을 돋구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창서어린이놀이터와 신촌기차역 앞 소공원에다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문여행사나 관광공사와 협조를 해서 관광코스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신촌기차역옆 소공원에다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금년 10월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창천동과 이대의류상가 웨딩드레스거리 봉원동 또 형무소역사관 등에 4개 지역에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금년 하반기쯤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자연사전시관과 연계되는 대로 아직 그 시간에 맞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역사박물관도 연계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일정이 잘 연결될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p> <p>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로와 성산로 등 주요간선도로 보차도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간판을 일제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신촌로터리와 연희IC 그리고 연대앞 녹지대에 꽃탑을 설치해 해서가로변의 녹화가 훌륭히 보이도록</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하고 또 신촌로터리와 미라보호텔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범공중화장실을 연대앞과 신촌역 앞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불광천을 정비를 해서 하천가로변에 토종꽃을 식재를 하고 다양한 생태환경을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p> <p>또 교통과 위생부분에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신호시스템을 경찰과 협조를 해서 알맞게 조정하도록 할 것이며 이미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식단체 정착을 위한 음식점소의 수준향상과 맛있는 집을 육성해서 반드시 외국관광객들이 믿고 찾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p> <p>식품위생기금을 융자알선을 해서 시설개보수도 역시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이용가능한 중저가 여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민박가구를 특별히 모집 알선해 가지고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음식점소와 숙박업소등의 업자와 종사원을 통한 친절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접한 상암동에 주경기장이 위치한 잇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흡수하고 이 기회에 우리구의 문화관광구로써의 위상을 확실히 해서 이것이 기점이 되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대문구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김종철 의 원</p>	<p>■ 도로변의 점포에서 갖가지 상품들을 인도상에 무단적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구 가로정비대책과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p>	<p>➔ (區廳長 李政奎) 金鍾喆 議員님께서 아주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문으로 오히려 저에게 칭찬을 겸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칭찬을 들었다기 보다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겸손을 섞어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이것저것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p> <p>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가로정비 또 가로수 그리고 거리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들 해주셨습니다.</p> <p>우선 가로상의 노점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실은 서울시내 일제 노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조종을 하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습니까만 IMF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또 세계적 차원에서 노점상을 그렇게 미관적 측면에서만 도시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간에 버려져 왔었는데 금년중에 이것을 시에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p> <p>아까 우리 金鍾喆 議員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잘 연계하고 그리고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로환경에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p> <p>또 아까 가로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제주도 서귀포는 가로수가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구도 그에 맞는 가로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길게 두되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의 모습에 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해서 구청장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하 간부들이 구청장을 따라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제가 덕이 부족하고 능력이 적기 때문에 직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나 우리 간부들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p> <p>(보충답변) 都市管理局長 崔洪大 : 먼저 가로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어제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가로정비가 다소 완화된 그런 분위기로 된것은 사실입니다.</p> <p>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단속을 완화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 동안 소통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건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p> <p>그렇지만 이제는 금년에 개최하는 아셈회의라든지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은 당장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상적치물 치우기 계획이 시달이 돼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우리구에서 전라북도 완주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며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 해주셔야,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어떤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완주군과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주도 비교시찰시 버스 안에서 간략하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완주군으로부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시 현 보건소건물이 비어 있어 보건소 건물에서 추석 전에 약 9일간 직거래장터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수차에 걸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미뤄왔고 특히 금년 선거기간동안에는 모든 행사를 좀 자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또 완주군청에서 농번기되기 전에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실무자들끼리 완주군청과의 날짜를 교환하다보니까 5월 17일로 일단 구두합의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의회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 좀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 일정이 완전히 협의가 안 됐고 구체적인 방침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훼손되지도 않은 관내 가로수의 보호판과 보호틀을 최근 5년 동안에 약3차례 교체를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이는 예산낭비행정이 아닌가?</p>	<p>➔〔建設交通局長 崔聖根〕 현재 우리 구에는 16개 노선에 7,450개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심가로변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 작업이나 교차로 확장이나 교차로 경계석 교체 등 각종 정비사업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가로수 보호틀 재설치 작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p>	
		<p>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촌로변의 기존 보호판 교체는 신촌로 정비시에 보도도를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보도블럭을 소형 보합블록으로 교체하면서 신촌로 가로수 870주 중에서 보도 중앙에 있는 가로수 8주를 화강석 보호틀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가로수 보식과 가로수 식목행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신촌로에 걸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세로에 82주 신촌로에 74주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보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호판 규격과 맞는 보호판이 설치되어야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강석을 부득이 교체 했습니다. 어쨌든 가로수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p>
<p>■ 신촌민자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명물거리"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가?</p>	<p>➔〔都市管理局長 崔洪大〕 신촌민자역사 추진계획 위치는 서대문구 신촌동 74-12일대 신촌기차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713평이고 건축면적은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이 26,943평입니다. 이중에 역무시설이 3천여평이 되고 나머지는 상업업무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이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 너무 규모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모는 앞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관련부서 의견을 다 반영한 계획이 다시 제출이 되면 우리 서대문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수정의견이 나오면 수정하고 확정이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결정 요청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이 착수 될 것으로 봅니다.</p> <p>현재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돼 있고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이 주관해서 설립한 신촌역사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은 대우중공업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으며 대우중공업에서도 채권단의 승인에 따라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p> <p>이어, 명물거리 주변 용도지역 변경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p> <p>신촌지역 일대에 대해, 95년 6월에 저희 서대문 구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됐고 96년 5월 1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96년 5월 2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p> <p>이때 계획을 보면 창천동 72번지 및 대현동 40번지 일대 그러니까 아대전철역입니다. 준주거지역 3,8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됐습니다.</p> <p>다음에 창천동 72번지, 62번지, 31번지, 32번지, 33번지 일대 신촌로와 연세로 주변 33,800㎡ 중에 명물거리 6,100㎡까지 포함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p> <p>그런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이 신촌로 주변에, 신촌문고</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주변의 반정도 규모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나머지 반은 준주거지역으로 3,800㎡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세로 주변하고 명물거리 일부 6,100㎡은 도심교통난 증가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5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2001년에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p> <p>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좋은 민자역사도 들어설 것이고 주변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이 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p> <p>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p> <p>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 하면서 당초 주차장계획은 창천동 2-77외 13필지 220평을 주차장부지 예정지로 결정했었습니다.</p> <p>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또 거기에 위치한 민들레영토라는 찻집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들레영토만은 남겨달라며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돼 있어 여기를 한번 가 본 사람이면 여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며 이 지역을 잊을 수 없게 된다는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까지도 이 민들레영토를 살려달라고 그런 의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p> <p>변경을 하는 위치는 대신동 92-11호 가로공원이</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되겠습니다. 이 가로공원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고 도로로 돼 있습니다.</p> <p>그래서 金 議員님께서 걱정하신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가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상단계입니다.</p> <p>이 계획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가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로면적이 일부 줄어들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신촌기차역주변 이대의 류상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코스 주차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특히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주민들 설득하시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주차장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대신동지역 쓰레기적환장 위치변경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p>	<p>→ [生活福祉局長 全沅培] 그 동안에 2개 초등학교 담장옆에 있는 적환장 때문에 학부모들 또 학생들, 교사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담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p> <p>지난 '98년도 '97년도에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그 동안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는 견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어차피 이전을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는 분명히 이전을 하겠다는 확답을 드립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정혜연 의원	<p>■ 연희2동 소재 지하차도의 인도는 경사가 35도의 급경사인 관계로 보행자가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대다수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어 그간 인사사고도 몇차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인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재보완시공할 용의는 없는가?</p>	<p>➔ (區廳長 李政奎) 연희2동에 있는 지하차도는 사실은 제가 '94년 11월에 임명구청장으로 왔을 때에 첫번째 개통됐습니다.</p> <p>물론 제가 공사하거나 일은 하지 않았고 테이프커팅만 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사용하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인도를 차도안에라도 연계할 수 없을까 여러번 검토했는데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p> <p>첫째로 법률적인 문제로 차도위에다 인도를 만들 수 없는 즉, 일정 거리가 유지가 돼야 차가 사고 없이 다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여백없이 인도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도시관리 즉, 법에 맞지 않는 시설을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돼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난 모든 일체의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이 급경사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鄭 議員님과 같이 대책을 심사숙고히 연구해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p> <p>옛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할 때에 학생들이 잔디밭으로 계속 다니는 것을 보고, 왜 그 잔디밭으로 다니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편해서 그렇다고 해서 잔디밭으로 도로를 내주어 쉽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민을 아끼는 뜻에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자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다시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랄 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접시를 깎을 때는 어머니가 화초리를 들고 무척 나무랄 때가 있었습니다만 간장이 든 큰 간장통 항아리를 깎을 때는 일체 저한테 문책하거나 매질을 하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p> <p>의원님 여러분께서 작은 흠은 우리 더불어서 채찍질하시되 큰 흠은 오히려 감싸주시는 그런 아량으로 구청장과 우리 직원들을 함께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p> <p>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구청장과 의원님 여러분과는 공동의 선출직으로 따라서 같이 가는, 같은 길을 모색하는 그리고 같은 공과를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p>
<p>유규상 의원</p>	<p>■ 서대문독립공원 및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변 환경 저해요소에 대하여?</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변전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지하화하는 문제를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측에 의하면 이 변전소가 주변 약 3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하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지하화하는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차폐시설만이라도 가능토록 한국전력측과 깊은 얘기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두번째로는 구 현저파출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만 경찰청 소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치안유지를 위해서 순찰</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대기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경찰청과 좀더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p> <p>다음으로 공원 매점의 불결 문제와 이전 문제는 서대문독립공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서울시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민간위탁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선은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장차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울시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이 서대문독립공원과 서대문역사관에 걸맞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p>	<p>➔</p>	<p>(生活福祉局長 全沅培) 유진상가 2층, 3층 건물은 면적이 1,553평입니다. 지난 '92년에 내부순환도로 공사구간에 저축이 되어서 보상 160억원의 보상을 끝내고 2층, 3층을 존치시키되 4, 5층은 철거를 해서 약 8년 이상을 공가로 내버려뒀던 그런 건물입니다.</p> <p>그 건물을 작년 3월 18일 시장님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고 또 부설주차장 홍제천 복개상에 700평을 위임을 받았고 공사비는 약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와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수는 31개 업체입니다. 작년 11월 업체모집공고를 해서 98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p> <p>그 98개 업체를 1차로 시립대학교수 6명이 서류심사를 해서 50개로 압축을 하여 다시 시립대학교수와 저희구청과 그리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대표단들과 함께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하루종일 전부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전가능성, 창의성 또 자금능력 또 기술의 세계화, 경쟁력 등등을</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평가를 해서 36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p> <p>그 업체는 현재 전자통신업체가 8개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8개 업체, 기계부품이 4개 업체, 디자인업체가 3개 업체, 애니메이션 2개, 그리고 시공개발업체 2개, 생명공학업체 1개 업체가 있습니다.</p> <p>참고로 말씀드리면 LS같은 회사의 경우는 연대 물리학과 강사로 나가시는 분하고 6명이 팀으로 되어 가지고 반도체 생산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계를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p> <p>그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특허나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업체중에서 세계적인 벤처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봅니다.</p> <p>그리고 그외에도 벤처업체 36개 업체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설치한 정보통신교육원이 있습니다. 매일 한 2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인터넷이랄지 멀티미디어랄지 이런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만명 정도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주부들도 1주일 단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p> <p>그리고 작년 질문때 鄭日出 議員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인터넷도서관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멀티미디어 TV, PC와 CD랄지 비디오테잎 천여 개를 갖다놓고 배우는 학생들이 와서 정보지식을 검색하는 등 공부를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곧 입주되면 우리 관내 각종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이 되며 그외에도 중소기업체상품전시관</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도 있고 또한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 등을 전시하는 우리 민속주전시관도 있습니다.</p> <p>그리고 현재 수입·지출 관계는 금년도 세출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수입을 보면 임대료 수입을 시하고 우리하고 30%씩 나눠갖습니다. 약 1,000만원, 관리비가 평당 1만원씩 해서 연간 7,800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8,600, 공과금 수입이 4,800만원 해서 한 1억 7, 8천만원 정도가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으니깐 한 2, 3천 내지 4천 정도가 겹이 생깁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독립채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입주시킬 적에 주식상환이행약정을 넣었습니다. 벤처로써 성공을 하고 주식공모를 했을 적에 그 주식을 우리 구청에 공모주 형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약정을 체결해 놨습니다.</p> <p>만일 우리 입주업체 중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공을 해서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이 된다면 지 주식시장에 등록이 되면 우리도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좋은 업체가 나온다면 좋은 전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31개 업체가 있고 인터넷도서관이 있고 정보통신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p> <p>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층 유진상가가 그 동안에 4-5년 정도 점포가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유진상가측에서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니까 1층 점포를 새로이 단장을 해서 새로운 모습의 마트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영방안에 대하여</p>	<p>→</p>	<p>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아울러 소규모업체입니다만 31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소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며 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관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p> <p>그리고 단일 벤처시설로써 제일 큰 규모고 또한 각종 첨단기기들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반드시 훌륭한 또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가 나오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p> <p>그리고 현재 8명의 우리 직원들이 1,500평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숙직도 자주 돌아오는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역경제와 전직원이 숙직을 하도록 했습니다.</p> <p>〔建設交通局長 崔聖根〕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각종 행정기관을 구청 중심으로 만드는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보건소를 구청옆 현재빌딩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행정을 펴고, 또 자연사전시관을 2002년에 준공목표로 해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등기소도 홍은3동으로 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p> <p>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환경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민원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p> <p>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구청을 경유하는 교통편은 일반노선 버스가 8개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 3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큰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청을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동 주민은 8번, 73번, 74번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구청을 방문하시는데 이 버스들의 노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관계로 인해서 교통정체시에는 운행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배차시간 단축을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와 운수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74번 우신교통의 경우를 보면 현재 차량을 한 대 정차를 하고 배차 간격은 6분에서 7분, 차량은 13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연장은 주민의 교통편의 조성을 위해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위배돼 가지고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고 현재 상태에서나마 불편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순환버스를 포함한 일반 시내버스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 관청인 서울시와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p>
이진수 의원	<p>■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하여</p>	<p>➡ (行政管理局長 羅松柱) 먼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선거사무를 주관했던 국장으로서 선거사무에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친절하다는 구호만 요란하다 이</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100%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p> <p>시민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이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다만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기강확립과 관련해 수시로 전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실태를 점검하고 또 취약부서에 대해 암행감찰 등을 실시하는 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추석이나 설날, 연말연시에 행정기능을 정상화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p> <p>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승진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 <p>따라서 전직원이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p>■ 마을버스 운행질서 및 정비불량에 대하여</p>	<p>➔</p>	<p>(建設交通局長 崔聖根) 마을버스의 운행질서와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중간 정차라든지 격간 정차, 장시간 정차, 청소상태 불량, 정비 불량등 아주 세세하게 사례별로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질책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업체 현황은 10개 업체의 19개 노선의 11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격간정차, 또 전용차로 이탈운행 또 난폭운전, 청소 불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실시는 등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p> <p>앞으로는 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가 5개 업체에 13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정비 불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실시를 해가지고 3개 업체의 8대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p> <p>앞으로도 마을버스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관 기관인 경찰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잡고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특히 정비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비불량 상태에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을 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鎭壽 議員님께서 사례별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p>

■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 (2000. 7. 5 ~ 7. 6)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최광진 의원	<p>■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마을 주진입로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은 있는가 ?</p>	<p>➔ [區廳長 李政奎]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崔光振 議員님께서 홍은2동에 교통상의 취약 여건에 대해서 세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자 합니다.</p> <p>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홍은동의 외곽도로관계는 도시계획시설이 '98년 4월 30일 결정되었습니다만 환경복지 문제를 비롯하여 지형상 기술적 어려움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1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이 도로는 우리 홍은동 일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p> <p>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법령을 거쳐서 세심한 검토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홍은동 극동아파트와 풍림아파트에 주진입로는 지난 '94년도에 8m 확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은 그후 극동아파트의 준공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주차공간이 극히 부족해서 도로상에 2열로 주차하고 있으며 점포들이 도로변을 무단점용하여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졌는데 도로 확충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나 인접한 이면도로를 확충해서 이 일대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p> <p>먼저 홍은 339-9의 10으로부터 223번 간에 430m의 도로개설을 지금 보상을 2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홍은동 산 699-8 512호간에 92m 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역시 보상 마무리 공사에 3억이 소요되며 동시에 홍은동 210-11호에 771번 간에 270m 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 2억원은 추경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p> <p>연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해서 도로기능을 확보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p>
	<p>■ 향후 구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할 구정운영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 (보충질문 : 도로공사와 관련한 공적인 일에서 실수를 범한 결과에 대해 구두상의 사과로 종결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시유지가 많이 접해있는 일부 구간이라도 8m 도로로 조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p>	<p>➔ [建設交通局長 崔聖根] 홍은동 도로계획 노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p> <p>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m에서 8m로 한 것은 예산편성시 저희 직원들의 착오였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96년 5월 28일에 6m로 결정고시가 돼 있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6m를 8m로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p> <p>이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정정공고를 하고 관할 동장에게도 지시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지역별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다소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경로당 설치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성을 결여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p>	<p>➔ [生活福祉局長 全沅培] 崔光振 議員님께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홍은2동 노인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는 현재 노인분들이 2만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노력한다면 그분들이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로당 설치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동감합니다.</p> <p>지금 현재 노인정은 구립이 31개, 사립이 40개로써 총 71개입니다. 저희 구립은 각 동별로 1개 내지 2개, 3개가 있는데가 있고 사립은 1개 내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홍은3동으로 노인정이 7개소가 있고 천연동과 홍제3동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반면 북아현1동, 창천동, 남가좌1동은 구립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으로서 동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구립은 1개 내지 2개씩 다 있습니다만 범상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사립노인정이 많이 생겨서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동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동별로 편차가 없이 균형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2동 노인복지회관은崔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시비에 1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예산 배정을 받아 노인정 건립을 하기 위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노인복지에 관한 구당 1개소라는 원칙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로부터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년 중에 공사가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미필지 68평은崔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산이 나오고 또 예산이 나온다 할 지라도 별도 부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폐쇄된 파출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쾌적한 쉼터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충질문] 서부경찰서가 주민들에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파출소건물에 대하여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파출소 철거에 많은 시비는 없을 것입니다. 파출소가 폐지된 이유는 첫째 서울시 소유의 땅이라는 것, 둘째 도로계획에 편입되어서 일부 도로로 접해 있고, 셋째는 비좁아서 더 이상 파출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조성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p>	<p>➔ (建設交通局長 崔聖根) 폐쇄된 파출소 부지를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로 활용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는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부지로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현재 소유는 경찰청 소유로 돼 있고 땅은 우리 서울특별시로 돼 있습니다. 경찰청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홍은동 파출소가 통합됨에 따라서 기능이 폐쇄되어 공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부서인 서부경찰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파출소 건물의 폐쇄 여부라든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경유해서 현재 경찰청에 상정돼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조성되고 또한 폐쇄된 파출소 부지는 현재 하천부지기 때문에 용도 폐지의 절차를 거치고 파출소의 향후 이용계획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공원이나 또는 공공용지 혹은 쉼터로 결정해서 지역적으로 부족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김화형 의원	<p>■ Noblesse oblige(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의상의 의무)</p>	<p>→ [區廳長 李政奎] 우선 제 사적인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이미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사실과는 다르게 신문에 보도를 했다는 것과 현재 법률적으로 오히려 제가 피해자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p> <p>사실 제 신분을 미끼로 해서 그간 여러 해 동안 저에게, 여러 의원님들께 밝히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3억에 상당하는 거액의 돈을 즐기차게 협박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상대가 구속된 데 대해서 혹시 구청장이 그쪽을 구속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시는 구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상대가 구속된 것은 저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검찰에서 수사과정 중에 범죄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구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물의를 빚게된 것에 대하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p> <p>더 많은 봉사로 더 열심히 멸사봉공하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관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p>
	<p>■ 언론 길들이기</p>	<p>→ [區廳長 李政奎]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주요 정책과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지역 신문을 구매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정신문인 지역신문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구정과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주관적인 보도를 함으로써</p>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구의회에서 구매중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도 이미 익히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은 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았으며 또 동시에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 5월 25일부로 구매중지를 했습니다.</p> <p>이것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중단 신문은 정기간행물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 논평은 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취재기자의 주관적인 보도로 구정과 구의회 활동이 구민에게 왜곡되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p>
<p>한한열 의원</p>	<p>■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p>	<p>→ (서면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동팰리스빌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 연희동 140-7 외 26필지 - 부지면적 : 7,441.02㎡(2,251평) - 규모 : 총 101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2동(13~19층) 89세대 · 연립2동(4층) 12세대 - 사업승인일 : 2000.6.5 ○ 조합측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주거지역과 풍치지구에 걸쳐 있는 주택단지 용적율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업승인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단지가 지역 또는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필지별로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따라 용적율

질문의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음.(풍치지구완화구역 건축기준:층수 4층, 건폐율 40% 이하)○ 연희동 팻리스빌 재건축사업승인은 동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서울시행정심판결과 본 내용이 타당하다는 재결이 있었음.(2000.4.3)

II.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회기변경에 따라 2회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의회운영위원회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00. 6 . 28.(수) 16:00
- 감사장소 : 의회 제1회의실

나. 감시대상 : 의회사무국

다. 감사반 편성

- 총괄 : 감사위원장 조재구 위원 (간사 : 최광진 위원)

구분 반별	감사위원	대상	사무보조	비고
제1반	반장: 정혜연 반원: 이문복, 최태중, 허준구	의정담당업무	의사담당주사 박 천 기 직 원 이 기 대	
제2반	반장: 김종철 반원: 최광진, 김대봉, 이기봉	의사담당업무 의안담당업무	장 혜 경 신 성 운	

라. 감사결과

- 1) 총괄 : 총 6건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건)

2)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연번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구의회사무국 (의정팀)	1	감사장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행정사무감사장은 구청감사장 수준이상으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나 회의장내·외 행정사무감사장표시 및 안내(프랑카드)를 하지 않는 등 오히려 구청 감사장보다 준비가 소홀한 것은 사무국감사를 형식적으로 끝낼 우려가 있는 바, ○의원들이 구 행정사무감사를법규대로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의원 사무보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장비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문품관리 점검을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91년 구입품을 2000년 5월4일 실시 비품관리가 매우 불량함. 또한 내구년한이 5~6년 지난 장비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장만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구의회사무국 (의사팀)	3	연중회의 운영계획 철저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의 회의(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은 연간 의사 운영 계획에 의하여 빈틈없이시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회의 일정을 확실하게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예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청에서 제출한 안전과 의회행사등을 참조해서 회의운영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진행 절차 및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게 하므로써 의회의 회의운영이 하자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구의회사무국 (의정팀)	4	공통경비 계정장부 기록부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경비의 계정장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록유지 할 것.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영위원회,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별로 계정장부를 기록유지 할 것 ○영수증 일자와 금액을 철저히 기록유지할 것. 	
구의회사무국 (의사팀)	5	모의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의의회 개최는 초,중등학교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모의의회 개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의회의 회의운영 전과정을 방청하도록 한 후 모의의회를 개최하므로써 모의의회 개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의원이 모의의회 개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실시하므로써 학생들의 모의의회 개최에 지도 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건의 및 기타사항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의 및 기타사항	비고
구의회사무국 (의정팀)	1	예산의 효율적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정활동이 없다는 사유로 상반기 예산집행이 감사일 현재 아주 저조한 바,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원세미나, 특별위원회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이 분기별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함. 	

2. 행정관리위원회

가. 감사기간 : 2000. 6. 26.(월) ~ 2000. 7. 2.(일) (7일간)

나. 감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

1) 감사대상 : 1담당관 2국 1소 10개동사무소

- 부구청장직속 :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4개과)
- 재 무 국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4개과)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
- 동사무소 :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10개동)

2) 감사범위 : 2000년도중 처리한 구행정사무 전반

다. 감사반 편성 : 위원장 최용완 위원 (간사 : 김대봉 위원)

1) 국별 감사반

구분 반별	감사위원	대 상 부 서		사무보조	비고
		국 별	실·과별		
1반	반장 : 한한열 반원 : 김대봉 오환인	행정관리국 (4과)	총 무 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의사담당주사 박천기 직 원 이기대 김종일 장혜경 신성운	
2반	반장 : 이기봉 반원 : 유규상 우유근	재 무 국 (4과)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 적 과		
3반	반장 : 정해연 반원 : 조재구 기창표	부구청장직속	감사담당관		
		보 건 소 (3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 약 과		

2) 동별 감사반

구 분	감사위원	감사대상	비고
1 반	정혜연, 김대봉	충정로동, 천연동	
2 반	유규상, 조재구	북아현제1동, 북아현제2동, 북아현제3동	
3 반	한한열, 이기봉	대신동, 창천동	
4 반	오환인, 기창표, 우유근	연희제1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라. 감사결과

1)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비고
계	75	43	20	12	
감사담당관	12	5	3	4	
행정관리국	16	10	4	2	
재무국	13	9	2	2	
보건소	10	8	2	0	
10개동	17	8	5	4	
부서공통	3	1	2	0	※동공통사항
기타 부서	4	2	2	0	

2)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연번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감사담당관	1	동사무소 정기감사사항	<p>동사무소의 정기감사는 3년마다 1번씩 순차적으로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1999년의 동사무소 정기감사는 홍은 1동의 3개동을 실시하고, 2000년도에는 북아현동의 3개동을 실시한 감사결과를 확인한 바, 1999년도 정기감사시에는 37건이 적출되었고, 2000년도에는 57건이 적출되는 등 21개 동사무소 전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이 소홀하였음.</p>	
	2	문서관리규정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작성·보관하며 증빙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각 실과 공통으로 문서관리규정의 기본사항을 준수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공무원에게 문서실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3	공휴일 환경순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휴일의 환경순찰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2인 1조로 편성되어 직원 개인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바, ○ 엄연히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차량을 활용함으로써 공무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안전보장대책의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순찰이 형식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 공휴일 환경순찰시에는 공무수행 차량으로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함.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감사담당관	4	순찰 적출사항 처리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시설 안전과 복리시설의 점검 등 예방차원에서 순찰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면 매일 정상적인 순찰운행은 하고 있으나 순찰일지에 기록하는 적출사항은 부실하며 의례적인 순찰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 특히, 2000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와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그리고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적출사항이 전혀 없어 순찰의 실행이 미흡하므로 그 대안으로 향후 순찰일지에 순찰자를 명시하고 순찰자가 순찰일지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며 뚜렷한 확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무악청구APT 개발부담금부과 체납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악청구APT 개발부담금부과 체납문제에 대하여는 1996년 11월 8일에 서울고등법원 제13특별부 판결문 6쪽에 보면, 납부고지서의 납부의무자를 조합대표 이한우로만 표시한 것은 납부의무자로서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은 특정되나 그밖에 나머지 16개 조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그 부과방식에 있어서 위법할 것이다 라고 공무원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서대문구청에서는 누구하나 책임규명이 없어서 41억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행정시효가 2002년이 가 때문에 지금도 매월 1회씩 허공에다 송달만 하고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가려 구상권을 발동하여 환수조치하기 바람.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총무과	1	행사에 필요한 초청인사 범위사항	2000. 5. 4.일 완주군과 자매결연시 우리구의 주요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생단체 회원에 한해 여러명을 초청한 사례가 있어 구민화합에 저해요인 발생, 직능단체인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배제되어 효과적인 자매결연행사가 되지못했으므로 차후에는 어떠한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할것임.	
	2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건국의 추진은 범국민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하나,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며, ○ 예산은 21,085천원이 편성되어 집행이 290천원으로 회의개최를 격월1회로 계획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 향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3	동행정장비 구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기의 구입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관리유지비를 계산해서 예산절감후 효과를 거둘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생각없이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적하는바, ○ 금년도에 냉·난방기는 15개동에 18대 금액으로는 42,87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였는데, 청사규모가 비슷한 북가좌1동과 홍제2동의 예를 들어 보면, 홍제2동에 도시가스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연간 시설가동비가 1,102,860원이고, 장비수리비가 4,485천원이며, 북가좌동의 냉·난방 장비구입비는 조달물가로 3,000천원에 구입하고, 연간시설 가동비용은 2,089,160원으로 절약비용은 986,300원으로 21개동의 총 절약합계 비용은 20,712,300원임. ○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행정장비의 구입은 좀더 철저한 검토와 조사에 의해서 구입하여야 할 것임.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총무과	4	국·시책사업 추진실태 (별지참조)	○ 새주소사업 팀장 및 동기능전환센터 팀장의 세부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시책사업의 중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기획예산과	1	송무행정사항	<p>① 소송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송무에서 1심에서 패했을 때 일률적으로 상고해서 상급심에서 또 패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구행정예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음.</p> <p>실례를 들면, 서대문구홍제동 266-273 대지 127㎡ 이하우 소유 소송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6.21 1심에서 패소하고 1996. 2. 21 2심에서 패소하였음. 우리구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이 ₩2,327,910 패소비용이 ₩49,256,390 패소비용의 내용을 보면 판결금 ₩23,204,217 지연손해금 ₩444,259 임대료를 보면, 1995년도 ₩4,043,358, 1996년도 ₩5,391,140 1997년도 ₩5,391,140, 1998년도 ₩5,391,140 1999년도 ₩5,391,140 등 총 ₩51,584,300원의 막대한 재판비용을 투입하고도 불신행정을 초래하고 있음.</p> <p>② 결론으로 말하자면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에 의하여 조속히 예산반영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기할 것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기획예산과	2	심사평가의 개선방안 제시	<p>○ 심사평가는 한해동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심사평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함.</p> <p>첫째, 너무 많은 대상사업(총 113건)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곤란함. 심사평가 대상사업을 너무 많이 책정하다 보니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반드시 분기별 점검이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세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p> <p>둘째, 현장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현재 이루어지는 심사평가는 서류검토와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질적인 심사평가를 위해서는 현장확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기획예산과	3	송무(訟務)사항	<p>○ 해당 사건은 우리구 남가좌동214-14호에서 분할된 토지로 1980년경부터 무단히 점유,포장하지 않고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하여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에게 소장을 냈던 것인바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 총 임대료 1,172,9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바, 그렇다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여타 개인소유의 대지가 유사한 경우가 많을터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p> <p>○ 본 송무사항을 감사하면서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의구심을 버릴수 없는바,</p> <p>○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주(주민)가 소송을 걸어 송소해야만 사용료와 아울러 편입된 땅을 매수하는가일반 선량한 시민은 소송도 할줄 모르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데 꼭 큰 소리만 내는 주민에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재판을 걸고 보상은 해주는 건지 일반주민은 국·공유지(잡종지)를 조금만 점유해도 압류와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반서민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속수무책인체 당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사항임.</p>	

부서명	연번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문화체육과	1	자연사전시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p>자연사전시관 건립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 주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구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18억1천만원, 시비 80억원, 구비 93억1천8백만원, 총사업비 191억2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철저한 계획과 고중등 예상관람인원, 수입등을 수립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p>	
	2	체육시설관리	<p>○ 홍은동 산1-129 소재 구립 홍은테니스장에 2000.01.06일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소요예산: 13,510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명시설사용에 따른 전기요금까지 구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시정을 요함.</p> <p>※ 첨부 : 홍은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민원봉사과	1	병력동원훈련 소집명부 및 자원관리 실태 (별지참조)	○ 병력동원 훈련소집명부 및 자원관리실태를 확인한바 소집부대 및 훈련부대 현황이 보고시마다(3회 보고)상이하고 자원관리방법이 상이함, 이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업무로서 유비무환의 정신에 의한 업무이기를 요함. (실무자 업무미숙과 허위보고 및 답변불성실 부분)	
재무과	1	재산관리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말 기준으로 구 체납변상금은 국유지 17억 7천 2백만원 구유지 6억 5천 2백만원 시유지 3백만원이나 되는등 체납변상금이 총 24억2천7백만원에 달하여 체납관리의 심각성이 농후하며, ○ 구재정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상금의 체납액이 이와같이 많은 것은 납세의무자 대부분이 영세계층의 지역 주민으로서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변상금의 사용요율 또한 높아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구세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있는 실정으로 ○ 해당과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등을 통한 압류예고를 하는 등 체납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별도의 체납관리추진팀 구성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아울러 일정기간을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중에 납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방법등 납세유도 방안을 강구하여 구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점유하는 변상금 체납액을 현격히 감소시킬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람.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재무과	2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p>○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제 74회 임시회의시 보고이후 잡종재산 등 국·공유지가 매각되었음에도 제77회 임시회의시 (보고일자 : 2000.06.22)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은 국·공유지 재산 관리가 평소 허술한 것으로 사료됨. (허 위기록 보고서 작성 및 보고)</p>	
	3	공유재산 이관업무	<p>○ 공유재산 이관업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의 실시로 현재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중 시소유 및 구소유로 구분 조정하였으나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되지 않고 현재 시소유로 남아있는 재산을 찾아가 우리구 소유로 이관하여 공공용지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이며, 이관대상은 20m미만 도로가 그 주된 대상으로서 총 882필지 232,349㎡중 도로가 815필지 198,449㎡이고, 기타 구거부지 등이 76필지 33,900㎡로, 현재까지 107필지를 시에 승계 요구하여 총 77필지 48,194.5㎡를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p> <p>○ 공유재산 이관업무가 도로와같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각종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경우, 용도 폐지후 매각하여 구 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77필지는 너무 적은 분량이라고 사료되며,</p> <p>○ 따라서 재개발 지역과같은 경우 시에서 이관하기를 거부하는 등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좀더 많은 토지가 승계될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재무과	4-1	국유재산 소관청 변경사항	<p>○ 서대문구청에서 수임하고 있는 국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이 2,518필지에 1,190,000㎡이고 건설교통부 소관의 행정 재산이 914필지에 277,000여 평방미터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현황이 도로·하천 이면서 재정경제부 소관의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국유지 점유 사용자들에게 사용요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결여로 잡종재산 점유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현황이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인 행정재산과 현황이 대지인 잡종재산과의 차이는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경우 사용요율이 도로·하천은 0.005이고 구거는 0.025%인 반면, 잡종재산의 사용요율은 0.025%로서 도로·하천부지의 사용료 보다 5배가 높아 점유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하면 영세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할 것이며, 이와같이 사용요율의 편차가 큰 것은 행정 재산과 잡종재산의 사용료를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법령이 각기 다른데서 비롯되는데,</p> <p>○ 이에 대하여 재무과에서는 1999년도 잡종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시킨 재산이 259필지에 55,838㎡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금년에도 148필지 46,878㎡의 현황 행정재산을 색출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중 임을 확인하였으나,</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재무과	4-2	국유재산 소관청 변경사항	○ 재산을 현황에 따라 관리전환 시키는데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재산의 매각, 민원상담 등에 급급하여 실태조사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련 부서에서 효율적인 실태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재산관련 전문팀을 구성·운영하여야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사료됨.	
세무1과	1	과오납 환부금	○ 과오납 환부는 예전보다는 착오부과 건수가 현격히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착오부과가 됨으로 부과전 철저한 검토로 정확한 부과가 이뤄질수 있도록 소관 공무원들의 주의가 요구됨.	
세무1과	2	채납통지서 송달사항	○ 대현동 재개발 종합토지세 채납내역은 269건에 292,706,840원으로, 담당공무원의 법령 착오로 인하여 통지서를 법인체와 토지주한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체에만 송달하여 재산세를 채납케 하였음으로 즉각 시정하여 재송달 조치하기 바람.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세무2과	1	자동차세 체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구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72,698건에 94억 2천 5백만원(우리구 시세체납액의 35%)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구의 세입증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는 담당부서에서 체납시 신속한 제재방범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세무 전문지식을 갖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흡하였고, ○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로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해당과에서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특별히 현지방문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며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 	
	2	세외수입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문제중 서대문형무소 입장료 문제에 대하여 입장요금은 어른이 1,000원 청소년·군인이 500원, 어린이 200원 등인데 1일 입장인원이 구청장의 말에 의하면 2,000명에서 3,000명 가량으로 관리인원은 직원 3명이 입장권을 그 자리에서 발행하여 입장시키는 단일방법이므로 담당직원이 작심만 하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내재하니, 입장료 징수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빠른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기 바람.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지적과	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서대문 출장소에 대하여 각종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자의 업무 능력 향상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함. ○ 1999년도 대행법인 지도감독 실적으로 11월에 3일간 현지출장으로 각종업무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아직 지도감독 실적이 없음. ○ 관련 법규에는 년 1회로 되어 있으나 필요시 지도점검 할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 실시외 분기 1회 정도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는 물론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보건소 (보건행정과)	1	전격 살충기 구매 및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7개를 개당 467,647원에 홍제천등 17개소에 설치하였으나, 효과와 성과 및 장·단점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고가제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 ③ 전격살충기에 순찰함 또는 순찰대장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순찰할 것과 해충퇴치 성과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④ 5월말 설치후 6월 26일까지 해충박멸 수거함을 한번도 검사 하지 않았음.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2	방역사업 홍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민의 관심사항인 방역사업실태를 중점확인한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다방면으로 발전이 이룩되었고, 말라리아·장티프스·세균성 이질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 전염병관리와 방역취약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에이즈 등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는 비교적 성실히 수행되었고, ○ 현재의 소독방법이 과거의 연막소독방식에서 몇배의 효과가 있다는 무연(無煙)의 동력분무방식으로 교체되어 보건소의 방역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원들이 각종보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방역소독이 전보다 소홀하다는 민원의 소리가 있어 이것은 방역소독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 문제는 우리구의 홍보물인 『해담는 마을』 과 동사무소의 각종 직능단체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홍보의 소홀로 지적되고 있음. ○ 향후 체계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오해불식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기 바람.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지도과)	3	업무용차량 관리사항	<p>○ 현재 보건소의 업무용 차량은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p> <p>가. 엠브란스(소형승합차:17,00cc)를 '93.01.13일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폐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운행을 하고 있어, 환자이송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p> <p>나. 방역소독차량A(라보)를 '91.12.06일에 그리고 방역소독차량 B (봉고:베스타밴)을 '93.04.14일에 구입한바, 요즈음 하절기를 맞아 방역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2대의 방역소독차량이 노후화되어 방역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구민건강의 차원에서도 즉시 시정하여 하절기 방역사업에 박차를 기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p>	
	4	비보험 의약품 단가사항	<p>○ 서울시 의약 12451-1049(2000.03.1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백신류 B형 간염백신의 7종을 단가계약하여 산하 보건소에 하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올바른 일이나,</p> <p>○ 만약 그 단가가 고가(高價)였을 경우에는 달리 제재할수 있는 장치없이 일반적으로 하달된 사항인바,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임으로 그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한다고 사료됨.</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지도과)	5	의약품 보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은 각과별로 지하 1층 또는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분산하여 냉장보관하고 있어 냉장보관 온도조절 및 사용시 불편은 물론 업무수행에도 일관성이 없어 합리성이 적절치 못한바, ○ 각과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업무수행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택 보관하게 하여 온도조절이 용이하고 수시사용에도 편리하게 보건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공통사항	6	창고관리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과 창고의 사용상태도 비교적 청결하고 양호하나, 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의약품, 서류,정소용 도구,반납해야할 책상 및 의자(폐품류) 등이 적재되어 있어 다용도(萬物品) 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며, ○ 또한, 품목별 보관 물품명,수량,입고일자 등이 누락되어 보관상태가 매우 비합리적인 바, 의약품 창고,서류고,잡류창고 등으로 분류보관하여 재고품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보건소 (의약과)	7	근무기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과에 근무하는 기술서기 김성한은 1995년도 노원구에서 사용하던 공무원증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은 근무기강이 해이된 사례임.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8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예산낭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입시 예산낭비의 방지 효과를 얻고자 몇 개의 판매처를 선정한 후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판매처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위견적서를 작성 첨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산절감 효과는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킴.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낭비 부분)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p>동사무소 (충정로동)</p>	1	소규모 사업	<p>○소규모사업을 2000.01.01~06.28현재까지 총 2건(4,200천원+2,800천원=7,000천원)의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리과정은 비교적 양호하나 더 많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대개의 경우 소규모 사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소규모 사업의 육성방향에 주력해야 할 것임.</p>	
	2	여직원 탈의실	<p>○여직원 탈의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여직원 전용 여가실로 지정토록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어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3	청사시설관리	<p>○충정로동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배출시설인 역류장비와 지하수 배출펌프의 불량으로 누수가 상당히 많으며, 장비의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시설보수 등 시정조치할 것.</p>	
<p>동사무소 (천연동)</p>	4	새마을 소득지원금	<p>○새마을 소득금을 지원신청시 아무런 담보물 없이 보증인만을 세워 대출을 가능케 하므로 대출금의 연체가 빈번히 발생, 본 사업의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원금회수에 지장이 막대함으로 대출절차를 건의하여 새마을 소득지원금 대출방법을 개정할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상신조치하기 바람.</p>	
	5	창고 정돈상태	<p>○창고의 보관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보관물품의 정리상태는 미흡하였으며, 물품의 보관목록 및 품명 등이 비치되지 못하여 창고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조치하기 바람.</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동사무소 (천연동)	6	시설관리 및 서류관리	○천연동의 창고와 식당 및 각종서류 보관 캐비닛을 일제점검한 바 전혀 정리,정돈 이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각종 증빙서 류는 색인목록이 되어 있지 않아 즉각 시 정할 것이며, 직원식당도 직원의 후생복 리 차원에서 시급히 개수하여야 할 것임.	
동사무소 (대신동)	7	동 소규모사업비	○대신동은 금년들어 현재까지 동의 소규모 사업 사업비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 는데 동장은 금년도 6월까지 무슨일을 하 였는지 의심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동 소 규모사업비가 사용될수 있도록 조치바람.	
동사무소 (창천동)	8	민방위장비 관리	○창천동의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장비의 신 규 구매분을 현재까지 개봉도 하지않고 봉합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민방위 장 비관리의 헛점을 들어내고 있는바 담당공 무원의 직무태만함을 들어낸 소지로 사료 되며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람.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공통사항)	1	서류편철상태 (사무처리규정 이행상태)	○본 사항은 전년도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 항으로 색인목록표와 페이지 부여 및 서 류철 표지의 입의 제작사용 등으로 사무 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상 낭비적 요소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어 시정조치해야 할 것임.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기타부서 (토목하수과)	1	보안등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관내 보안등은 설치연도가 오래되었으 며,우리구의 지형적 여건상 언덕을 낀 골 목길이 많은 관계로 타구에 비하여 매우 노후화 되어 있으며, 일부 보안 등의 설 치지역이 본래의 취지목적과 위배되는 곳 이 많으며, ○ 특히 보안 등의 고유번호가 부착되어 있 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 도로조명팀 직원 4명이 일과 후인 19:30 부터~24:00까지 21개동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과다로 형식적인 순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순찰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기타부서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2	안산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의 소중한 녹색지대인 안산의 환경 이 20여년 전과 비교할 때에 현저한 생태 계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 ○ 안산의 주위에는 현재 우후죽순격으로 생 겨난 약수터로 인하여 본래있던 개울이 말라 없어져 버려 가재도 멸종되었으며, 또한 안산일대에는 고양이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청설모,다람쥐도 멸종상태 에 있는 등 안산관리가 매우 허술하며, ○ 특히, 안산 정상부근에 있는 군잔지는 폭 1.7m와 길이 4.8km로 그 면적이 8,160㎡ (2,472평)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고 그 주변에 폐타이어가 11,600개나 설치되어 부식진행중에 있으므로, 비가 내리면 그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안산약수와 직결 되어 약수를 음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높으며, ○ 안산의 등산로 입구에는 쓰레기 더미가 높게 쌓여 있어 등산객에게 불편감을 주 며 각종병균과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 음. ○ 해당과에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기 바 람. 	

3) 건의 및 기타사항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의 및 기타사항	비고
감사담당관	1	동사무소 정기감사	구청의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전에 비위,비리를 예방하는 제도가 있어 그 실적 또한 큰 효과를 보고 있으나 동사무소는 일상감사 없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수시감사로 대체함으로 사전예방 차원의 실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동사무소 정기감사시 100% 적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됨.	
	2	일상감사범위의 확대시행	일상감사는 사전감사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지양하고 예산집행의 비능률 요소 및 사업시행전에 주민생활 관련 각종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좋은 감사제도로서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인 구 시행공사 및 물품구매시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다수 관련 및 예산낭비가 상존하는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 행			확 대	
<p>① 구 시행공사 3,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p> <p>② 2000.01.01~05.31 기간중 감사실적을 보면 토목하수과의 보안등 보수공사가 5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산출 착오 적용 - 각종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등 108건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과다사업비 522,276천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음. 			<p>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금액 및 물품구매의 일정금액 이하라도 주민 다수관련 및 공사시행으로 낭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p> <p>② 그 공사부분인 감사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종류는 다음과같이 하였음은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블럭 교체 등 보도포장 공사 - 재해관련 물품 구입 및 시설공사 - 공원내 시설물 설치공사 - 공공복지시설 건립공사 <p>③ 이외에도 낭비가 예상되는 모든 부문을 감사대상으로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p>	

부서명	연번	제목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총무과	1	직원친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서대문구청내의 분위기호름을 보면서 본건을 다루게 된 바 우리구가 친절도 1위, 행정서비스 1위라하여 하는 것으로 자부심과 직원들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볼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 자료에 의하면, 2000.1.1부터 6.16현재까지 총 78회에 87일간 연인원 1,499명에 대한 친절교육으로 총 5,248,75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고되었으나, 자금의 직원들의 분위기는 너무 공무원들에게 강요만 했지 그에 따르는 사기양양책이 결여되어 제대로 교육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인근구에서는 금강산 탐방,선진국 탐방 등 다각적인 사기양양책이 나와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 우리구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사항을 보면 우수직원 포상,친절우수공무원,특별승진,휴양시설운영,직원단합대회 추진계획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많은 연구를하여 실질적으로 해당자들이 선호하고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할수 있는 리베이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는 많은 연구와 지속적인 추진으로 효과적인 업무행정에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임.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 의 및 가 타 사 항	비 고
총무과	2	휴양콘도 이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콘도 시설을 모든 구직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각 직급별로 공평하게 이용되도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써 근무의욕을 제고시키며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 바라고, ○ 내실있는 관리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 특히, 콘도 이용자들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들 관리에 투명성을 기하기 바람 	
	3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잔류인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능전환사업이 '99.2.12. 시범동 2개동을 선정하여 '99. 7.30.부터 「주민복지관」을 개관하여 시범실시 운영하여 각종 생활강좌를 운영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는 바, 현재 시범동에서는 동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인력보다 2~3명의 한시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각 종 생활민원등 현장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2000.3.6. 시달된 행정자치부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0월중 관내 전동에 대하여 확대시행될 예정인 바,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존치인력은 인구 1만미만은 6~9명, 2만 미만7~10명, 3만 미만 8~11명, 4만미만 9~12명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인력을 준수할 경우 동장, 담당주사, 운전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무수행 인력이 부족하여 민원창구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있겠으며, 각종 생활현장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처능력 미흡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능전환 후에도 동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동 잔류 인력을 기능전환사업이 완전 정착시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인력보다 3~4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동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부서명	연번	제목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기획예산과 (전산팀)	1	정보화교육확대실시	<p>○ 교육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전산교육 : 주부인터넷 교육 등 4개 과정 212명 실시 - 직원전산교육 : 한글97 등 5개 과정 12회 225명 실시 <p>○ 건의사항 : 시대가 정보화, 산업화됨에 따라 이에 잘 융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사회 부적응 상태로 남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컴퓨터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보문명의 혜택을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2	전산실운영확장 및 개선사항	<p>○ 인원현황 : 행정직 6급 1명, 계약직 2명, 통신직 2명, 전산직 4명, 기능직 1명</p> <p>○ 건의사항 :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설,장비,인원이 현실에 맞게 편성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행정직 팀장 1명으로 편성되어 있기에 전산직 담당주사로 편성함이 업무의 효율을 기한다고 생각되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업무에 대비하여 전산직을 3명 확충하고 전산실내 기계실 확장을 위해 전산실 근무인원을 기획예산과 자료실 자리로 옮기고, 자료실은 구청내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안전·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장비수리실을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인구조사 등 통계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제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p>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재무과	1	입찰공고료 예산절감방안 강구	<p>① 1999. 1. 1~1999.12.31까지의 입찰공고현황을 보면 신문공고와 관보게재를 포함하여 총 11건으로서 입찰공고료 지출액은 총 3,546,000원이 지출된바,</p> <p>② 현행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입찰공고 방식인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과 관보게재방법을 병용하여 공고료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세무1과	1	납세고지서 송달철저	<p>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세금고지서 송달사항을 점검한 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직접송달 부분은 잘 처리되고 있으나, 우편 송달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납세자가 납기를 넘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기, 추후로는 고지서 송달 및 관리를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임.</p>	
보건소 (보건행정과)	1	전격 살충기	<p>전격 살충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어 10여년전부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전체로 확대 보급하여 각종 해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였으면 함.</p>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2	보건소 운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의 운영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면 우선 금년 4월10일 현저동에서 이전한 후 이용인원이 5월 한달동안 18,504명으로 작년 동기간 11,895명과 대비 55.5%가 증가한 바, 특히 노인,영유아,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차 진료실과 모자보건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는데, ○ 그 원인을 분석하면 보건소 이전으로 교통이 크게 개선되어 노약자들의 이용불편이 해소됨과 새롭게 면적확장하며 시설장비보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한데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이전사업이 『주민과 보다 가까이에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보건의료 시혜』를 제공코자 함임을 명심하여, 내방주민이 증가했다고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의약분업 등 관련업무가 번방하다 할지라도 구민이 내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친절히 봉사하기 바람. 	
동사무소 (북아현제1동)	1	동사무소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현1동사무소는 신축한지 30년이 넘었고 증축한지도 20여년이 지나 매우 협소하며 건물상태가 불량하여 동사무소 기능 전환시 주민들에게 각종 교양강좌 실시 등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며, ○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기를 건의함. 	
	2	동사무소 사무용품 등 각종비품 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앞두고 동사무소 기능은 축소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사용중인 책상,의자 등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이 노후되어 주민들을 위한 서예교실,탁구교실 등 각종교양강좌 및 동청사 개방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 실시전에 행정장비의 보조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을 건의함.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동사무소 (연희제1동)	1	직능단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에 현존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방위협의회,바르게살기,통장협의회 등)를 효율적으로 관리 동행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정비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방위협의회같은 직능단체는 주민으로부터 민방위훈련과 관련한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람. 	
	2	동청사 및 후생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희1동은 지역여건이 경의선 철도 및 성산로의 연계지역으로 교통이 원활한 주거 전용지역에 속하며 동청사가 과거에는 타지방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하였으나, 현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사로는 부적합한 상태로 사료되며, ○지역적으로 궁동산을 경계로 동·서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활 수준이 타지역보다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므로 주민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바, 구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업무는 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은 미약함으로 민간부문의 독지가를 연계시켜 한가족결연사업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동사무소 (연희제3동) 동공통사항	1	동청사 및 후생복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희3동은 구청 청사지대에 위치하여 청사가 매우 협소함으로 조속한 이전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며, ○주민복지사업에서 민간부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주민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독지가의 발굴로 여러사람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우수한 직원들은 거의 구청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향후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폭주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기양양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p>동사무소 공통사항</p>	<p>1</p>	<p>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앞두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토목,하수,건축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위험시설물관리, 각종재해시 비상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등 많은 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대형 재해로의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 주민자치센터 시범동들도 적은 공무원 인력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관리 및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처리를 하느라 과로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행정관리 업무가 미흡하여 관련서류를 관리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의 보조에 의지하는 실정이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건의함. 	
	<p>2</p>	<p>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현재 시범동인 북아현 2동을 감사한바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교통 지도단속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쓰레기 적치,무단투기,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민원이 발생되어도 구청으로 지원요청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이 안될뿐 아니라, ○ 특히, 하절기를 맞아 주변환경이 더럽혀져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동 뒷골목 등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도 동사무소에 단속권이 없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며, ○ 향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현재 단지 2개 시범동만 시행중인데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만일 전동으로 확대 실시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교통지도업무만이라도 구청이관업무에서 제외시켜 원활한 동행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건의함. 	

부 서 명	연 번	제 목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고
동사무소 공통사항 토목하수과	3	하절기 수방대책	○ 동 단위에서 보고하고 상급기관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서 현황만 유지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말고 상급기관의 기술적인 판단하에 특단의 조치로 예상치 않는 사건, 사고가 없도록 건의함.	
기타부서 (토목하수과)	1	보안등 관리사항	○ 보안등은 야간에는 지역주민의 눈이며 범죄예방의 효과가 지대함으로 적극적인 개·보수가 필요한데, ○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관할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고유번호판이 100%부착되어 있었으나 1999년부터 구청으로 관리가 이관된 후로는 점멸기 교체작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실·또는 손실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 도로조명팀의 직원 4명으로는 현실적인 순찰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람.	
기타부서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2	안산관리사항	① 안산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수터의 숫자를 줄이고 개울을 만들어 주며, 고양이를 퇴치하고 안산 주변의 운동장 숫자도 줄여 자연녹지상태로 환원시킬 것을 건의함. ② 안산 군진지는 정상적인 허가를 취득후 사용토록하며 그 주변 폐타이어는 주변약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즉시 수거토록 조치하고 ③ 등산로 입구에 산적한 쓰레기 문제는 공공근로 인원을 상주시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며 현재 위탁운영중인 청소대행업체에도 경각심을 주어 적치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기 바람.	

4) 우수 및 장려사항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감사담당관	1	동사무소 정기감사실적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동사무소에 실시한 정기감사 현황결과를 확인한 결과 많은 비위,비리사실을 적출하였기 이와같은 업무수행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부서로 추천함.																																		
	2	민방위비상 급수시설관리	<p>1.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10 794 1136 1246"> <thead> <tr> <th>연 번</th> <th>주 소</th> <th>설 치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천연동13-1</td> <td>금화초등학교</td> </tr> <tr> <td>2</td> <td>연희동182-42</td> <td>홍연아파트14동</td> </tr> <tr> <td>3</td> <td>연희동182-2</td> <td>홍연아파트11동</td> </tr> <tr> <td>4</td> <td>연희동산2-13</td> <td>안 산</td> </tr> <tr> <td>5</td> <td>연희동6-50</td> <td>유아원</td> </tr> <tr> <td>6</td> <td>홍제동247-3</td> <td>인왕초등학교</td> </tr> <tr> <td>7</td> <td>홍제동373</td> <td>태영으뜸아파트</td> </tr> <tr> <td>8</td> <td>홍은동산1-48</td> <td>홍재초등학교</td> </tr> <tr> <td>9</td> <td>북가좌318-1</td> <td>제1어린이놀이터</td> </tr> <tr> <td>10</td> <td>북가좌325-20</td> <td>제2어린이놀이터</td> </tr> </tbody> </table> <p>2. 우수사례</p> <p>가. 비상급수시설의 주변 및 내부청소와 비품정돈상태가 양호함</p> <p>나. 비상급수시설 출입문열쇠를 동일키로 교체할수 있도록 열쇠를 제작하여 전 시설물 집중관리</p> <p>다.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정비로 유사시 활용가능토록 평소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p>	연 번	주 소	설 치 장 소	1	천연동13-1	금화초등학교	2	연희동182-42	홍연아파트14동	3	연희동182-2	홍연아파트11동	4	연희동산2-13	안 산	5	연희동6-50	유아원	6	홍제동247-3	인왕초등학교	7	홍제동373	태영으뜸아파트	8	홍은동산1-48	홍재초등학교	9	북가좌318-1	제1어린이놀이터	10	북가좌325-20	제2어린이놀이터	
연 번	주 소	설 치 장 소																																			
1	천연동13-1	금화초등학교																																			
2	연희동182-42	홍연아파트14동																																			
3	연희동182-2	홍연아파트11동																																			
4	연희동산2-13	안 산																																			
5	연희동6-50	유아원																																			
6	홍제동247-3	인왕초등학교																																			
7	홍제동373	태영으뜸아파트																																			
8	홍은동산1-48	홍재초등학교																																			
9	북가좌318-1	제1어린이놀이터																																			
10	북가좌325-20	제2어린이놀이터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감사담당관	3	구민생활불편 대책 적극추진	<p>○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민을 찾아가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적극해결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새천년 대민행정의 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생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p> <p>○24시간 행정기능 유지를 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감사담당관 직원을 2명씩 관내 주요지역 및 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p> <p>○아울러 전직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 출·퇴근 및 출장시 구정에 대한 불편,건의사항을 발견 또는 파악하여 견문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민생활 관련 각종 불편 해소대책 추진을 통하여 2000.01.01부터 2000.05.31까지 청소,교통, 가로정비,시설물관리 등 생활민원 1,497건을 처리한 바 있어,</p> <p>○이는 타의 모범이 됨은 물론 구민보호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세에서 온 결과라 아니할수 없어 본 감사실시기간에 수범사례가 되었음.</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감사담당관	4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방안	<p>○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구정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시환경의 정비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 민원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견 보고하여 이를 신속히 시정조치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써 감사담당관실에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p> <p>○ 2000. 1. 1부터 5. 31 까지 930건을 처리한 바 '99년도 같은기간실적 421건과 비교할 때 2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견문보고제가 급속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사료됨.</p> <p>○ 2000. 5. 31 현재 견문보고 우수부서 순위 구 청 동사무소</p> <table border="0" data-bbox="679 908 1111 1014"> <tr> <td>1</td> <td>세무2과(169건)</td> <td>연회3동 (65건)</td> </tr> <tr> <td>2</td> <td>청소행정과(66건)</td> <td>남가좌1동 (46건)</td> </tr> <tr> <td>3</td> <td>감사담당관(32건)</td> <td>천 연 동 (34건)</td> </tr> </table> <p>○ 2000. 5. 31 현재 개인별 우수제출자 순위 구 청 동사무소</p> <table border="0" data-bbox="679 1110 1111 1217"> <tr> <td>1</td> <td>세무2과 서영현</td> <td>연회3동 김동일</td> </tr> <tr> <td>2</td> <td>청소행정과 남규화</td> <td>남가좌1동 고금복</td> </tr> <tr> <td>3</td> <td>세무2과 마종현</td> <td>홍제1동 김태성</td> </tr> </table> <p>○ 견문보고 우수제출자 표창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 격 : 구청장 - '99년도 3명, 2000. 1/4분기 3명 <p>○ 효과와 활성화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 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 적극적인 참여직원과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1	세무2과(169건)	연회3동 (65건)	2	청소행정과(66건)	남가좌1동 (46건)	3	감사담당관(32건)	천 연 동 (34건)	1	세무2과 서영현	연회3동 김동일	2	청소행정과 남규화	남가좌1동 고금복	3	세무2과 마종현	홍제1동 김태성	
1	세무2과(169건)	연회3동 (65건)																				
2	청소행정과(66건)	남가좌1동 (46건)																				
3	감사담당관(32건)	천 연 동 (34건)																				
1	세무2과 서영현	연회3동 김동일																				
2	청소행정과 남규화	남가좌1동 고금복																				
3	세무2과 마종현	홍제1동 김태성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총무과	1	보안업무	<p>총무과에서는 보안 업무 관리체계 강화 및 보안 제도 개선사항 발굴등 보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울시 2000년 정기 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됨</p> <p>구체적 우수사항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에 사용되는 모든 PC에 보안문구 프로그램 「보안을 생활화합시다」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설치하여 우리구 전직원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업무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 수록한 “서대문구 보안업무 실무 지침(개정판)” 책자를 발간하여 보안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리하였으며, ○ 보안업무 주요계획 및 사업시행시 사전에 보안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안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문화체육과	1	생활체육교실 운영방법 개선으로 구민편의증진 및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1998년도까지는 종목별로 사설 체육시설에 장소 임차료와 강사료를 지원하여 운영하므로 예산 형편상 한정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운영 할 수 밖에 없었으나, ○ 사설체육시설의 정규 회원들이 아침과 저녁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1999년부터 이용자가 거의 없는 중식시간대를 중심으로 구생활체육교실을 신설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에서 직접 받도록 함으로서(구에서 임차료 강사료 등 지원없음) 많은 주민들이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 물론 구 예산절감 효과와 IMF경제 환파로 어려움을 겪던 체육시설의 경영난 타개에도 큰 도움을 주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종목 : 3종목 - 운영장소 : 우정스포츠 센터 외5개소 - 참여인원 : 3,168명 - 예산절감 : 35,390천원 <p>* 수범자: 문화체육과 별정7급 이은미</p> <p>※ 첨부 : 생활체육교실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세무1과	1	고액채납자 관리사례	<p>구세채납 관리에 대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인 고질적인 고액채납자 관리상태를 점검한바, 각 채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채납징수 가능정도에 따라 고질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관리하고, 징수가 가능한 채납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구분 관리하였음은 물론 채납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방문독촉하고 전화독촉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한 결과 총 재산세는 9건에 81,815천원, 종합토지세는 39건에 595,233천원으로 계 48건에 677,048천원중 상반기에만 재산세 1건에 5,050천원, 종합토지세는 11건에 177,808천원으로 계 12건에 182,863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p> <p>비록 납세자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징수하지는 못하였어도 고액채납자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담당자 교체시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채납내역을 바로 파악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조속히 채납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시정조치로 행정감사의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 사례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판단되며, 차후 계속하여 더욱 확대관리할 것을 당부함.</p>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고
세무1과	2	납세자 재산권 보호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관리시 구에서는 지방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고도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체납처분비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이 없음에도 부동산 압류등기가 남아있어 매매, 저당권설정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음. ○ 이러한 점에 착안, 구청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약 2개월간에 걸쳐 조사 분석하여 600여건의 체납자 압류 부동산을 발체하여 374건을 압류 해제하고 나머지는 체납처분지비고지서를 발행하여 안내문과 함께 발송,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였음. ○ 이러한 사례는 세무행정상 지방세 징수에만 급급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변화하는 긍정적 사례이며 또한 민원발생 소지를 스스로 발견, 치유하므로서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앞선 행정을 구현하는 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구 전체에 적극적인 행정이 확산되기를 바람. 	
동사무소 (충정로동)	1	청사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정로동은 각종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의 서류정리가 잘되어 있고, 민방위 장비와창고 및 식당도 청결하며 정리정돈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타동의 모범이 됨으로 우수사례로 추천함. 	

부 서 명	연 번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p>동사무소 (북아현제3동)</p>	<p>2</p>	<p>동 특수사업추진</p>	<p>○ 북아현3동 홍성목 동장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담당 토목서기 문광영은 동 특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에 적극 노력하였음을 볼수 있는데, ○ 당해 동 특수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의 교량 하부공간의 정비,합동 노인정앞 노면보수, 노후계단보수,뒷골목 보수,북아현 파출소 앞 휴식공간설치 등 신속히 공사를 실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적정한 공공근로 사업의 발굴,시행으로 공공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로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 특히, 홍성목 동장은 합동 노인정앞 노면 보수 공사후 사비를 털어 내부 페인트 도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였기에 수범사례로 추천함.</p>	
<p>동사무소 (연희제2동)</p>	<p>3</p>	<p>동업무 추진사항</p>	<p>○ 연희2동은 녹지대를 중심으로 주거형태가 양분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동청사의 신축예정으로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현청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잘 정돈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체적으로 거의 수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면서 장려사례로 추천함.</p>	
<p>동사무소 (연희제3동)</p>	<p>4</p>	<p>우리동네 깨끗이하는 날 운영</p>	<p>○ 각동에서 매월 1일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히 연희3동은 매월15일을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날』로 운영하여 직능단체,통장,직원,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계도하여 대청소를 실시 쓰레기,침지류 등을 제거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적극 노력하였기 수범사례로 추천함.</p>	

3. 복지건설위원회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0. 6. 26 ~ 7. 2 (7 일간)
- 장 소 : 구청 지하상황실

나. 감사대상 부서 및 사무범위

- 1) 대상부서 : 3 국 12과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 도시관리국 :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 건설교통국 :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2) 사무범위 : 2000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다. 감사반 편성 위원장 : 이진수 위원 (간사 최태중 위원)

1) 국별 감사반

구분	감사위원	대상부서		사무보조	비고
		국별	실·과별		
1 반	반장 : 전성장 의원 위원 : 김종철 의원 김화형 의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의안담당주사 김명섭 직원 김길록 박영갑 이영순 성기주	
2 반	반장 : 김영일 의원 위원 : 이문복 의원 최태중 의원	도시관리국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3 반	반장 : 정일출 의원 위원 : 허준구 의원 최광진 의원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 감사실시일정

차수	감사 일자	감 사 실 시 내 역	감사장소
1일	2000. 6.26. (월)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감사실시 반별.개별감사실시	구청 회의실
2일	2000. 6.27. (화)		
3일	2000. 6.28. (수)		
4일	2000. 6.29. (목)		
5일	2000. 6.30. (금)		
6일	2000. 7. 1. (토)	감사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7일	2000. 7. 2. (일)	후 회	

라. 감사결과

1) 총 괄

() : 건수

구 분	계	시정 및 요구사항	우수·장려사항	건의.기타사항
계	70	33	6	31
생활복지국	20	사회복지과 (1) 지역경제과 (1) 청소행정과 (3)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6) 환경위생과 (4) 지역경제과 (1) 청소행정과 (2)
도시관리국	18	주 택 과 (1) 주택개량과 (2) 도시정비과 (4) 건 축 과 (1)	주 택 과 (1)	주 택 과 (3) 주택개량과 (1) 도시정비과 (4) 건 축 과 (1)
건설교통국	27	토목하수과 (7) 공원녹지과 (5)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1)	토목하수과 (1) 공원녹지과 (1)	토목하수과 (5) 공원녹지과 (1) 교통행정과 (2)
공 통	3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1)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 축 과 (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1)	
행정관리국	2	문화체육과 (1)		총 무 과 (1)

2) 시정 요구 사항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사회복지과	<input type="checkbox"/> 구립유아원 원아 용 식단구성 실태	○ 유아원은 “서대문구 보육시설 연합회”의 지정 영양사가 매월 작성, 배부하는 식단표에 의해 식단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유아원 임의대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어 유아들의 온전하고 고른 영양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유아원의 이러한 실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청소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태	○ '99.1~5월까지 서대문구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55건에 과태료부과액이 1,410천원이고, 2000.1~5월까지 실적은 238건에 19,550천원으로 건수는 53%가 증가하고 부과금액은 약 39%가 증가한 상황이나 일부 동은 단속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단속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로는 관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이 10건미만의 부진한 동에 대하여는 부진정도에 상응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청소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재활용품 대면수거 실태	○ '99년도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재활 용품의 수거율 제고와 주민참여 및 편의를 위하여 차량에 의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수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시간과 차량이동으로 수거하고 있어 재활용품의 수거률과 주민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수거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정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거 차량의 기사 및 미화원이 보다 친절한 자세로 주민을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건축폐기물 처리실태	○ 건축폐기물중 5톤 이상은 대체로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1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지연처리하고 있어 가로변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건축폐기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요 구 사 항
주 택 과	<input type="checkbox"/>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 체납건 관리실태	<p>○ '92년도~'99년도 체납현황은 총311건, 260,193천원</p> <p>《체납자 관리 실태 例》</p> <p>◇ 연희동 51-6(건축주:강정수)체납실태</p> <p>① '95년~2000.2월 : 9회체납 5,832천원</p> <p>② '96년도 : 2회 체납 1,296천원</p> <p>〈물권 변동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5. 8 : 소유권 이전 (정인숙) - '95년 이후 가압류 신청 현황 : 8건 - '96. 1. 8 : 강제 경매 신청(손점환) - '98. 4. 1 : 경매로 소유권이전 <p>〈구청 조치내역〉</p> <p>① 가압류 동기 촉탁 (주택58554-2319 : '96.11.21)</p> <p>② 압류(세일13410-1128 : '97. 5.21)</p> <p>③ 압류(제33634호 : '97. 9.20)</p> <p>○ 구청조치로 종토세 115,120원만 징수하였을 뿐 나머지는 압류권이 외부인 보다 후순위(14,15,16번)가 되어 징수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동기압류로 채권 확보가 되었다는 인식 아래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바, 일제정리를 단행하여 징수 가능분은 철저히 징수조치하고 불가능분은 결손처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주택개발과	<input type="checkbox"/> 연회2 자력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인가 등 추진사항 전반	<p>○ 1973.12.31 재개발구역지정 이후 연회3자력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2. 8.24 재개발 구역내의 환지에정선과 현황선 (담장·건축물·옹벽 등)의 파악을 위해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구역내 414필지중 115 필지의 0.5평~1.5평 정도의 세장형필지가 발행되었으나 이를 1개의 필지로 합병치 않고 각 필지에 대하여 각각의 지번을 부여한 채 '99. 8. 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대문고시 제62호) 및 2000. 5. 6부로 공사완료를 공고하였음.</p> <p>이와 같이 환지 확정처분 추진시 결과적으로 구역내토지 소유자는 실제로 1개의 환지토지에 대하여 2~3개 필지로 환지를 받게됨으로써 이에 따른 등기·측량 비용 등의 증가로 민원이 예상되고 자력재개발사업의 토지구획정리효과의 감소 및 다수의 불합리한 토지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지적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3개의 필지를 1개 필지로 환지 계획을 검토, 변경 후 환지 확정처분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소규모 세장형필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현저 1·영천1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p>○ 구 독립문파출소 ~ 한성과학고등학교간의 도로가 현저1,영천1 주거환경개선지구공사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파손되어 일반차량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동도로의 정비계획을 '9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인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치 않았는 바, 대책을 강구하여 도로를 조속히 정비·보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법면 발생으로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정비와 지구외의 등산로 주변에 주민 휴식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추진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도시정비과	<input type="checkbox"/> 인도변 상가의 상품 무단적치 단속실태	<p>○ 제76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과 관계국장 및 과장에게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과 신영극장에서 녹색극장 구간 그리고 남가좌 시장변과 유진상가의 인도변 점포들이 인도상에 상품등을 적치해 놓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치하지 못함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또는 직무포기이거나 아니면 말 못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가로판매점 운영실태	<p>○ 노점상의 생계대책의수단으로 도입된 가로판매점이 거액의 권리금까지 붙여 불법전매되어 운영권자가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한건의 적발. 조치 실적도 없는 바, 이는 감독관청의 감독소홀로 인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운영자가 바뀐 곳은 폐쇄.조치 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통일로변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실태	<p>○ 통일로변은 상가와 노점상등의 무단상품적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차량노점상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이는 담당부서의 단속소홀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보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상세계획 추진실태	<p>○ 1996. 3. 29부로 아현, 가좌, 천연, 충정, 홍제 구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1997. 7.15부로 용역계약(용역비 1,184,000천원)에 의거 상세계획안을 수립, 2차레나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요청을 하였으나 아현구역외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못하여 건축제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받는 피해와 심적인 고통이 지금까지 지속되 있고, 11억 8천 4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됨.</p> <p>따라서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 등 관련 업무추진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건 축 과	<input type="checkbox"/> 사설위험시설물 관리 및 정비실태	<p>○ 2000년 1월 현재 총 118건이었던 사설위험 시설물이 1월이후에 130건으로 신발생 증가하여 그 중 18건은 타부서에 관리, 이첩하였고, 13건은 정비완료하여 2000년 6월 현재 99건이 여전히 미정비상태로 남아 있어 정비률이 약24%에 불과하여 정비실태가 부진한 실정인 바, 노후 건축물이나 부수석축, 옹벽 등과 같은 사설 위험시설물은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시설물로 인한 재난방지과 구민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토목하수과	<input type="checkbox"/> 도로개설 사업 추진실태	<p>○ 북아현3동 이대후문에서 봉원사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계획건은 이미 보상까지 완료되었으나 관계부서의 준비소홀로 인하여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히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하천변 잔디 및 야생식물 관리실태	<p>○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하천변의 잔디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 바, 잔디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잔디밭 출입금지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정히 잔디생성이 불가능한 지역은 벤치 및 철봉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며, 모기발생을 우려하여 하천변의 식물을 제거중이나 하천의 보존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보안등 개량 및 도로포장 공사실태	<p>○ '99년도 말에 서울시로부터 "옥외광고물정비 우수구"로 선정되어 수령한 인센티브교부금중 일부예산을 토목과에서 배정 받아 관내 보안등개량과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보안등개량 총 70건중 "C"동에 40건을 비롯하여 3개 동에만 편중 시공하고 나머지 18개 동은 1건도 개량치 않았으며, 또한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도 1개동 4개소 도로만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특히, 수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입각하여 형평에 맞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토목하수과	<input type="checkbox"/> 홍제천변 체육시설 주민 이용실태	<p>○ 동신병원 뒤 하천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이용자가 거의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실정인 바, 기왕 설치된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과 통행로 개설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보도교 및 하천 관리 실태	<p>○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보도각 백불과 옥천암에 신도들이 출입키 위해서는 옥천교로 우회해야 하고, 또한 홍제천 수위가 상승하는 강우시에는 통행에 불편과 위험성이 수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430,000천원을 투입하여 지난 '96.4.25 ~ '96.10.6간 홍제동 산1~홍은동 9번지 구간에 폭 3m 연장 33m의 아치형스틸박스형식의 다리를 설치하였으나 위쪽 100m 거리에 옥천교가 있고 아래쪽 50m거리에는 배수지 진입교가 있어, 총150m거리에 3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용실태를 보면 옥천교는 일반주민이 이용하고 보도교는 신도들이 구분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바, 동예산으로 노후된 옥천교를 철거하고 보도교와 옥천교의 중간에 교량을 설치하였으면 일반 주민과 신도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예산절감 및 하천관리의 효율성 등 3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하며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연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토목하수과	<input type="checkbox"/> 뒷 골목 도로소파 처리실태	<p>○ 도시환경 및 주민 편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 환경순찰 기동대를 운영하고 또한 동향보고, 견문보고, 구간부 순찰, 진정, 주민신고, 관계공무원 순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최선을 다 함으로써 간선 및 지선도로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상반기 도로소파 보수 총건수는 200건에 불과하며, 상반기 6개월동안 한건의 보고도 없는 동이 11개 동임을 미루어 보아 동순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고 뒷골목의 도로소파보수처리가 지연되어 도로노면 환경이 불량한 바, 앞으로 뒷 골목순찰을 강화하여 간선 보다는 취약자인 뒷골목의 도로정비와 주민편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관계부서에 일제정비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일제정비를 시행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부서업무 추진비 집행실태	<p>○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잘 준수되어 대체로 양호하나 지출서류에 업소대표자의 날인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관계 서류철의 색인 목록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아 회계서류의 작성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영수증 징취, 첨부에 철저를 기하고 서류철의 색인목록 작성,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공원녹지과	<input type="checkbox"/> 안산내 불법 가설물 설치실태	<p>○ 서대문 전구민이 사랑하는 안산살리기운동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물량,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일부 무분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가설물로 인하여 안산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요 구 사 항
공원녹지과	<input type="checkbox"/> 안산정상 군부대 정화조 사용관리 실태	○ 안산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1596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안산을 타고 아래쪽으로 방류되고 있어 안산내의 약수터는 물론 식물과 미생물 등의 자연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하수관로를 설치토록 조치하여 정상적인 하수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조속히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연대앞 철로변 녹지대 식재관리 실태	○ 2000.4.6~5.20 동안 연대 앞 철로변 녹지대 4,500㎡에 시비 16,060천원을 투입하여 교목 839주를 비롯하여 총 15,650 주의 나무류를 식재 하였으나, 수종 선정의 미흡과 시각적인 조경을 고려치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막대한 예산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일게 하였는 바, 앞으로는 조림 및 조경사업에 따른 수종선정과 식재방법 및 간격유지에 유의하여 나무가 아름답고 잘 발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안산공원 나무 관리실태	○ '97년~2000. 4월까지 4년여 동안 약 78,800천원의 예산과 연 5,24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총5,240주의 각종 나무를 안산에 식수하였는데, '98년도에 식수한 감나무 30주는 기 고사하였고 기타 나무들도 발육상태가 불량하여 안산의 경관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태로 이는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또한 나무와 기후, 토질 상관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치 못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되는바, 향후로는 제반사항을 보다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수종 및 수형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안산 자연공원에는 기념식수에 의한 수종갱신보다는 자연그대로를 잘 가꾸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설계도에 의한 공사시공 실태	○ 각종 공사의 설계도에 첨부되는 시방서는공사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부공사 내역서로서 각 공사의 특성에 맞는 시방서를 첨부하여 원활한 공사와 공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중인 각종 공사의 시방서를 확인한 결과 각 공사현장의 특성에 미흡한 시방서를 첨부하여 시공하고 있어 전문가외에는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곧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를 시정하여 각종 공사의 특성에 맞는 시방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할 것임.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요구 사 항
교통행정과	<input type="checkbox"/> 두산아파트 정문앞 마을버스 회차실태	<p>○ 서북운수 3-1마을버스 회차 지점인 두산apt 정문은 마을버스 회차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의 교통소통의 방해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상기 마을버스 회차지점 위치를 이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일반택시 운송업체 차고지 관리실태	<p>○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2조1항에 보유차고 면적기준이 일반택시는 행단면적(최저) 13㎡-15㎡이나, 관내 7개 전 업체에 대하여는 1대당 3㎡씩으로 감산책정 하였는 바, 면허기준 제12조 1항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의거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며,</p> <p>서대문구 북가좌동 334-4,5 동일 번지내 토지를 '98.12.25 일부로 자동차 차고지로 인가하고 '99.11.13 건축허가 99-104호로 근린시설(짬질방)을 설치케 하여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즉시 연구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공영 및 노상 주차장 설치실태	<p>○ '96년부터 '99년도까지 5년 동안에 증가한 자동차대수는 13,925대로서 년평균 2,785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공영 주차시설은 451면, 노상주차 구획은 2,100면 증가로 총2,551면이 증가하여 년평균 증가면이 510면에 불과하여 주차시설이 11,374면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주차계획과 불법주차단속이 한계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가 예상되는데도 대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input type="checkbox"/> 마을버스 차고지 관리 및 주차실태	<p>○ 부일교통과 연일교통의 마을버스 차고지는 마포구 중동 9-2번지외 1에 인가되었으나,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서대문구 관내에 야간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인가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p>

부 서 별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교통지도과	<input type="checkbox"/> 불법주차 단속실태	<p>○ 북아현2 동사무소앞 광장을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동사무소가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과 동시에 주정차단속권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평일 20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는 동사무소앞 광장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여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해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주정차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통행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input type="checkbox"/> 업무 추진비 집행 및 관련서류 작성관리 실태	<p>○ 업무추진비 전액을 직원회식비 또는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비로 집행하는 등 일정기준이 없이 각과가 다양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모과에서는 지출품의서에는 1인당 5,000원씩으로 지출을 계획하고서 「지출결의서」에는 1인당 약 19,000원을 지출하였고, 모부서는 시책추진비가 당초 6,1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겨우 100천원만 지출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보아 각과 공히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회계규정상의 원칙을 준수치 않고 방만하게 편성, 집행하는 등 계획성과 짜임새가 결여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년2회 이상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p>
건 축 과 교통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수감자료 작성 및 제출실태	<p>○ 주 택 과 「'93년도 발생 장기무허가 건물현황」 자료상의 북가좌1동 144-90 (건축주 : 이대근)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및 납부기록사항에서 납부사실과 추인신고 사실이 없음에도, 「1회부과/1회납. 추인신고」 로 오기되어 있음.</p> <p>○ 교통행정과 2000.3.15부로 현대교통의 대표자가 「김창규」(사망)에서 「황찬세」로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자료의 73, 91, 98쪽의 자동차정비업소 현황상의 대표자는 여전히 「김창규」로 기재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각종 현황 관리와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문화체육과	<input type="checkbox"/> 지역신문 예산지원 실태	<p>○ 지역언론육성을 위하여 지역신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오던 중, 2000. 6월 1일부로 「서대문사람들」 지역신문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중지하고 구청산하 기관의 구독을 중지해 한 것은 언론발달을 기도하는 것과 같으며, 언론이 사실을 성실히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바, 지역신문에 대한 선별적인 예산지원과 구독중지를 통한 언론길들이기 행위를 속히 중지하고 언론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신문에 대하여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구청산하 전기관이 예전처럼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p>

2) 건의 및 기타사항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사회복지과	<p><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보호 업무담당팀 신설 건의</p> <p>○ 청소년보호법이 개정('99. 7. 1)되면서 청소년보호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업무증가량에 따른 인원이 보강이 없어 부녀청소년팀의 8명중 구립 청소년 공부방 지원인원 2명을 제외한 6명에서 5명이 여성복지시설 및 아동수용시설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운영과 여성관련 행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날로 그 중요도가 점증되어가는 청소년보호업무추진을 비롯한 기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부녀청소년팀(8명)」 1개팀제를 “부녀복지팀(5명)”과 “청소년복지팀(6)”으로 분리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p>
	<p><input type="checkbox"/> 노인회 서대문구지부 보조금 및 운영비 증액지원</p> <p>○ 서대문구 72개소의 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도감독 및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대한노인회서대문지부의 회원수는 4,000여명으로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타단체보다 회원수가 많게는 10배가 넘는데도 8,000천원 이라는 소액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지회 직원 3명 연간 급료: 25,530천원)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도 전무하여 사실상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난 1999년도에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관내 72개소 경로당으로부터 15,080천원을 충당받았던 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별도로 구예산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에 증액편성해 줄 것을 건의함.</p>
	<p><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기금 증액편성 건의</p> <p>○ 구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하고 노인들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2001년 까지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적립한다는 목표로 적립해 오고 있으나,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노인복지 기금 편성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기금목표액을 20억원으로 증액편성할 것을 건의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사회복지과	<p><input type="checkbox"/> 지방 보육위원회 운영 개선 건의</p> <p>○ 보육위원회 위원은 주로 직능단체장이나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 따라 구청의 뜻대로 순응하는 경향도 있으며,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으나 위원회운영시 객관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99년, 2000년도 위탁업체 선정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음. 즉 윗분에 따라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은 보육위원회 존재가치가 불필요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바, 개선책으로 위원중 직능단체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의장 그리고 보육시설대표자는 영유아 보육전문가나 교육위원, 구의원 등으로 전원 교체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람. 또한 재위탁선정시 객관성을 갖고 평가한 평가도와 시설장에 대한 위탁업체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3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업체의 재선정을 2년마다 평가해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요망</p> <p>○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15개소 구립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을 동원하여 타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유치하는 것은 교육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료되는 바, 구립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린이집에 많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여 물품을 구매케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부추키는 제도이므로 앞으로는 구청 관계부서에서 소요물품을 직접 조사, 구매하여 어린이집에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과 정원 증원조정 및 수당 지급 건의</p> <p>○ 사회복지업무는 구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지과는 37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 우수인력을 배치 해야 하는 바, 현재 구청 사회복지과의 직원 현황은 4개팀 32명인데 그중 파견자 1명만이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흡수되는 일부인력을 사회복지과 팀별로 1명씩 증원하여 현재 21명을 25명으로의 정원조정으로 복지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기획, 감사, 예산 세무등 기타 주요업무의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등에 준하여 복지분야 전담 공무원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명실공히 복지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망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 사항
환경위생과	<p><input type="checkbox"/> 위생관리 용역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문제점 개선</p> <p>○ 1999. 8. 9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위생 관리 용역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의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용역업체들이 실질적인 작업은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부하는 등의 부실영업 행위가 성행할 소지가 있는 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관계법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요하는 건의를 하고 업체의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폐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p> <p>○ 종전에는 폐수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BOD, SS 각120mg/ℓ)이상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만 부과하였으나, '97. 1. 1부터 제도가 바뀌어 BOD, SS 농도가 각 20mg/ℓ 이상, 120mg/ℓ 이하의 배출량에 대하여 폐수기본 배출부과금을 추가부과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와 같이 폐수가 하수처리장(난지)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에서는 그 실제 하수량이 설계기준의 85%, BOD 농도는 63.5%, SS농도는 58.1%이고 방류수도 기준치(120mg/ℓ)와 비교하면 BOD농도는 62.5%, SS농도는 35.5%에 불과한 실태이며 서대문구의 하수(폐수배출업소의 폐수, 가정집과 건물의 허드렛물, 정화조 오수 등) 전량이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되어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도 가정집등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폐수배출업소만 이중으로 폐수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세금부과이며, 현실적으로 난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설계치 보다 적고 오염물질 농도가 훨씬 낮은 관계로 하수정화처리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오염물질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화조를 청소한 분뇨의 일부분을 하수처리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폐수 기본배출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사료됨에 따라 환경부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가스) 단속 개선 요망</p> <p>○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물질은 서울시 총 대기오염물질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많은 공기 보전을 위해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고 6개월 미만의 차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리콜제 및 무료점검을 받고 있고 또한 새차는 대부분 측정에 적발되는 경우가 없음에도 수시점검에 응하여야 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제도를 개선하여 출고 6개월 미만의 차에 대한 수시점검(단속)은 면제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운전자의 시간낭비와 연료 손실을 예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람.</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환경위생과	<p>□ 공중위생업소 퇴폐영업 단속 개선 건의</p> <p>○ 현행 풍속관련 법령에는 구청의 위생감시원이 숙박, 이용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하여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경찰공무원만 동법률규정(제3조)에 의거 영업소를 출입, 지도·단속을 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효율적인 단속으로 퇴폐영업의 근절 및 구민정서 함양과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상부기관에 단속 및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바랍.</p>
지역경제과	<p>□ 공동작업장의 운영상 문제 개선위한 대책 강구 요망</p> <p>○ IMF를 맞이하여 실직여성가장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조성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공동작업장(연회동 194·39 : 구연회파출소 - 104㎡)을 개설, 실직여성가장(회원 20명)에게 제공하여 제과, 제빵, 출장요리 등으로 6개월여 동안 운영하였으나, 실직여성가장들의 3D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여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여 당초 취지와 목적 달성이 어렵고 운영집행부와 회원간의 잦은 내분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인 바, 공동작업장의 시설물을 퇴거조치하여 작업장을 구민 공익적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p>
	<p>□ 신지식사업센터 운영상 문제점 개선대책 강구 요망</p> <p>○ 신지식사업센터를 정상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8명만 배정되어 직원당 1주 2회 이상 일·숙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정상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능직 1명이 기계실(6실), 전기실(1실) 등 시설을 맡고 있어 또한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지역경제과 직원(25명)을 구청 당직에서 제외하여 신지식 사업센터 당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안내에 따른 부족 인원은 공공근로자 8명을 지원받아 충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보강하거나 경비·청소 부분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청소행정과	<p><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건의</p> <p>○ 일반주택을 포함한 92,155개소에서 나오는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64톤으로서 이중 29.7톤은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고 나머지 34.3톤은 매립지로 반입처리 되고 있는데, 미처리 34.3톤중 6톤은 서울환경에서 재활용처리 하고 있으나 일반주택 및 서부지역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34.3톤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12억8천만원의 반입료와 신매립지 조성비 17억 5천 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매립지와의 적지 않은 마찰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음식물쓰레기를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동청소행정의 통합운영 건의</p> <p>○ 관내 20개동마다 재활용품 분류작업장이 있고 21개 전동마다 청소차량 1대씩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력 또한 미화원 83명, 차량기사 2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현재 청소작업량에 비해 장비와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2 또는 3개동씩 통합하여 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p>
주 택 과	<p><input type="checkbox"/> 연희A, 홍제지구시민아파트 철거에 따른 건의</p> <p>○ 연희시민아파트와 홍제지구시민아파트의 총 16개동 (611개호)의 철거계획에 따라 2000년도 시예산에 시비 15,274백만원이 확보되어, 2000.5.9 가옥주 및 세입자 70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해당 주민들이 이주지로 희망하는 상암지구아파트의 특별물량확대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그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될 상황으로 철거시행에 심히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바, 본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 부족한 인력(2명)과 부대경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주 택 과	<p><input type="checkbox"/> 제목 : '99년도 1차항측 적출 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유예 요망</p> <p>○ 해당건축물 : 대현동 53-20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p> <p>○ 현재 위 건축물에는 5개의 영세조합이 입주하여 있으며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대기측정대행과 유리제 주방용품 및 식탁용류 그리고 이화학용 유리기구와 판유리의 안전을 검정하고 소다석회유리제 식탁, 부엌용품 유백 유리제 식탁 및 부엌용품, 강화 유리제 식탁 및 부엌용품과 재생 유리병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고 있음.</p> <p>현재 5층 옥상에는 판넬 무허가구조물로 47㎡를 증축하여 화공약품 등 폭발성이 강한 인화물질을 사용·보관하고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음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고시 인근까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성이 있으나 영세 조합으로 단시일내 이전 또는 건축물 증축이 어려운 실정이고 상기 조합은 안전전문 지정기관 및 품질 인증 지정 단체로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을 단시일내 철거시 당조합 및 전국 44개 회원가공업체의 유리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공에 이익을 위하여 당조합으로 부터 이전 또는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일정기간동안 행정 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함.</p> <p><input type="checkbox"/> 저소득 전세임자금 회수 및 손실보존 처리</p> <p>○ '90년도부터 1994년사이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1세대당 200만원~500만원씩 총 2,450 세대에 790,480만원을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상환(재계약시 1회 연장가능)을 조건으로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융자지원하였으나,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상환 의무자들이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하여 상환치 않아 2000년도 6월 현재 28세대 9,126만원이 미상환된 상황으로 융자자 관리 및 융자금 회수에 문제점이 있는 바, 회수가능건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히 회수하고 회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2000년도 추경 예산에 손실보전금으로 반영처리할 것을 건의함.</p>
주택개발과	<p><input type="checkbox"/> 홍제 14 주택재개발지역내 공원주차장 확보 요망</p> <p>○ 홍제 3, 4, 14 재개발지역의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배석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홍제14재개발지역내의 공원(홍제동 44-186)에 주차공간이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도시정비과	<p><input type="checkbox"/> 토지수용과 보상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요망</p> <p>○ 2000년도 사업별 손실보상사업이 총12건중 도로개설사업이 11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1건으로서 현재 연희3동 50의 3 ~ 51의 52 구간의 공영주차장 사업만 2000년 3월말에 협의보상이 완료되었을 뿐, 홍제1동 361-28~355간의 도로개설 공사 등 11건(공고예정 3건, 공고중 3건, 감정평가 의뢰중 2건, 미인가 3건)에 대한 손실보상이 부진함에 따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지연 되고 있는 바, 면담과 현황 설명 그리고 사업추진의 정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상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함.</p>
	<p><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 강구 요망</p> <p>○ 현재 총 5개지역에서 시행중 또는 계획중에 있는 2000년도 도시계획사업을 확인한 결과 홍은동 356-1의 24필지와 홍은동 356-39~24 구간 등은 상반기에 착공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홍은동 334-31~335-15구간과 홍은동 356의 38필지 등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상황인 바, 본 도시계획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p>
	<p><input type="checkbox"/>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조성 사업추진 촉구</p> <p>○ 서울시 시범가로조성 일환으로 1999년 8월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우수성을 평가받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8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으나 대상구간인 현대백화점에서 신촌기차역간의 사업 총 소요액이 1,322백만원으로 포상금 8억원과 2000년도 편성예산 1억원을 포함해도 422백만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바,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다가오는 ASEM 및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 두고 신촌지역이 대학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새로운 면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행정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가로정비 단속반 초소 이전 요망</p> <p>○ 홍제3동 홍제천주교 입구변에 위치한 “가로정비단속초소”에 근무하는 단속원의 임무는 노점상 등을 단속하여 가로변의 기능과 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있다고 불 것이나,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역기능적인 측면을 일소할 수 있도록 근무초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철거하여 줄 것을 건의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 사항
도시정비과	<p><input type="checkbox"/>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요망</p> <p>○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총86건(~'99년도 77건, 2000년도 19건)으로 이중 32건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로 장기미준공 건축물 처리에 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재산권행사와 장기 미준공건축물의 일소를 위하여 미신청건에 대하여 준공신청을 독려하고, 설계변경가능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맞도록 시정토록 안내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p>
토목하수과	<p><input type="checkbox"/>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 확산 건의</p> <p>○ 구에서 하천변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행정의 구현이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치행정의 한 예가 되고 있는 바, 2002년 월드컵 초입으로 많은 내·외국인에게 하천관리와 체육시설의 모범으로 홍보될 수 있는 곳임에도 이러한 체육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못한 사천교 부근을 비롯하여 관내 하천변에 확산설치하여 전구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함.</p> <p><input type="checkbox"/> 하천하류 토사 준설 요망</p> <p>○ 다가올 우기와 장마에 대비하여 수해예방이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나 현재 사천교 등 관내 하천의 하류에는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있어 폭우시 범람에 의한 수해가 우려되는 바, 우기전까지 수시로 하천의 하류지역의 토사를 일정량씩을 준설하여 주민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생활하수, 오수 차집관 관리에 대한 건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연 2교각 부근 차집관 2. 남가좌2동 현대APT 연결 차집관 3. 남가좌1동 사천교 옆 차집관 <p>상기 하수 차집관 부근은 우기시는 물론 생활 하수가 일시에 다량 방류되는 조·석간과 정오에는 각종 오수가 집중되나 관의 직경이 작아 오수가 고이게 됨으로써 심한 악취를 발생함과 동시에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인 바, 장마철을 대비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 건의,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 줄 것을 건의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토목하수과	<p><input type="checkbox"/> 사천교 ~ 홍연교간 홍제천 관리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천 하상의 토사유출이 심하여 수시로 하상정리를 하고 있으나 장마때는 하상 파손이 심함으로 자생력이 강한 갯버들을 식재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연희동 쪽 고수부지는 양지인 관계로 잔디가 잘 자라고 있으나 남가좌동쪽 고수부지는 북부고속화도로의 그늘로 말미암아 잔디가 잘 자라지 않은 바, 음지에서 잘 자라는 크로바 같은 식물을 식재하여 고수부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홍연교 ~ 홍연2교간의 오른쪽 분류하수관로가 막혀있고 콘크리트 덮개가 파손되어 있어 장마철을 대비하여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 총연장 2,020m인 사천교에서 홍연교간의 자전거 전용도로중일부 520m 구간의 폭이 2m밖에 안되어 자전거행렬의 양방통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3m로 도로폭을 확장하여 자전거타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p><input type="checkbox"/> 도로개설사업 추진 비효율성 개선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중 5건과 관련하여 약35억원을 이미 보상하였지만 아직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은 사업발주 건수 위주의 전시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미 평균 2년이 지남에 따른 금리상의 손실 발생 등 예산의 배정 및 집행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조속히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p><input type="checkbox"/> 사망사업 등 재해위험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토목직 배치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는 외곽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낙석, 산사태 등 많은 재해위험성이 많아 공원녹지과의 '99~2000년도 주요사업비 65억원중 암절취, 암사면정비, 슛크리트타설, 락볼트설치등 토목공정이 대부분인 수해복구사업비가 20억원, 3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전문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공원녹지과에는 토목관련 전문직원이 없어 임업직 직원들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토목관련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함이 업무추진과 재해예방에 한층 효율성을 높이어 주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인 바, 토목직 직원을 1~2명 추가배치할 것을 건의함.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p>교통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압류·해제 문제개선 건의</p> <p>○자동차 관련 제세와 각종 과태료의 체납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압류등록·해제함에 있어서 서울시 관할 차량의 경우는 차량주소지 관할관청과 무관하게 제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서 직접 압류등록·해제를 할 수 있으나, 타 시·도 차량의 압류등록·해제는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에서 차량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압류등록·해지를 의뢰하여 처리해야하는 관계로 차량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촉탁, 이송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구조조정에 의한 직원감소로 행정력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차량말소등록 등의 민원 처리시 압류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자동차관련 전산망의 보완 및 수정으로 자동차의 압류등록·해제가 시·도, 관할지 관청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시·도단위의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개선,건의하기 바람.</p>
<p>교통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운수회사 차고지 보유면적 기준 강화</p> <p>○우리구 관내 버스회사의 버스 인가대수 및 차고지현황은 현대교통이 74대, 2556㎡(775평), 서부운수 86대, 2487㎡(754평), 우신교통이 46대, 1673㎡(507평)로서, 서부운수는 인가기준에서 582㎡(176평)가 미달되고 다른 회사도 인가기준을 겨우 확보한 상태이다 보니 배차편의 등을 이유로 도로상에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바, 충분한 차고지를 확보하여, 버스의 주·야간주차의 폐해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차고지 인가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p>
<p>총 무 과</p>	<p><input type="checkbox"/> 명예구청장 제도 폐지 요망</p> <p>○구청장이 친목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명예구청장 제도는 구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이는 개인 친목단체를 서대문구청 단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존경받는 명예구청장도 많이 있지만 병역비리 연루사건을 비롯한 기타 불미스런 일들이 명예구청장중 일부에 의해 발생되고 있기에 명예구청장 제도를 해체하여 줄 것을 요망함.</p>

3) 우수 및 장려사항

부 서 별	감사사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청소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 추진실태	<p>○ 폐기물관리팀의 “남규화” 음식물쓰레기처리 담당주사는 1999년 초에 시보조금으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를 동년 6월에 민간청소대행업체에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채산성이 열악한 청소 대행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소규모음식점:리터당 39원, 공동주택 : 가구당 1,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분류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99. 6월부터 2000. 5월까지 13,650천원의 임대료 수입 실적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3,12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순조롭게 처리케 하였고, '99. 3~5월까지 구청에서 직영하였을시 소요되었을 12명 (운전원 3, 미화원 9)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하였으며,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옴으로써 타직원의 모범이 됨.</p>
	<input type="checkbox"/> 청소행정 장비관리 실태	<p>○ '99.12.20부로 '99년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청소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시상금) 5억원을 교부받아 '99.12.23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17대(2.5톤 진개덤프 14대, 1톤 더블캡 1대, 8톤 가로청소차 2대)를 교체하고자 발주를 완료하여 타구에서는 불용 처리된 시상금을 우리구에서는 조기 추진하여 청소차량교체용 구세출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의 절감과 작업능률향상 등의 파급효과까지 거양하여 타부서의 모범이 된 우수한 행정 사례임.</p>
주 택 과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실태	<p>○ 본 사항은 '99. 구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 으로서 2000년도 감사시 현장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바, 27개 단지중 11개 단지는 관리규약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15개 단지는 개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는 주택과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관리 사무소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부서의 모범을 보인 사례임.</p>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우 수 및 장 려 사 항
토목하수과	<input type="checkbox"/>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p>○남가좌2동 홍제천변 연가교 주변에 설치한 주민체육시설은 인근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주변도 깨끗 하게 정돈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시설을 애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설 및 주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서 타부서에 모범이 되고 있음.</p>
공원녹지과	<input type="checkbox"/> 자연학습장 조성 및 관리실태	<p>○연희동 산2-13 (900평)안산지락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산과 들에서 나는 꽃과 향토작물, 약초 등 총 85종 8,900본을 식재, 전시하여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고향의 정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내 유치원, 초등학교학생들이 견학을 통하여 자연의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것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는 등의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실천행정을 구현한 우수한 사례임.</p> <p>※ 향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요망</p>
교통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자전거 전용도로 꽃길조성	<p>○홍제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운영하여 연65,000명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구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게 하고 또한 홍제천변의 오염실태를 보고 주민들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실천력을 제고시켰으며, 자전거도로를 따라 코스모스, 메리골드, 로베리아, 다아리아 꽃등을 심어 테마 꽃길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거리와 환경친화적인 휴식처를 제공하고 타구의 학생들까지도 견학하는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케 하여 언론에서도 수차례 소개되었듯이 전직원이 차량 등 장비도 없이 물주기와 농약살포하기 등을 하며 꽃의 훼손방지를 위해 새벽녘까지 순찰하는 등의 열성을 보임으로써 주민을 위한 진정한 실천행정을 수행하는 모범을 보인 우수한 사례임으로 행정장비와 예산을 지원하여 더욱 장려하기 바람.</p>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1. 의회운영위원회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99. 12. 2(목) 14:00
- 감사장소 : 의회 제1회의실

나. 감사대상 : 의회 사무국

다. 감사반 편성

- 총괄 : 감사위원장 조재구 위원(간사: 최광진 위원)

구분 반별	감사위원	대 상	사무보조	비 고
1 반	반장: 최광진 의원 반원: 정해연 의원 이기봉 의원 이문복 의원	의정담당 업무	전문위원 : 이상현 의사담당주사: 박천기 직 원 : 권오상 이영순 성기주	
2 반	반장: 김종철 의원 반원: 최태중 의원 김대봉 의원 허준구 의원	의사·의안 담당업무		

라. 감사결과

1)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업무)	○ 지출부정리 소홀	- 예산에 명시된 계정은 모두 대장에 수록 기록관리 유지하여야 하나 일부 누락시킨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출부대장을 관리함에 있어 지출일자 및 금액등 기록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일자가 누락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총무위원회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1999. 11.29 ~ 1999.12. 5 (7일간)
- 감사장소 : 구청대회의실

나. 감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

- 1) 감사대상 : 1담당관 2국 1소 11개동사무소
 - 부구청장직속 :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 재 무 국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동 사 무 소 : 홍제제1동, 홍제제2동, 홍제제3동, 홍제제4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2) 감사범위 : 1999년도중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

다. 감사반 편성 : 위원장 최용완 위원 (간사: 김대봉 위원)

1) 국별감사반

반별	구분	감사위원	대상부서		사무보조	비고
			국별	실·과별		
1반		반장 : 이기봉 위원 : 한한열, 김대봉	행정관리국 (4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전문위원: 이상현 의사담당주사: 박천기 직원 : 권오상 김종일 이영순 성기주	
			부구청장직속	감사담당관		
2반		반장 : 유규상 위원 : 오환인 정혜연	재무국 (4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3반		반장 : 조재구 위원 : 기창표	보건소 (3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2) 동별 감사반

반별	구분	감사위원	감사대상	비고
1반		정혜연, 김대봉의원	홍제1,2,4동	
2반		조재구, 기창표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3반		오환인, 한한열의원	홍은3동, 남가좌1,2동	
4반		유규상, 이기봉의원	북가좌1,2동	

라. 감시결과

1) 총 괄

구 분	계	우수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89	16	67	6	
감사담당관	4	2	2		
행정관리국	20	5	12	3	
재 무 국	22	2	20		
보 건 소	13	2	8	3	
11개동	26	5	21		
기타부서	4		4		

2)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p>감사담당관</p>	<p>○ 전화진정업무</p>	<p>- 전화진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실시 초기에는 접수대장을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진정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감사업무</p>	<p>- 감사실시 후 시정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을 조치 함에 있어 대부분 주의촉구조치만 하고 훈계이상 조치는 거의 없는바 이는 오히려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총무과 (시책추진반)</p>	<p>○ 제2건국위원회 업무 추진사항</p>	<p>- 서대문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은 1월 20일 총회를 거쳐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방학 토론회 개최, 제2건국운동 개혁과제 공모('99. 4.20~6.30) 등을 실시하였으나 회의록 미비치, 개혁과제 공모실적이 전무한 바, 정부시책에 따른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식개혁 및 제도개선 분야 등을 실시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운영하여야 할 것임.</p>
<p>총무과</p>	<p>○ 종합상황실 및 청원경찰</p>	<p>-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직급과 직위에 관계없이 좋은 환경과 시설속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나 구청의 관문인 종합상황실과 청원경찰은 민원실과 지적과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시설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요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환경개선과 시설보수 등을 보완하여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정하여야 할 것임. [(비품구입 책상 4개 660천원, 의자 7개 833천원, 의복구입 방한복 9벌 900천원, 근무복 7벌 1,120천원)]</p>
	<p>○ 유관단체 예산지원 사항에 대하여</p>	<p>- 유관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활동을 많이 하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에 비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IMF라는 이유로 새마을지도자 지원예산은 삭감하였으나 부녀회와 바르게는 전액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시정하여야 하며, 일부 단체에서는 지원예산을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없는 바 단체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p>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보안등 관리 사항	- 서대문구 관내 보안등은 총 8,772개, 예산은 173,000천원으로써 1년에 한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000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가 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임.
기획예산과	○ 컴퓨터사용실태	- 정보화시대를 맞아 컴퓨터 사용은 필수적임에도 아직 일부 간부들은 사용능력이 저조하므로 교육 등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실태	-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획예산과 4,000만원과 문화체육과 1,20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에 있어서도 단체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
	○ 사업성 업무추진비 편성	- 1999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성격 및 대민접촉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대민접촉도가 빈번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과는 2,200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8,000천원, 총무과 7,200천원, 문화체육과 8,400천원 등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대민접촉도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민원부서에는 상향 조정하여 활발히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각과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획예산과 4,000만원과 문화체육과 1,20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에 있어서도 단체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형무소 민족문화예술제 입장권 판매부적정 	<p>- 1999.11. 5~11. 7까지 3일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개관 1주년기념 “서대문형무소민족문화제”를 (사)서대문형무소 민족예술제추진위원회와 서대문구청이 공동으로 개최함에 있어 입장권(대당 5,000원) 5,000매를 (사)서대문형무소 민족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인수받아 문화체육과의 5개과와 21개동(각동 50매씩)에 배포하여 판매토록 하였던 바 강압적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는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는 부서(관련 직능단체, 관련업소)에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입장권을 구매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물조사 사항 	<p>-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 매 2년마다 1회씩 잘하고 있으나 소화기의 경우 재물조사내용과 일부 부서 비치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재물조사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고 관리 	<p>- 구금고를 관리함에 있어 종합통장대장을 잘 정비하여 우리 구 자금흐름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만 예치하고 있어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이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방법 	<p>- 행정물품구입을 함에 있어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의 구입(제조,수리포함)시 재무과에서 취합 요구토록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나 소액물품(소모품)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요부서의 불만과 처리기간이 5~6일이 소요되는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 서울시의 경우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단가를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우리구도 서울시처럼 처리하므로써 구매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사항 	<p>-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담당자의 업무과실로 '75. 3.18 철도청에서 등기하고 관리중인 점을 미확인 부과하는등 구유재산 1건 2,402,930원, 국유재산 30건 52,652,520원을 기간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부과하여 부과취소하는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하여 민원발생을 극소화 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재산 관리 실태 	<p>- 국공유지에 대한 '99년도 변상금 징수실태를 보면 부과는 1,682건 644,965천원, 징수는 84건27,545천원으로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p> <p>- 국공유지 면적이 3.3m²미만인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지 약 15%, 사유지 약 5%, 구유지 약 15%로 이는 재산관리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관련법규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무과	○ 업무추진 실태	- 문서수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발신자 및 수신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명하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
	○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의하면 입찰참가자 신청시 현행 1건당 55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우리구의 최근 입찰수입 현황을 보면 '98년도의 경우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이 90건에 등록 16,157건으로 수입액은 8,886천원이며, '99년 11월말 현재 입찰 91건에 등록 13,091건으로 수입은 7,200천원인바 이는 현실적으로 수수료가 일부 타구와 비교할 때 너무 낮으므로 조례 등을 개정 수수료를 인상하여 구수입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타구 비교 : 11개 구청 1,000원 미만, 14개 구청 1,000 ~ 5,000원 미만)
세무1과	○ 체납자 관리 실태	- 체납자를 관리함에 있어 독촉장만 발부하는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는 물론 유선통신이나 직원이 납부독려하는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세목취소 변경	- 세목취소변경 현황을 보면 '99년 재산세 18건, 종토세 16건으로 예년보다 많이 감소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불납결손자 사항	- 불납결손자는 납세자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므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체납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포상금 지급 실태	- 포상금은 열심히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과년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을 실적으로 잡는등 나눠먹기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세무1과</p>	<p>○ 세입추계 절차</p>	<p>- 세입추계작성에 있어 3년에서 5년간의 실적표를 대비하여 세입신장율+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세입목표와 징수실적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당초부터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수립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종합토지세 소송 사무</p>	<p>- (주)한양으로부터 제기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판결내용 중 서대문구 연희3동 167-9호 토지는 현황 도로인 점이 인정되어 부과취소판결('98.12.15)됨에 따라 감액처분 하였으나, 또 다른 도로와 인접한 산2-100번지(344㎡), 169번지(93㎡), 170-186(198㎡)도 역시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주)한양에서 동시에 제기를 하지 않고 구두로 아의를 제기한 바 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2호에 의거 감액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이 고액에 대한 감액결정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한후 감액하여야 하며 또한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절차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체납자 관리의 문제점</p>	<p>- 체납자관리를 함에 있어 담당직원은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체납자에 대한 민원분석과 대처방법이 미흡하였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특별히 관리함으로써 업무인계인수시등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감사당일 현재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담당직원 인사이동등 이 있을시 인계 및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체납자 독려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p>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세무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세금 이중 납부와 착오부과에 대해 	<p>- '97년도 과오납환불 현황을 보면 이중납부가 2,075건 66,370천원 착오부과가 2,114건 89,945천원이고 '98년도 현황을 보면 이중납부가 980건 34,131천원 착오부과가 459건 22,901천원으로 연도대비 총건수로는 274%, 금액으로는 157%가 각각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산자료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바 앞으로는 전산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는등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업무 	<p>- 서울특별시조례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에 의거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시세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지급받고 있음. 자동차등록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구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며 우리구에서 등록을 할 경우 등록징수금에 대하여 서울시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99년도 징수목표액이 2,954,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친절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차량등록업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교부금 증액으로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업무 전반 사항 	<p>- 지적과는 구청의 제2민원실로 많은 민원인이 내왕하므로 사무실을 좀더 깨끗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전산화 작업에 따른 장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지가조사의 경우 대부분 감정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확한 조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좀더 세밀이 조사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등 특별한대책을 강구하여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p>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지 적 과	○ 지가조사 관련	-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직원 파견 및 합동으로조사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협조 없이 지적과에서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업무효율 및 전문성제고, 예산절약등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나, 각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적과에서 6명의 직원으로 조사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자칫 지가조사산정 및 신뢰성이 저하되어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지가조사업무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보 건 소 (보건행정과)	○ 방역소독 업무	- 1999년도 연막소독예산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추진실적은 목표 50회에 실제 실적은 88회로 180%의 실적을 거양한 바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보건지도과)	○ 물품구입 회계처리	- 각종 회계처리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보건지도과에서는 물품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시 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이는 회계문란행위로써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홍제제1,2,4동	○ 전반적인 업무 처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정리는 비교적 양호하나 색인부정리 및 문서번호부여 정리등 정리정돈 상태와 절차상 미흡한점이 있으므로 시정 바람. - 사회담당자는 관내 영세민, 거택보호자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많이 발굴하여 효율적인 불우이웃을 돕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대부분 소규모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실시한 건수와 소요예산도 저조한 바 이는 본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전입·전출처리 업무도 대부분 양호하나 전입시 신고대상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람. -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함에 있어 대부분 잘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보관물품 목록이 비치되지 않았으며, 특히 홍제4동은 문서창고와 물품창고가 같이 있어 문서분실우려가 염려되는 바 분리를 하여야 할 것임.
홍제제3동	○ 회계처리업무 및 서류철정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회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근거도 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서류철을 직원 임의로 무한정 제작사용하는 것은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홍은제1동	○ 행정장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행정은 주간 또는 월중행사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추진.실천하여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월중행사계획표는 먼지가 쌓인채 사용한 흔적없이 방치하고 있는 바 행정장비 관리를 소중히 함은 물론 계획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홍은제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철정리상태 ○ 창고정리 상태 ○ 청소업무 실태 ○ 회계업무 실태 ○ 민방위장비관리 실태 ○ 숙직실 관리 ○ 물품구입 실태 ○ 감사준비 및 협조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표지, 색인목록, 서류페이지 미부여등 서류편철규정 미준수 - 창고에 보관된 품목별 물품관리등 재고정리품목에 대한 정리정돈상태관리 요망.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없음. -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개인도장을 제작.보관사용하는 것은 투명행정에 역행하므로 즉시 시정을 요함. - 민방위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비치한 현황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철저한관리 요망. - 숙직실은 창고인지 숙직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각종 회계처리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홍은1동에서는 물품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시 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이는 회계문란행위로써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 감사수감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갖추어야 함에도 감사장소는 물론 업무보고, 수감태도 등 모든 것이 소극적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홍은제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정리 상태 ○ 민방위관리 상태 ○ 회계업무처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로 창고정리가 요망되며 - 민방위장비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하여 관리는 물론 장비도 별도 관리 요망. - 각종 회계처리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홍은1동에서는 물품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시 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이는 회계문란행위로써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홍은제3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 공공근로 신청자격 심사 실명제	- 공공근로신청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99. 9)에 의하면 동장은 공공근로사업신청서의 뒷면에 “신청서 확인”양식을 표기 책임성 있게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선발심사기준”에 의거 점수를 채점하여 구청에 전달하여 공공근로 참여 적격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바 동사무소에서는 심도있게 “선발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공공근로 신청자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여성세대주로 주민등록표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업무를 소홀히하여 홍은3동(9명), 남가좌1동(8명), 남가좌2동(8명)에서는 27명의 여성세대주를 공공근로에 참여시킨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전달할 것.
남가좌제1동	○ 소규모 사업	- 남가좌1동은 재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소규모사업이 부진하므로 교통분야등 사업을 찾아 소규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북가좌제1동	○ 청사환경 정비	- 북가좌1동은 청사환경이 좋지 않아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여 도색등 정비를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여 민원인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생활보호 업무	- 생활보호대상자관리등 사례3항을 보면 거택보호자가 병원 입원시 생활보호법제7조에 의거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의 종류로서 병행실시가 가능함에도 북가좌2동에서는 6개월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북가좌제1,2동	○ 민방위 장비	- 민방위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방독면의 경우 대부분 생산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며, 정비를 한다고 하나 정화통 일부만 부분교체하는 실정인 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반적인 교체를 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공 통 (행정관리국) (재무국)	○ 상급기관 지시 사항 이행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시사항 등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부서와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유로 서류편철만 해놓은 상태인 바 담당주사까지라도 공람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사무관리 규정개정으로 담당공무원은 공문 기안시 E-mail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바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공 통 (전부서)	○ 사무관리규정 및 서류편철관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규정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무의 인수인계, 공문서관리, 용지의 색깔,규격, 문서목록, 문서의 구성, 항목의 구분, 접수문서의 처리, 문서의 보관,보존,편철, 문서의 폐기 및 정리등이 각 과별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 통일되지 못하여 구행정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직원에게 사무관리규정 및 서류편철관리관계를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서류양식도 통일하여야 할 것임.
공 통 (재무국)	○ 문서정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편철등은 행정업무의 기본인 바 문서목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있으며, 문서번호 부여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열람시 어려움이 있는등 전반적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향후 문서처리에 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공 통 (보건소)	○ 예산사용 및 회계업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관리요망 - 각종 소모품등 약품을 관리함에 있어 보관물품별, 재고량의 현황유지 등을 현실적으로 관리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서류철을 편철함에 있어 관리규정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임의로 제작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바 시정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공 통 (보건소)	○ 상급기관 지시 사항 이행실태	- 공직자 개혁차원의 일환으로 계장제가 폐지되고 담당주사, 담당주무로 변경됨은 물론 담당주무에게는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즉시 시정이 요망됨.
	○ 전년도 감사 시정 실태	-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 년2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하므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하여 실적을 거양하여야 하겠음. - 행정서류 제작관리, 편철규정 미준수(색인목록표, 서류번호 부여등) 및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
	○ '9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숙지상태	- 보건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결산검사의견서도 받지 않은 상태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 안전시설물 관리 실태	- 보건소 전기실, 기계실은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취사행위, 음주행위는 물론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정하여야할 것임.
	○ 기타 업무추진 실태	- 서류(소모품대장 포함)를 보관함에 있어 '98년도 일부서류를 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기실, 기계실에 방치하고 있는바 서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임.
공 통 (각 동)	○ 서류편철 색인목록 업무	- 서류의 편철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인 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모든 부서가 통일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색인목록 작성은 연도말에 한꺼번에 작성할 것이 아니라 서류접수 및 편철 즉시 작성하므로써 서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통장회의 참석 수당 지급	- 통장회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매 회의를 마다 100%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통장회의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회의참석자에 대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는등 오해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기타 부서 (주택과)	○ 시민아파트 공공근로사업 장려	- 위험시민아파트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일부 허위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 우리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시 지적사항으로 하자보수는 시행하였으나 이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타부서 (공원녹지과)	○ 주민체력단련장 건립의 문제점	- 서대문구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체력단련장을 건립함에 있어 1995. 1. 5일 당초 사업계획은 303평 규모에 소요예산 1,245백만원을 투입토록 결정하였으며 1999. 7.21일 주민체력단련장 건축공사 시행방침시 연건축면적 800평, 소요예산 1,645백만원으로 공사발주하였으나 공사비부족으로 1999.10.18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새서울 문화복지 향상부문 우수구로 평가되어 인센티브 지원대상 사업비 2억원을 교부받아 동사업에 투입하여 사업비 총 18억45백만원, 연건축면적 876평으로
기타부서 (공원녹지과)	○ 주민체력단련장 건립의 문제점	설계변경 하였던 바 1999년도는 건축예산편성을하여 투자사업을 최대한 축소하였음에도 상급성격의 인센티브 지원대상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본 체력단련장 운영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할것.
	○ 안산무악정 보수 공사	- 안산무악정 보수공사는 1999. 3.30에 금 123,902,537원정에 인목건설(대표 강춘원)에 계약하고 준공기한을 1999. 6.30로 정하고 1999. 4. 2 착공하고 준공검사를 1999. 7. 8에 해 주었는 바 우리구의 상징인 안산에 전통의 한옥으로 팔각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자연의 존귀함과 휴식을 갖게함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음. 안산무악정은 처음공사는 신태건건설주(대표이사 조원학)에게 금220,589,000원에 1992.10.19에 계약해서 착공을 당해연도 10.20일에 하고 준공기한을 다음연도인 1993. 4.10일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 248,000,000원, 공급가액 228,000,000원, 부가가치세 22,181,800원으로 하자보증금 3%로 하고 시공년월일을 1992.10.20일 준공년월일을 1992.12.31일로 했다는 내용과 계약일인 10.19일 하루만인 1992.10.20일에 착공한다는 도급계약서를 보면 처음부터 부실을 안고 있었다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내용을 보면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 사실과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기타부서 (공원녹지과)	○ 안산무악정 보수 공사	<p>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서대문구에 그것도 우리 구민의 정기라 할 수 있는 안산에 백년대계를 내다 보아야 할 팔각정을 불과 6년3개월만에 124,000,000여원의 거금을 들여 거의 재축조하다시피하는 졸속행정을 보면 바로 우리나라가 요즈음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겪게 된 병폐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짐.</p> <p>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면 안산의 무악정 같은 건물은 문화재급으로 만들 수 있는 장인의 정신으로 300년~500년 아니 천년의 세월을 건널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견비해야 하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아니할 수 없음.</p> <p>결론적으로 안산무악정은 1993. 4.10일에 금 220,589,000원을 들여 준공해서 불과 6년3개월만에 금 124,000,000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 것은 졸속행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 바 책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음.</p>

3) 건의 및 기타사항

부서명	건의 및 기타사항
총무과	<p>[시책추진반 운영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추진반의 운영실태를 보면 조직은 상위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는 한시성 추진사업이며 직원은 과견명령으로 근무하므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의 일원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력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일원화 차원에서 통합운영방안 등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임. <p>[정원의 인원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 정원의 인원은 총 28명으로 전체현원 1,273명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천공 1명, 사역원 8명, 검침원 18명, 조무원 1명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정원의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실상 근무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태로써 현재로서는 2단계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이 있어 위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간의 근무경력을 참작하여 행정보조원, 방호원등 단순기능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기획예산과	<p>[전산실 근무환경개선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근무환경과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시행될 부서임에도 그렇지 못하여 개선할 것을 건의함. · 건의내용 : 탁자,의자,냉장고,TV등 교체 컴퓨터수리실 분리

부서명	건의 및 기타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p>[민원실 의료서비스 제공]</p> <p>- 2000년 상반기에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 1층 민원실에 노인 및 모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혈압기 및 비만측정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건의함.</p>
(보건지도과)	<p>[복지행정 구현]</p> <p>- 거동불편 노인 및 소외계층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방문보건사업”은 복지행정구현에 초석이 되는 보건서비스행정이므로 21세기 새천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므로써 수혜를 못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보건위생 철저]</p> <p>- 객담용의약품이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얼음을 저장한 소형 밀폐함을 이용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건위생은 물론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의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요망.</p>
(의 약 과)	<p>-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소변검사를 함에 있어 의료기 없이 수작업으로 검사를 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소변검사 의료기를 구입하여 구민의 보건행정을 향상시키기 바랍.</p>

4)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감사로 사업진행에 따른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낭비적요인 제거와 사업시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함에 있어 '99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내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와 58건을 적출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부적정등 51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 36건을 사업시행전에 조치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였고 · 과다책정사업비 감액조치로 360,303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 바 이는 우수사례로서 앞으로 계속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문보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문보고제도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발견신고하여 빠른 시간내에 시정조치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 1,127건을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기능유지에 기여하였는 바 이에 공헌한 아래직원들을 격려 및 포상을 하여야할 것임. (청소행정과 6급 남규화, 대신동 김영배, 남가좌2동 9급 손선윤)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력 업무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 제출할 구정업무 보고자료와 감사자료의 제작을 위하여 밤늦도록 담당주사의 2명의 적은 인원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수 있도록 감사장 정리정돈까지 세심한 배려를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등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부단히 노력하였기에 우수부서로 추천하오니 타부서로 전파 확대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우수및장려사항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문화의 집 운영 	<p>- 서대문구 문화의 집이 전국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 평가결과 문화의 집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바 평가대상기관은 전국 60여개 문화의 집 중 30개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현지답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결과 ① 서대문 문화의집은 문화기획 전문가가 관장으로 임명되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고 ② 여성구정평가단 10명이 문화의 집 전반을 확인 평가하고 ③ 문화의 집과 문화회관이 연계가 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④ 자료관리 및 정보서비스가 탁월하여 홈페이지 및 소식지도 발행하였으며 ⑤ 특히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하고 이용고객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놀이방 운영, 무료법률상담, 무료심부름센터, 매주 영화상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 ⑥ 관장실을 공공근로 작업장으로 개방, 친절교육 등을 실시 ⑦ 전문 및 일반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활용하여 20여개 동아리 153명이 수시로 문화모임 및 활동여건을 제공 ⑧ 이용고객 편의시설로 송수신무선전화기, 분실물 센터, 칭찬코너, 족보찾아주기, 무료우산 빌려주기, 365일 연중 무휴 개관 등으로 고객들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⑨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일 무료단전호흡교육 및 현지 확인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p>
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행정 실천 이행 상태 ○ 민원서류 처리 	<p>-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9개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을 1개부서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타 부서의 모범이 되므로 관련업무를 찾아내어 부단하게 발전시키고 확산하여야 할 것임.</p> <p>- FAX 민원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규 제11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처리시간이 4시간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수신전용 FAX회선을 지정운영하며(행정 686번, 일반 330-1686번),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의 신속처리 체계를 유지하고, 민원신청서 하단여백에 접수 및 처리시간을 기록하여 발급시간을 관내는 30분이내, 관외는 2시간 이내로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증명민원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는 우수사례로서 장려할 사항으로 타부서에 확산과급토록 하여야 할 것임.</p>

부서명	감사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재무과	○ 각종공사 계약	- 각종 공사계약(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등)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물품구입심사위원회 개최등 규칙에 의거 의혹없이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고있어 장려함.
재무과	○ 직원 근무실태	<p>- 재무과 배순태 과장은 탁월한 성품과 지혜로 과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정확.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아래와 같이 구정발전에 기여 하였으므로 소개함.</p> <p>① '99 하반기 자치구 비교평가 자료책자 제본에 평가자료 지목변경 실적, 지번합병, 사유지 취득보고 변상금대부 매각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제본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으며 ②각종 공사, 물품계약 업무의 부조리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등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③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8조 규정에 의거 공사 3억원, 물품제조 1억원, 물품구매 및 용역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게재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내 도로정비공사외 2건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약 1,500,000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④구 자금을 정기적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4등분으로 분산예탁하고 이자변동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인출과 동시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재예탁하는등 이자수입에 전념하였으며, '99년도 당초 이자수입 5억3천만원에서 금년 11월 30일 현재 10억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획득하여 구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운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는등 획기적인 이자수입 거양에 기여하였음.</p> <p>이는 평소 투철한 근무자세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므로 타부서에 확산과급시키는등 장려를 하여야 할 것임.</p>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진료업무 장려	- 지방전문직 의사 홍대화는 내과의사로서 진료업무전반에 성실히 임하여 관내.외의 일반환자는 물론 65세이상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노숙자등 어렵고 진료업무를 성심성의를 다해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관내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주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됨으로 장려사항으로 권장하오니 표창을 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홍제제3동	○ 물품창고정리 장려	- 물품창고를 관리함에 있어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 관리 유지함으로써 비상시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타 부서의 모범이 되므로 장려함.
홍은제2동	○ 방문행정 장려	- 홍은2동에서는 방문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대책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방문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친절행정의 모범이 되므로 장려하오니 타부서에 확산전파하기 바람.
홍은제3동	○ 청소업무 장려	- 홍은3동은 타동에 비해 넓은 지역임에도 동장과 직원2명이 일찍 출근하여 동네 구석구석 쓰레기를 수거하며, 또한 사무실 한쪽에 쓰레기 및 재활용 수납장소를 확보·개방하여 맞벌이 부부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버릴수 있도록하여 청소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어 장려함.
남가좌제1동	○ 공공근로사업 장려	- 남가좌1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중 전문유경력자로 하여금 초·중·고등부의 영어, 수학 등 매주 6시간씩 저소득자녀에게 무료로 수강토록 하므로써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물론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어 타부서의 모범이 되므로 장려함.
남가좌제2동	○ 업무처리 장려	- 남가좌2동은 동장이 공식임에도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복지등 모든분야에서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으며 또한 서류철정리등도 잘하고 있어 타부서의 모범이 되므로 장려함.
공 통 (보건소)	○ 친절행정 장려	- 보건소에서는 공무원증을 특수제작하여 목에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민원인의 친절행정에 대하여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전부서에 확산파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약국개설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서비스행정을 한단계 발전시킨 사례로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 장려하오니 전부서에 확산파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시민건설위원회

가.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99. 11. 29 ~ 12. 5 (7일간)
- 장 소 : 구청 지하상황실

나. 감사대상 부서 및 사무범위

- 1) 감사대상 : 3 국 12과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 도시관리국 :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 건설교통국 :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2) 감사범위 : '99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다. 감사반 편성 : 위원장 이진수 의원(간사 : 최태중 의원)

1) 국별 감사반

구분	감사위원	대상부서		사무보조	비고
		局	課		
1반	반장 : 전성장 의원 위원 : 정일출 의원 김종철 의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전문위원 이정완	
2반	반장 : 허준구 의원 위원 : 이문복 의원 최광진 의원	도시관리국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의안담당주사 윤국주 직원 김길록 박영갑 장혜경	
3반	반장 : 김영일 의원 위원 : 김화형 의원 최태중 의원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 감사실시 일정

감사차수	감사일시	감사실시 내역	감사장소
1일차	'99.11.29 10:00 -17:00	소관국장, 총괄 감사자료 업무 보고 및 신사.선서	
2일차	'99.11.30 10:00 - 17:00	반별.개별감사실시 및 현장확인	
3일차	'99.12. 1 10:00 - 17:00	"	구청
4일차	'99.12. 2 10:00 - 17:00	"	지하상황실
5일차	'99.12. 3 10:00 - 17:00	"	
6일차	'99.12 .4 10:00 - 17:00	" , 감사강평.감사 종료선언	
7일차	'99.12.5	휴 회	

라. 감사결과

1) 총괄

() : 전수

구 분	계	우수.장려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건의.기타사항
계	63	4	32	27
생활복지국	28	사회복지과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4) 환경위생과 (2) 지역경제과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환경위생과 (4) 지역경제과 (7) 청소행정과 (2)
도시관리국	13		주 택 과 (3) 도시정비과 (1) 건 축 과 (3)	주 택 과 (3) 주택개량과 (1) 도시정비과 (1) 건 축 과 (1)
건설교통국	15		토목하수과 (3) 공원녹지과 (3) 교통행정과 (2) 교통지도과 (4)	토목하수과 (1) 공원녹지과 (2)
공 통	5		건 축 과 (1) 교통행정과	주택개량과 (1) 사회복지과
			교통지도과 (1) 토목하수과	
			전 부 서 (1)	재 무 과 (1) 도시정비과
총무국	2	총무과 (1)	재무과 (1)	

2) 시정 및 요구사항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 교육과정 및 어린이 집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어린이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어린이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부서에서 어린이 집을 지도관리함에 있어서 타사업에 우선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온 결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교육풍토 조성에 지대한 성과를 거양하였음.
청소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 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10월부터 흥은동 432번지의 부지 250평에 80평의 사업장을 건축하여 연간 약90톤의 스티로폴을 재활용하여 '99년 4월에 환경부와 (사)한국발포스티틸렌협회에서 사업장을 조사. 평가한 결과, 우리구가 전국에서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99. 6. 3 공로패와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음은 물론 상금을 환경미화원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탁월한 행정을 구현하였음.
청소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행정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사 및 구자체 친철강사를 초빙,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과 동사무소의 주무담당주사, 담당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이 명찰을 패용케함으로써 대주민 친절정착과 주민만족 및 책임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대협업체 대표, 직영노조지부장, 청소행정과 직원이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 행정의 발전방안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관계직원들이 봉투판매소, 슈퍼마켓, 약국 등 소점포 및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청소행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청소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청소리콜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함.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준비 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력계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담당주사와 2명의 직원은 한달여 전부터 휴일도 없이 감사자료.사무기기 및 시설 등의 준비와 최적의 여건에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보좌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이후 우리구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1,261세대가 있으나, 경기회복 등으로 취업하여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는데, 재조사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어린이집 등 시설운영실태 및 관계부서의 지도감독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 ~ '99년에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에 대하여 총5회의 구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총264건에 2,829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한 실태로서 정부지원시설 운영과 각시설의 시설장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에는 불법, 부당한 업무추진이 계속될 시에는 지원예산을 감액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바, 이는 시정해야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기금 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행정의 척도는 노인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바, 운용기금을 5억으로 책정하여 현재 220,000천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빈약함으로 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예치이자율이 7.6%로서 타공적자금의 8.9%에 비해 이자수익상에서 연간 292만원의 차이가 나는 바, 타공적자금과 같은 이율로 재계약, 예치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어린이집 등 개·보수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개·보수 수의계약 시에는 다수의 관련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정업체와 계약을 해야함에도 구립 어린이집 등 7개소 보수계약시에는 2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받아 그 중 한업체와 계약체결함에 따라 업체의 신뢰성과 건설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관의 특정업체에게는 단독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등 5개소를 개보수함으로써 관급공사 계약에 따른 공정성, 객관성을 일탈하여 오해와 담합의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관내 업체도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 업소 폐수처리실태 및 구청의 지도감독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자원으로서 수질을 보존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구에도 약160여개의 폐수배출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과 년2회 정도의 단속만 실시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예상됨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횟수를 년3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구 수질 보존과 불법폐수배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접객업소시설 개선유자금 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유자금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융자하는 자금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융자 위생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채무상환 등 타용도로 지출하는 업소가 있는 바, 이는 관련부서에서 업소 현장확인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목적용 사전에 정확히 파악치 않은 채 융자지원한 결과이며, 또한 융자이후에도 업소의 환경개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융자시 사전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사후에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유자금은 반드시 업소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지도해야 할 것임.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카 고 상설전시 판매장 지원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에서 1996년부터 시카고상설전시장의 5개 부스에 매년 3,300만원씩 현재까지 총140,000천원을 지원하였는데 시카고상설전시판매장은 한국중소기업의 미주수출진흥을 위해 정부의 신경제5개년 계획에 의거 시카고 한국 수출진흥공단에서 설치한 것인 바, 우리구의 지원은 5개부스 운영자를 위한 지원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청소행정과	<p>□ 청소차량 관리실태</p>	<p>○ 덕양리에 우리구 청소차량 65대를 관리하는 차고지가 있는데 현장점검결과,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량운행일지, 점검일지, 배치도, 근무일지 등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즉시 시정하여 공조직으로서의 조직관리와 재산(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p>□ 공공대지 무료대여실태</p>	<p>○ 개인이 간판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점용료 등을 징구하면서 “서부환경(주)”에 대해서는 넓은 공공대지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은 불합리한 경영이라 판단되는 바, 공식적인 계약에 의거 일정임대료를 징구해야 할 것임.</p>
주택과	<p>□ 전세자금 융자관리 실태</p>	<p>○ 전세보증금 미상환 현황 · 미상환자 현황 : 총127건 44,947만원 · 장기 미상환자 현황 : 총38건 12,460만원 각동사무소는 융자금환수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상환의무자 관리와 융자금환수조치 실태가 미흡하고 또한 구자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청 또한 관련된 지시를 년1회만 시달하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한 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융자금 환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운영실태</p>	<p>○ 홍제2동 82번지 소재, 홍제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료를 아파트관리비와 동일계좌에 관리하고 있으며, 2년간 징수한 주차관리비는 전혀 집행치 않고 주차관리시설비 등으로 소요되는 관계부서에서는 홍제한양아파트 공동주택사무소가 징수한 주차관리비를 서울특별시공동 주택표준 관리규약 제43조 규정에 의거 용도대로 사용토록 지도해야 할 것임. ※ 홍제한양아파트 주차관리비 현황 ○ '98년도 말 : 28,116,530원 ○ '99년 10월 : 21,750,000원</p>
	<p>□ 무허가 건축물 조치실태</p>	<p>○ 창천동 30-33의 현대백화점 부지에는 규정에 따라 15%의 조경시설을 설치해야함에도,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도 없이 이곳에 서틀버스고객대기실(9평)을 불법건축하여 이용중인 바,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확인점검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p>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도시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가좌동 295-10외 5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999. 3.16부로 철거명령을 계고한 후 다시 1999. 4. 6일자로 2차 계고를 하였으나 철거처 않자 1995. 5.10일에 대집행비 305,000원을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1996. 6.17자로 남가좌동 295-10등 5개소 관계자에게 강제철거비용 28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중인 반면에, 연희동 193-6 “합홍냉면”외 5개소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1995. 3. 5 1차 철거명령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한 후에는 후속 행정조치가 없는 상태로 서,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조치가 미흡한 바, 이러한 행정행태는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연희동 193-6의 YOL(을) 및 양우회전문 등 3개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해당되면 허가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여야 할 것임.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건축현장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과에서 허가처리한 대현동 121-24(건축주:유재영)의 건축물은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3층 건축물로 공사하고 있으나, 관련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태인 바, 관련부서에서는 무단불법건축에 대한 단속과 건축시공에 따른 지도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련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 최대 재앙인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년 지진발생 회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1988.8.24부로 공포된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하되 지진구역을 1구역,2구역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내진설계기준에 적용되는 우리구 관내의 건물은 총80동으로 이중 25%인 20동에서만 내진설계확인서가 제출되어 관리실태가 부진한 실정인 바, 지진대비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착오 등의 안일무사한 업무집행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동 277-65의 건축물은 주변 주민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해당 건축주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는 서대문 구청에서 타당성 없는 민원만을 근거하여 보다 철저한 연구.검토 없이 무조건 공사를 중지시킨 안일무사한 업무;추진의 결과인 바, 향후 보다 공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선량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건축과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관련 부서별 건축물 부설 주차장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과의 주차장 통계 현황은 총 5,530건에 30,829면이고 제73회 정기회 구정업무보고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상에는 주차면수가 26,776면으로 현황이 달라 4,053 면수의 차이가 나는 바, 금액으로 환산 하면 공영주차장의 1면당 시설단가가 약 3,500만원 ~ 5,000만원이 소요됨으로 약 14,185,500만원 ~ 20,26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실태임으로, 통계자료의 정확한 현황과 부설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토목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 관내도로는 관련부서에서 덧씌우기공사등으로 도로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 도로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지형 여건상 우천 및 폭설시 자동차의 미끄럼사고가 상존하는 급경사 구간이 31개소에 4,240m나 됨에 따라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미끄럼 방지턱 설치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에 대한 조사결과 신설도로의 덧씌우기공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대체적으로 잘 시공되어 있으나 기존도로의 미끄럼 방지 포장과 과속 방지턱 시공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로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토목 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배관망도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3동 277번지 일대 등에 설치된 하수관 현황과 토목하수과에 비치된 하수관망도상의 현황이 일치되지 않아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하수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즉시 대처가 어렵고 인력과 예산낭비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 공사추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사업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수도관 매설과 도로포장 등 후속공사를 제반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는데, 홍제1동 306의18~312의 144구간과 북가좌1동 144의 1556~126의1의 도로개설구간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이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어 용벽 및 담장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공가가 방치되고 보안등이 없어 해당지역 일대가 우범화 되는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개설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임.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수목 구입식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99년도 상·하반기에 244,770천원을 투입하여 수목 32,600주를 구입, 녹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임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함으로써 저우조달가격이나 임업 협동조합이 제시한 가격에는 시세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밀식되어 자란 일부 납품수종은 수형이 불량한 것이 많은 바, 공개입찰로 수목을 구입하되 식재계획에 의거 수형이 고른 향토수 및 과실수나 경관수를 정해진 납품기일에 분할납품 받아야 하며, 기 식재된 나무가 일정 높이가 자란 후에는 솎아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광장 난간용벽 치장공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광장 난간용벽 치장공사가 진행중으로 용벽의 기존페인트를 제거하는 기초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제거하지 않고 페인트위에 지장석붙임공사를 하고 있어 이는 동절기가 지나면 기존 담장과 치장석이 분리되는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 바,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 배드민턴장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동 산2-7 연홍약수터 옆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의 가림막 시설은 주변시설과도 어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간선도로의 가시권에서도 안산과 우리구의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구청의 안산가꾸기사업과도 상충되는 바, 철거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앞으로는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가림막시설 등은 하지 않도록 순찰.감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도 예산집행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도 예산현황 → · 일반회계 : 335,293천원 · 특별회계 : 3,241,410천원 '99년도 집행현황 → · 일반회계 : 250,735천원 · 특별회계 : 859,359천원 <p>일반회계의 재료비중 교통량조사 사역임부임 2,480,천원과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 15,85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통량조사는 지난 '99.4~6월까지 공공근로자 8명을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으로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실익을 상실하여 전액 불용된 상황으로 이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예산운용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와 수요파악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안에 연면적 1,000 m²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7월 31일부로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설물 미사용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부담금 결정시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고지 결정후에 소유자가 미사용 신고를 함에 따라 10여건에 대해 감액부과 재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시설물사용용도 현장조사시 소유자에게 적극 홍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인 바, 향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시에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시설물사용용도 현장조사시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신고요령 등을 적극 안내하여 신고자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결의 후에 감액재고지를 하는 등의 행정력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 부서간 공조체계가 미흡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실태인 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노외 주차장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3동 482-1외 7에 소재한 공영노외주차장에서는 승인된 요금수납시설 2개소외에 2개의 콘테이너박스를 임의로 설치하여 주차자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시설은 그 목적에 부합해야하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설물설치신고를 필한 후에 설치·사용해야함에도 신고절차 없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내 폐쇄한 2개의 이동화장실은 철거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방치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사용중인 화장실도 매우 불결하며, 주차장내에 교통신호 시설물 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차장관리가 매우 미흡한 바,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 및 전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 공양사업으로 시행한 마을공동주차장 확충실태를 확인한 결과, '96.4월부터 '97.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홍은3동 271-2외 7필지를 1,600,000천원에 매입, '99.4월부터 '99.4월부터 '99.7.25일까지 97,0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하였기에 이지역의 주민들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환경정비에 공헌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내 구청에서는 당 주차장을 서대문등기소건립부지로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용도가 폐지되어 주변 주민들은 주차장으로서 이용도 못한채 현재 공공기관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추진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은 즉흥적인 행정과 예산낭비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고 있어 구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될 위기인 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시내버스 야간주차실태 및 관련부서의 지도단속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교통(주)와 서부운수(주)는 시내버스운행이 종료되면 자사의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데 차고지에 주차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의 편의를 위해 야간에 공공도로상에 수많은 버스를 박차하고 있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주차를 함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측면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러한 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할 관련 부서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공공도로상 시내버스 박차를 철저히 단속조치해야 할 것임.
교통지도과 토목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도감독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천동 30-1 ~ 30-15간 도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도인데, 현대백화점측이 도로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무단주차를 하는 등 개인사유지인 양 사용하고 있어 공공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공도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지역의 불법주차단속과 지장물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이러한 부당행위는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임.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표지판 현황은 허가가 53건이고 무허가가 126건으로 무질서한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이 허가건수 보다 무려 150%나 더 많은 실태로서, 이는 매우 잘못된 행정수행이라 사료되는 바, 무허가 도로표지판을 조속히 정비 또는 조치해야 할 것임.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요구사항
전 부서	□ 업무소행 실태	<p>○ 해가 거듭해 갈수록 의원들의 감사행태는 심도있고 예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공무원들은 타성에 젖어 안일무사하고 책임감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바, 전부서의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서류관리에서부터 체반 업무추진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임.</p> <p>예) : '99년 수해자 복구비, 위로금 지급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가구 복구비 : 600만원 (11가구) · 침수가구 위로금 : 1,100만원 (11가구) · 가옥파손 복구비 : 1,350만원 (2가구) · 가옥파손 위로금 : 2,000만원 (2가구) - 동사무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가구 복구비 : 600만원 (6가구) · 침수가구 위로금 : 1,100만원 (6가구) · 가옥파손 복구비 : 1,350만원 (1가구) · 가옥파손 위로금 : 2,000만원 (1가구) - 구청과 동사무소의 현황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 12가구 · 동사무소 : 6가구 (6건) 미보고

3) 건의 및 기타사항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p>사회복지과</p>	<p>□ 복지시설 홍보와 현실적인 예산지원 및 노숙자 수용시설 건립 방안 강구</p> <p>관내에는 2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소의 사회복지 시설(군세군사랑방 3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이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노숙자 등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이나,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실질수용자를 산출기초로 하지 않고 수용가능인원 230명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170,000천원 정도를 투입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예산은 실질 수용인원에 의거 절감지원하되, 향후 절감된 예산으로는 노숙자센터등의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복재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p>
	<p>□ 노인교통 수당지급 제도 개선</p> <p>65세이상 노인 중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민 등록상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는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학 바람.</p>
	<p>□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방안 강구 및 관련 부서 인원 보강</p> <p>우리구에는 대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청소년을 수용할 만한 문화시설이 없는 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및 여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2명의 공무원으로는 불가능한 바, 2000년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인원을 보강하기 바람.</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 사항
환경위생과	<p>□ 청소년 위생집객업소 출입, 고용 규제 범위 정비 건의</p> <p>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및 고용에 따른 연령기준은,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19미만, 식품위생법령상의 미성년자 보호관련 규정에는 20세 미만, 음란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그 기준이 법마다 달라 위생업소 업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대학생을 성인으로 여기는 우리사회의 정서로 인해 비록 19세 미만일지라도 대학생에게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로 미성년 대학생이나 위생업주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상의 연령제한을 통일시키고 대학생에 대한 주류판매(제공)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것을 건의함.</p>
	<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 개선 건의</p> <p>환경오염물질의 유통·소비 관련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시 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이 복잡하여 납부의무자들의 이해부족에 의한 항의성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바, 년2회 사후부과에 따른 인력 및 경비의 절감과 주민의 납부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요금과 사업용수도요금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함.</p>
	<p>□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p> <p>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공중위생업이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수입증지대금 6,000천원 가량과 면허세 19,760천원 가량이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이 '99.2.8부로 제정되었으나 아직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될 때까지는 공중 위생 관련협회 등에서 자율계도를 실시케하고, 관련부서 또한 행정선도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p>□ 대기오염 감시측정망 개설, 운영 건의</p> <p>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측정기가 남가좌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매시간 대기오염도를 측정, 모래내시장 앞 전광판을 통하여 제한된 주민에게만 인지케 하고 있으나, 우리구 환경위생과는 측정결과를 한달 후이나 공문을 통해 알게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 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어 구민건강과 밀접한 대기오염 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인 바, 구청에 대기오염감시 측정망(TMS)을 설치하여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과 전산으로 연결, 대기오염도를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오염도 증가시 주민들에게 즉시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단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 사항
<p>환경위생과</p>	<p>□ 물과관리 대책 강구 요망</p> <p>가격자율화 허용과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근거없이 전년말 대비로 개인서비스 요금만 인하케함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며, 또한 행정적 제재조치권한이 없어 지도단속이 어렵고 중앙정부(시,도)의 품질에 따른 체제적 기준가격 제시와 가격인상 억제명분이 매우 미흡한 바, 민간기구 또는 소비자단체 위주의 물가조사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물가인식이 제고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 재래시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요망</p> <p>관내에 흥연, 흥제, 모래내, 서중, 인왕시장 등의 재래시장중 흥연, 흥제시장이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모래내시장과 서중, 인왕시장도 현대화를 해야할 입장이나, 재래시장은 여러형태의 많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어렵고 위치가 좋은 점포주들의 재개발사업 반대와 토지소유권이 없는 좋은 점포주들의 재개발사업 반대와 토지소유권이 없는 좌판상, 노점상들의 점포분양권 요구 등으로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이 심하여 현대화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96년부터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대형유통업체, 할인점등의 확산으로 가격의 이점이 상실되고 건축물 노후화와 주차장등의 편의시설이 마져 미비하여 더욱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바,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시자의 현대화로 상권 확보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p>
<p>지역경제과</p>	<p>□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이율 인하 요망</p> <p>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목적은 중소기업을 육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지난 '93년부터 7억원으로 운용하여 현재는 24억원에 이르는 바, 이는 융자이율에 의한 증식이며, 융자이율 8%는 높은 이율로서 현재 관내 117개 등록 업체중 29개 업체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싼 융자이율을 크게 인하하기 바람.</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 사항
지역경제과	<p>□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 선정기준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거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되어 대상이 극히 제한된 실대인 바, 중소기업지원유위향특별조치법 제4조(공장등록등에관한특례)에는 “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동법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우리구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는 용자대상자로 포함되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용자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연탄 수급안정 방안 강구 건의 연탄은 가스·유류 사용가구를 제외한 전체가구의 약 3%의 저소득시민층 4천여가구가 사용하는 연료로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관심이 적은 에너지인데, 연탄판매자들은 고지대(저소득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배달의 어려움과 매년 연탄사용가구의 감소로 인해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자진 폐쇄하는 판매소가 증가함에 따라 연탄수급 안정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동별 연탄비축 창고 시설늘 의무화하여 일정량의 연탄을 확보(수용비 활용),가옥침수, 재해, 월동기 등에 동행정차량으로 운반·공급케 하는 운영방안을 건의함.</p> <p>□ 상설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 건의 농산물 직거래장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구민을 직접 연결하여 농산물을 팔고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자는 판로를 쉽게 열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과정상에서 추가 되는 중간이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상품을 구매케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농민과 구민을 위하여 상설직거래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인 농민의 농산물 판로를 확장해 주고 구민은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p> <p>□ 도시가스 공급 규정 완화 건의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급이 안된 지역은 고지대 영세계층 지역으로 도시가스시설비의 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세대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나, 설상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기본조건은 100m당 25가구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영세 서민들이 도시가스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구의회와 공조하여 서울시 등에 건의하여 시설비를 인화하고 공급규정을 완화하여 영세지역에서도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p>

부서별	건의 및 기타 사항
청소행정과	<p>□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대책 강구 건의 '95년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환경개선 및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공지, 대로변 등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미관저해는 물론 쓰레기처리비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 '99년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477건에 39,550천원으로 단속이 미흡하고, 상습지역 38개소에는 아직도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바, 무단투기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의 주민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p> <p>□ 대면수거제의 문제점 개선 현재 대면수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부부직장인들은 여건상 재활용품수거에 참여키 어렵고, 차임벨 신호이후 청소차량의 대기시간이 너무 짧아 노인이나 준비가 조금 늦은 사람들이 재활용품 등을 차에 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상 2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보다 친절한 자세를 견지하여 대민 친절서비스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p>
주택과	<p>□ 불법건축물 추인허가 적극 추진 냉천동 224번지 3층 주택 소유자는 측면 난간에 다용도목적의 10.7㎡의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99.8.31.구청에서 철거하였는데, 위 위법건축물은 건축물·용적율 등에 있어서 증축신고수리조건에 적합함으로 추인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추인허가 처리업무를 소홀히 추진한데서 비롯된 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향후 철거로 인한 민원해소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각종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함.</p> <p>□ 전세보증금미상환자 조치 방안 강구 건의 '90~'94년도의 전세보증금 읍자자중 장기미상환자의 현황은 총38건에 12,460만원으로 그동안 수회 상환독려를 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실태로서, 관계부서 과장이 상부에 회수불능 38건 12,46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조치를 건의하였으나 아직 결손조치가 안된 상황인 바, 본 회수불능건을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2000년도 추경예산에 손실보전금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함.</p> <p>□ 위험 가설물 관리 흥은3동의 "온누리극장" 옆 카센터 건물과 같이 관내엔는 동사무소 신고로 설치한 콘테이너가 많은데, 부설물이 노후되어 폭풍우시 지붕 등의 판넬이 날려 인명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제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람.</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주택개량과 사회복지과	<p>□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회복지시설 주변의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에 대한 방안 강구 요망</p> <p>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회복지시설 전방에 위치한 석축(L=23m H=25m) 위의 도로부지 가장자리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근린시설의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p>
주택개량과	<p>□ 홍제 제3,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준공처리 요망</p> <p>위 재개발사업지내의 아파트는 '98.3.14~2000.3.13(2차)까지 임시사용이 승인되어 조합원들의 국.공유지매수에 따른 소유권미정리 등으로 준공승인이 안된 상태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 선량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물질적피해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바,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최성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p>
도시정비과	<p>□ 노점상 집단지역에 대한 향후대책 강구 요망</p> <p>'99.11월 현재 노점상집단지역을 분석해 보면 신촌일원에 84점 홍제전철역 주변 101점, 모래내 시장일원 49점, 이화여대 일원에 31점으로 총265점이며, 특성을 보면 IMF경제난 이후에 급증한 생계형노점이 대다수로서 이들은 전국노점연합회에 가입하여 단속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신촌일원의 노점은 학생운동권과 연계되어 있어 문제점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으로, 기업형 노점과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노점은 일소하고 생계형 노점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부서와 공조체제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현재 단속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실태인 바, 조속히 보강하고 현장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건의함.</p>
건축과	<p>□ '99년도 11월 현재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망</p> <p>미준공 건축물 현황('84-'96)은 62건으로 용도별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52건이며 미사용승인사유는 면적증가 26건, 이격거리 11건으로 장기 미사용승인으로 인해 건축주는 재산권을 상실하고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주변의 민원은 미약하므로 구행정으 특단의 선처로 최대한 구제하여 줄 것을 요망함.</p>

부 서 별	건의 및 기타사항
토목하수과	<p>□ 추경예산계상시 사업순위의 신중한 선정과 추경예산사업의 철저한 추진 요망 각종 사업추진의 상황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을 추진함은 당연한 일이나, 정작 예산편성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12월에야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로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치 않고 무작위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긴요성, 긴급성,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순위를 정한 후에 순위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하여 주기 바람.</p>
공원녹지과	<p>□ 정자설치·관리 우리구에는 총 60개소의 정자가 모두 목재로 건축되어 있어 일정시일이 지나면 잦은 보수가 불가피하고 10년도이내 재건립 해야하나, 내구년한이 준영구적인 콘크리트 정자는 도색되는 별다른 보수가 필요없고 도색비는 연간 총 500천원 정도만 소요되어 목재정자 보수비가 콘크리트정자보다 1동당 1,035천원, 총 61,065천원이 더 소요되는 실태인 바, 향후 정자 신설시에는 내구년한이 길고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예술성이 있으며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p> <p>□ 공공근로에 의한 수목식재사업 개선 건의 해당 사업은 국·시비를 투자하여 공공근로인력을 이용, 무단경작지의 산림으로 복원하고 아카시아 등 단순산림을 각종 유실수, 향토수, 경관수로 교체 식재하는 사업으로 좋은 반응 속에 많은 예산확보와 관내에 아직도 많은 양의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관내에 아직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아카시아 등의 단순림 교체예산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고 월동기에 공공근로자들이 중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지금의 식재실태를 보면 너무 좁게 밀식 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적정하게 식재해야 할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경작에 의해 훼손된 산자락 등에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밤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등 경관수를 심어 줄 것을 건의함.</p>
재 무 과 도시정비과	<p>□ 가로변 각종 표지판 관리업무 이전 건의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업무가 서울시 지침 및 도로법 제49조 및 제52조 도로표지규칙 제16조(건설교통부 규칙)에 의거 도로점용이라는 이유로 토목하수과에서 재무과로 이관 되었으나,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로 인하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본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도시병치원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사료됨으로 관련 업무의 도시정비과로의 이관문제를 보다 깊이 검토하여 규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p>

III. 민원처리

○ 청 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주민권리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이 된다.

○ 진 정

진정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에 진정서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할 권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으며 지방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1. 현 황

총 계	청 원				진 정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15	15	15	.	.

2. 청원처리

○ 제3대 1기 의회 1년간은 청원처리 사항이 없었음.

3. 진정처리 현황

연번	접수일자	진 정 인	진 정 요 지	처 리 결 과
1	'99. 7.23	안순자의외 72인	○서강빌라의 원활한 수도물공급을 위한 인입관 교체요망	○은평수도사업소에 이송→회신 - 현 배수분관 100mm로 물공급 충분하나 옥내배관의 노후와 고가수조 미사용때문임을 회신.
2	'99. 7.26	유봉상	○홍제2동 26-6 유리빌딩3층 임대보증금 반환사항 및 사무실 확보에 관한 도움 요청	○임대차계약에 의한 민사사항으로서 도움드리지 못한다는 유감의 뜻 회신
3	'99. 9. 7	김기용외 99인	○남가좌1동 293-85 일대 유홍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서부교육청 심의부결의 부당함과 허가처리 조치 요망	○서부교육청 이송 → 회신 - 학교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조치였음을 회신
4	'99.10.18	정성대의외 1,034인	○상암동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좌마을버스”의 노선을 연장 조치 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조만간 농수산물시장 주변의 교통여건이 변화될 것이며, 마포구 마을버스업체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연장이 불가하다”는 마포구청의 통보를 민원인에게 회신
5	'99.11. 9	이영순	○홍제1동 342번지 소재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물의 설계변경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재시공토록 조치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층수변경 승인사실 없음과 일부 통로개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설이 가능하며, 건설주체 등 사업관계자간에 의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6	'99.12. 6	이태수	○북가좌동 377-5 앞 육교재설치 반대 및 관련예산편성 제외 요청	○'99.12.21 본회의에서 육교재설치비 전액 삭감, 의결하였음을 회신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진정요지	처리결과
7	'99.12.24	김상하외 1인	○홍제동 53-4 구유지 변상금부과 이의제기 및 향후 불하가능여 부 문의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변상금부과는 관계규정에 따 라 적합하게 부과하였고 사유 토지 매수점용이 선행되어야 구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 회신
8	2000. 2.15	장영재	○구의회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결식아동 지원예산으로 전용건 의	○여행목적이 아니고 해외 선진 문물을 습득하여 지역발전예 기여코자하는 연수이며 우리의 회에서는 예산절약 등을 통하 여 고아원 등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음과 앞으로도 결 식아동과 불우이웃돕기를 지속 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회신
9	2000. 3.22	홍주희외 8인	○진정인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 설에서 해제하든지 신촌역시설 로 수용하여 달라는 내용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진정사항을 서울시청과 철도 청에 전달하여 처리하겠음을 통보
10	2000. 4.20	김석우외 5인	○창천동 29-26의 철거시 소음· 분진·도로점용 등으로 통행위 험과 영업에 방해를 받고있음 에 따라 조치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 축관계자에게 지시하였음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 회신
11	2000. 4.21	박동주의 52인	○신촌역 앞의 공원화장실 재신 축시 화장실 위치를 기존위치 로 하여 건축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기본조사 및 설계를 전문심의 회에서 의결하였고 2000년도 ASEM과 2002년 월드컵 유치 에 따라 재건축은 불가피하며 주변경관, 청소년문화공간의 연계활용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수 용하여 달라는 뜻 회신
12	2000. 5.22	김명일	○북가좌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 시 재설치 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육교재설치사항을 검토중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설치시까지 현육교 철거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2000 서대문구 의정지

연번	접수일자	진정인	진정요지	처리결과
13	2000. 5.31	천보람외 12인	○북가좌초등학교 앞 육교철거시 재설치 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육교재설치사항을 검토중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설치시까지 현육교는 철 거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14	2000. 6. 7	신현대	○봉화약수터 이용시의 봉화산악 회원들의 횡포 근절 조치 요망	○서대문구청에 이송 → 회신 - 해당부서과장이 현장실태를 조 사하였고 전주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산악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회신
15	2000. 6.21	유진만	○구청장 자진사퇴 촉구와 구청 장 재선출을 통한 도덕성 회복 방안 강구 및 업무감사 요청	○행정사무감사 결과통보 ○구청장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중임을 통보

IV. 의원세미나

1. 의원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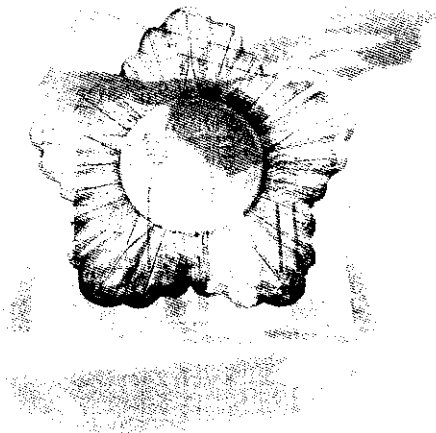
기 간	장 소	목 적	강 사	참석인원
'99.8.26 ~ '99.8.30 (4박5일)	* 울릉군의회 * 울진군의회	* 의회운영과관련 지방의회비교 방문 을 실시 의원상호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역발 전에 기여	* 비교시찰	(총 26명) *의원 20명 *직원 6명
'99.10.26 ~ '99.10.29 (3박4일)	* 강릉 * 속초	* 정기회와 관련 구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의대비 관련규정등 전문지 식 함양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의 정활동을 도모코자 함.	* 강릉대학교 김천영교수	(총 27명) *의원 20명 *직원 7명
2000.5.16 ~ 2000.5.19 (3박4일)	* 제주시의회 * 북제주시군의회	* 의회운영과관련 지방의회비교 방문 을 실시 의원상호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역발 전에 기여	* 비교시찰	(총 27명) *의원 20명 *직원 7명
2000.6.13 ~ 2000.6.15 (2박3일)	* 거제시의회 * 부산영도구의회	* 타시도 의회운영 실태파악 및 지방 의회와의 교류를 통한 지방의회 운 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의 비교시찰	* 비교시찰	(총 15명) *의원 11명 *직원 4명
2000.6.16 (1일간)	*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 구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심사를 대비 이에 따른 감사 및 결산방법 에 대한 기법등 전문지식을 사전에 습득하여 효율적인 정례회의 운영 도모	*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서우선	(총 20명) *의원 20명

제 4 장 부 록

I. 역대 시·구의원 명단

II. 직능·유관단체 현황

III. 유관 전화번호 안내



I. 역대 시·구의원 명단

1. 시의원 명단

○ 3대 시의원 명단 (임기: '91. 7. 1~'95. 6. 30)

('95. 6. 30 현재)

연번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1	제1선거구(충정, 북아현1·2·3동, 대신동)	이 종 석	건설위원회
2	제2선거구(창천, 연희 1·2·3동)	박 상 동	내무위원회
3	제3선거구(천연, 현저, 홍제1·2·4동)	김 석 판	도시정비위원회
4	제4선거구(홍제3, 홍은1·2동)	문 일 권	서울시의회부의장 내무위원회
5	제5선거구(홍은3, 남가좌2동)	김 순 애	도시정비위원회
6	제6선거구(남가좌1, 북가좌1·2동)	한 서 규	교통위원회

○ 4대 시의원 명단 (임기: '95. 7. 1~'98. 6. 30)

('98. 6. 30 현재)

연번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1	제1선거구(충정, 북아현1·2·3동, 대신동)	문 석 진	내무위원회
2	제2선거구(창천, 연희 1·2·3동)	이 강 옥	운영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3	제3선거구(천연, 현저, 홍제1·2·4동)	박 정 구	수자원관리위원회
4	제4선거구(홍제3, 홍은1·2동)	김 옥 원	내무위원회
5	제5선거구(홍은3, 남가좌2동)	김 평 락	수자원관리위원회
6	제6선거구(남가좌1, 북가좌1·2동)	신 경 식	내무위원회
7	비 례 대 표	김 방 입	도시정비위원회

○ 5대 시의원 명단 (임기: '98. 7. 1~2002. 6. 30)

('98. 7. 1 현재)

연번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1	제1선거구(충정, 천연, 현저, 북아현1·2·3동, 대신, 창천동)	주 세 만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2	제2선거구(연희 1·2·3, 홍제1·2·4동)	이 강 옥	건설위원회
3	제3선거구(홍제3, 홍은1·2·3동)	김 옥 원	교통위원회
4	제4선거구(남가좌1·2, 북가좌1·2동)	신 경 식	내무위원회

2. 구의원 명단

○초대 구의원 명단 (임기 : '91. 4. 15~'95. 6. 30)

('95. 6. 30 현재)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등 명
1	의 장	김 은 천	홍은 3동 206-4	홍은 3동
2	부 의 장	좌 두 행	연희2동 85-6	연희 2동
3	의 원	송 영 우	충정로동 3가 3-18	충정로동
4	"	전 재 환	냉천동 65	천연동
5	"	이 봉 수	현저동 101-107	현저동
6	"	조 민 행	북아현 1동 114-1	북아현1동
7	"	윤 익 수	북아현 2동 251-6	북아현2동
8	"	전 성 장	북아현 3동 1-1027	북아현3동
9	"	강 석 종	대현동 56-126	대신동
10	"	정 전 촌	창천동 68-55	창천동
11	"	김 정 현	연희 1동 542-45	연희1동
12	"	박 노 현	연희 3동 304-2	연희3동
13	"	조 갑 현	홍제 1동 334-87	홍제1동
14	"	이 문 복	홍제 2동 322-2	홍제2동
15	"	김 영 일	홍제 3동 260-43	홍제3동
16	"	김 종 채	홍제 3동 287-105	홍제3동
17	"	정 화 진	홍제 4동 103	홍제4동
18	"	최 용 완	홍은 1동 71-700	홍은1동
19	"	정 병 팔	홍은 2동 9-63	홍은2동
20	"	구 자 억	홍은 3동 413-24	홍은3동
21	"	정 일 출	남가좌 1동 152-39	남가좌1동
22	"	박 정 래	남가좌 1동 295-13	남가좌1동
23	"	임 재 선	남가좌 2동 76-57	남가좌2동
24	"	김 원 주	남가좌 2동 73-219	남가좌2동
25	"	정 혁 주	북가좌 1동 144-466	북가좌1동
26	"	김 평 락	북가좌 1동 116-7	북가좌1동
27	"	정 일 수	북가좌 2동 310-21	북가좌2동
28	"	곽 재 만	북가좌 2동 75-127	북가좌2동

○2대 구의원 명단 (임기 : '95. 7. 1~'98. 6. 30)

('95. 6. 30 현재)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동 명
1	의 장	임 재 선	남가좌 2동 76-57	남가좌2동
2	부 의 장	조 갑 현	홍제동 334-87	홍제1동
3	의 원	송 영 우	충정로동 3가 3-18	충정로동
4	"	기 창 표	옥천동 19	천연동
5	"	김 동 덕	현저동 1-154	현저동
6	"	이 기 봉	북아현 1동 509	북아현 1동
7	"	정 현 철	북아현 2동 159-355(201호)	북아현 2동
8	"	전 성 장	북아현 3동 1-1027	북아현 3동
9	"	김 종 섭	대신동 럭키APT 103동 303호	대신동
10	"	김 종 철	창천동 20-51	창천동
11	"	김 정 현	연희 1동 452-45	연희 1동
12	"	정 해 연	연희 2동 196-1	연희 2동
13	"	이 석 문	홍제 2동 44-18	홍제 2동
14	"	김 영 일	홍제 3동 260-43	홍제 3동
15	"	정 연 식	홍제 3동 유원하나APT 104동 1309호	홍제 3동
16	"	이 진 수	홍제 4동 128-4 환경빌라 B02	홍제 4동
17	"	이 성 배	홍은 1동 71-749	홍은 1동
18	"	최 광 진	홍은 2동 11-47	홍은 2동
19	"	박 덕 균	홍은 2동 8-608	홍은 2동
20	"	조 재 구	홍은 3동 338-5	홍은 3동
21	"	강 석 준	홍은 3동 274-83	홍은 3동
22	"	정 일 출	남가좌 1동 124-228	남가좌1동
23	"	권 재 일	남가좌 1동 155-264	남가좌1동
24	"	홍 성 덕	남가좌 2동 3-79	남가좌2동
25	"	오 환 인	북가좌 1동 421-23	북가좌1동
26	"	허 준 구	북가좌 2동 5-15	북가좌2동
27	"	정 일 수	북가좌 2동 310-20	북가좌2동

○3대 구의원 명단 (임기 : '98. 7. 1~2002. 6. 30)

(2000. 8. 1 현재)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동 명
1	의 장	오 환 인	북가좌 1동 421-23	북가좌1동
2	부 의 장	김 종 철	창천동 20-51	창 천 동
3	의 원	유 규 상	충정로동 2가 185-15 현대A706	충정로동
4	"	기 창 표	옥천동 19	천 연 동
5	"	이 기 봉	북아현 1동 509	북아현 1동
6	"	김 화 형	북아현 2동 174-1	북아현 2동
7	"	전 성 장	북아현 3동 1-1027	북아현 3동
8	"	김 대 봉	대현동 56-40	대 신 동
9	"	김 정 현	연희 1동 542-45	연희 1동
10	"	정 혜 연	연희 2동 196-1 연희궁APT 105호	연희 2동
11	"	한 한 열	연희 3동 304-2	연희 3동
12	"	최 태 중	홍제 1동 331 현대APT 103동 1303호	홍제 1동
13	"	이 문 복	홍제 2동 82 한양APT 109동 102호	홍제 2동
14	"	김 영 일	홍제 3동 260-43	홍제 3동
15	"	이 진 수	홍은 3동 190-15(1층)	홍제 4동
16	"	최 용 완	홍은 1동 453-2 풍림2차 102동 1203호	홍은 1동
17	"	최 광 진	홍은 2동 10-27	홍은 2동
18	"	조 재 구	홍은 3동 338-5	홍은 3동
19	"	정 일 출	남가좌 1동 152-39	남가좌 1동
20	"	우 유 근	남가좌 2동 376-3 현대APT 110-1206	남가좌 2동
21	"	허 준 구	북가좌 2동 3-143	북가좌 2동

Ⅱ. 직능·유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협의회, 단체-98개단체 104,309명

번호	단체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락처	주관과
1	민원심의위원회	구청장	2	11	330-1470	감사담당관
2	공직자윤리위원회	정현식	2	3	717-3443	"
3	서대문구 안전대책위원회	구청장	2	17	330-1324	"
4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	9	330-1324	"
5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박상동	58	149	3247-3467	총무과
6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강성모	6	34	330-1600	"
7	방위협의회	구청장	11	39	330-1310	"
8	행정서사회 서대문구지부	이남근	6	23	336-5300	"
9	인장업연합회 서대문지회	이한현	6	58	362-3664	"
10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조상길	5	5	336-7551	"
11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협의회	이종복	11	471	392-3013	"
12	바르게살기 서대문구협의회	김경오	13	537	736-1307	"
13	새마을금고 서대문구연합회	박현철	3	18	312-0312	"
14	새마을문고 서대문구지부	임해진	7	184	356-6668	"
15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이길규	15	1,320	364-6660	"
16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	1	17	330-1315	기획예산과
17	규제개혁위원회	안용식	2	11	716-8761	"
18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구청장	1	13	330-1317	"
19	투자심사위원회	행정관리국장	1	7	330-1317	"
20	예산집행심의회	행정관리국장	1	5	330-1317	"
21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청장	2	10	330-1315	"
22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부구청장	2	9	330-1315	"
23	소송심의위원회	구청장	2	3	330-1315	"
24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부구청장	2	10	330-1317	"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 락 처	주 관 과
25	서대문구체육회	구 청 장	9	32	330-1322	문화체육과
26	생활체육협의회	권 혁 래	13	8	394-8759	"
27	소식지편집위원회	부구청장	1	8	330-1410	"
28	서대문구축구연합회	권 혁 래	17	1,300	391-6501	"
29	서대문구광고심의위원회	부구청장	1	9	330-1410	"
30	자연사전시관전립자문위원회	부구청장	1	14	330-1412	"
31	교구협의회	조 용 선	15	40	374-2006	"
32	서대문구문인협회	이 상 보	19	121	3216-8774	"
33	형무소역사관운영자문위원회	부구청장	1	10	330-1626	"
34	문화체육회관운영자문위원회	부구청장	1	13	330-1560	"
35	당구협회서대문지회	박 상 권	9	215	372-4969	"
36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협회서대문지회	박 정 덕	6	127	372-6442	"
37	기록물폐기및정보공개심의회	행정관리국장	1	6	330-1436	민원봉사과
38	민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행정관리국장	1	4	330-1436	"
39	재향군인회서대문지부	정 무 신	16	81,000	335-4379	"
40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무국장	2	10	330-1360	재 무 과
4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구청장	4	7	330-1345	세 무 1과
42	구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부구청장	5	11	330-1345	"
4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대문지회	김 세 진	23	565	308-7968	지 적 과
44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구 청 장	2	6	330-1303	"
45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구청장	2	13	330-1304	"
46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윤 인 성	2	6	330-1060	"
47	대산상이군경회 서대문지회	진 창 화	7	389	393-2952	사회복지과
48	대한전물군경유족회서대문지회	신 우 식	6	285	393-2952	"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 락 처	주 관 과
49	대한전물군경미망인서대문구지사	최 혜 숙	5	320	393-2952	사회복지과
50	국민건강보험공단서대문구지사	이 우 선	1	79	323-0274	"
51	대한무공수훈자회서대문지회	고 종 갑	5	528	394-2146	"
52	서대문구노인협회	전 성 장	5	4,300	363-1334	"
53	안산장학회	박 춘 화	15	55	392-3158	"
54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	오 성 자	5	483	391-4809	"
55	여성단체연합회	윤 선 경		4,296	394-2794	"
56	서대문구 보육위원회	부구청장	2	20	330-1490	"
57	주부환경 서대문연합회	김 태 임	5	246	3217-5131	"
58	아동위원협의회	이 종 호	5	41	392-4137	"
59	보육시설연합회	정 효 정	4	17	734-6378	"
60	지방청소년위원회	부구청장	2	23	330-1304	"
61	한국음식업중앙회서대문지회	서 용 석	12	2,960	337-9019	환경위생과
62	대한제과협회 서부지회	장 양 기	6	180	395-2260	"
63	숙박업 서대문지회	유 용 종	16	157	313-7003	"
64	한국목욕중앙회서대문지회	오 환 인	8	79	372-2234	"
65	대한미용사회서대문지회	고 정 자	14	520	391-9059	"
66	한국이용사회서대문지회	한 상 문	29	200	324-7601	"
67	한국압착식용유서대문지회	이 기 로	10	65	391-5150	"
68	한국세탁업협회서대문지회	이 양 우	13	208	336-4439	"
69	환경보전협의회	정 연 규	5	48	361-2801	"
70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	김 병 식	2	95	302-6222	"
71	양곡상인연합회서대문지부(1지부)	황 교 원	4	111	735-9784	지역경제과
72	양곡상인연합회서대문지부(2지부)	오 연 진	4	135	393-2782	"

2000 서대문구 의정지

번호	단체명	대표자	임원	회원	연락처	주관과
73	양곡상인연합회서대문지부(3지부)	한 기 남	4	90	363-0435	지역경제과
74	한국난방시공협회 서대문지회	강 옥 진	3	110	304-3383	"
75	서대문구 축산조합	공 회 순	20	180	303-8472	"
76	청소노동조합서대문지부	노 기 진	2	223	324-7685	청소행정과
77	임시안전진단자문위원회	도시관리국장	1	14	330-1380	주 택 과
78	건축·주택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도시관리국장	1	8	330-1380	"
79	광고물심의위원회	도시관리국장	2	11	330-1387	도시정비과
80	구도시계획위원회	구 청 장	3	17	330-1385	"
81	한국광고물사업협의회서울지부서대문지회	정 수 연	5	39	392-2309	"
82	보상심의위원회	구 청 장	2	19	330-1401	"
83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관리국장	1	14	330-1390	건축과
8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구청장	2	13	330-1390	"
85	대한건축사협회서대문분회	권 상 운	8	35	333-6411	"
86	기술자문단	김 상 효		20	361-2804	토목하수과
87	도로관리심의회	부구청장	2	11	330-1304	"
88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	7	330-1304	"
89	교통불편신고실물심의회	건설교통국장	1	10	330-1485	교통지도과
90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부구청장	2	12	330-1481	교통행정과
91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부구청장	2	7	330-1481	"
92	토목(하수)·교통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2	7	330-1405	"
9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부구청장	2	13	330-1804	보건행정과
94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부구청장	3	9	330-1821	보건지도과
95	서대문구의사회	김 형 국	7	169	935-0797	의약과
96	서대문구한의사회	김 영 선	4	78	394-5188	"
97	서대문구약사회	정 명 진	4	160	379-2109	"
98	서대문구치과의사회	최 용 철	4	112	373-6313	"

Ⅲ. 유관기관 전화번호 안내현황

1. 서대문구의회·구청

구 의 회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의 장	364-5900	의 정	364-5902
부 의 장	364-5901	의 사	364-5903
사 무 국 장	364-5905	의 안	364-5904
전 문 위 원	364-5903~4	F A X	364-5049

서대문구청

관·과	일반전화	행정	관·과	일반전화	행정			
구 청 장	324-5994		총 무 과	총 무	324-6343			
	336-5878				330-1310	310		
	330-1303	303			330-1311	311		
	330-1333	333		인 사	330-1312	312		
부 구 청 장	324-7742				330-1323	323		
	330-1304	304			330-1329	329		
	330-1334	334		자 치 행 정	330-1313	313		
김 사 담 당 관	감 사	330-1470			470	330-1314	314	
		330-1471			471	330-1629	629	
	조 사	330-1472		472	대 외 협 력	330-1630	630	
		330-1473		473		사 회 진 흥	330-1320	320
		민 원 관 리		330-1566			566	330-1321
	민방위 재난 관리		330-1324	324	(FAX)	330-1449		
		330-1325	325	기 획 예 산 과	기 획	330-1315	315	
	330-1326	326	330-1316			316		
	330-1328	328	예 산		330-1317	317		
	(FAX)	330-1565	법 제		330-1318	318		
구청 기동 처리반	330-1414	414	전 산		330-1319	319		
민 원 신 고	326-1061		(FAX)		330-1442			
	324-7455		전 산 실		330-1369	369		
행 정 관 리 국 장	330-1305	305			330-1460	460		
	330-1335	335	자 료 실	330-1439	439			
			330-1459	459				

관·과		일반전화	행정	관·과		일반전화	행정
문화체육관광	공보	330-1410	410	재무국장		330-1306	306
		330-1411	411			330-1336	336
	문화관광	330-1412	412	재무과	재산관리	330-1340	340
		330-1577	577				330-1341
	생활체육	330-1322	322		계약	330-1342	342
		(FAX)	330-1430				330-1343
	문화회관	391-9032			지출	330-1344	344
		330-1551	551				330-1553
		330-1560	560		용지	330-1399	399
		330-1561	561				330-1400
	(FAX)	391-9031			(FAX)	330-1429	
	체육회관	395-8231~4			세무과	세무 1	330-1345
	문화의집	3217-0359				330-1346	346
	서대문형무소역사관	363-9750~1		세무 2		330-1347	347
(FAX)	363-9752			330-1348		348	
민원봉사과	문서관리	330-1435	435	세무 3	330-1349	349	
		330-1436	436			330-1554	554
		330-1437	437		조사평가	330-1557	557
	민원처리	330-1421	421	세무종합전산실		330-1547	
		330-1422	422	(FAX)	330-1707		
		330-1423	423	세무과	정리	330-1350	350
	1회민원	322-8282					330-1351
	호적	330-1424	424		과징 1	330-1352	352
		330-1425	425				330-1353
		330-1426	426	과징 2	330-1354	354	
	병사	330-1327	327		과징 3	330-1575	575
		(FAX)	330-1684			(FAX)	330-1579
		330-1685		지적과	지정	330-1450	450
	전화민원	332-3001					330-1451
333-3001			토지관리		330-1452	452	
330-1301		301					
330-1302		302					
	330-1114						
현장민원실	330-1672						
	(FAX)	330-1673					

관·과		일반전화	행정	관·과		일반전화	행정
지적과	지적관리	330-1495	495	청소행정과	사무	333-6000	
	지가조사	330-1496	496			330-1375	375
	건축물관리	330-1497	497		작업	330-1376	376
	지적측량	330-1458			재활용	330-1377	377
	(FAX)	330-1498			장비관리	330-1378	378
생활복지국장		330-1307	307		폐기물관리	330-1564	564
		330-1337	337		(FAX)	330-1712	
사회복지과	사회	330-1355	355		청소차고	373-2773	468
		330-1356	356		재활용센터	394-8272	
	복지	330-1357	357		도시관리국장		330-1308
		330-1358	358	330-1338			338
	가정복지	330-1490	490	주택과	주택	330-1380	380
		330-1491	491			330-1381	381
	부녀청소년	330-1492	492		주택관리	330-1382	382
		330-1493	493		주택정비	330-1383	383
(FAX)	330-1619		(FAX)		330-1634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330-1360	360	대기실	330-1463	463	
		330-1361	361	주택개량과	개량 1	330-1384	384
	공중위생	330-1362	330-1455			455	
	위생관리	330-1363	363		개량 2	330-1456	456
		330-1364	364		주거환경	330-1457	457
	환경관리	330-1370	370		(FAX)	330-1624	
		330-1371	371	추진반	330-1587	587	
	생활공해	330-1372	372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330-1385	385
330-1373		373	330-1386			386	
(FAX)	330-1597		광고물관리		330-1387	387	
지역경제과	상공	334-0700			보상	330-1401	401
		330-1365	365			330-1402	402
	유통관리	330-1366	366		가로정비	330-1446	446
	연료	330-1367	367		가로정비대기실	330-1573	573
		(FAX)	330-1368		368	신촌초소	320-3864
	취업정보은행	330-1419	419	광고물대기실	330-1631	631	
		330-1639	639	(FAX)	330-1636		
	공공근로추진반	330-1606	606				
330-1607		607					
330-1633		633					
(FAX)	330-1605						

관·과		일반전화	행정	실·관·과	일반전화	행정	
건축과	건축관리	330-1390	390	공익녹지과	공익요원대기실	330-1394	394
		330-1391	391		녹지인부대기실	330-1622	622
	건축 1	330-1392	392		공원인부대기실	330-1572	572
	건축 2	330-1393	393		수경재배장	330-1576	576
	영선	330-1448	448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330-1481	481
	건축민원실	330-1567	567			330-1482	482
		330-1568	568		교통시설	330-1483	483
	(FAX)	330-1440			자동차정비	330-1627	627
건설교통국장	330-1309	309	자동차등록		330-1628	628	
	330-1339	339	330-1444		444		
토목하수과	토목	330-1405	405	330-1484	484		
		330-1406	406	중기등록	330-1559	559	
	도로관리	330-1407	407	(FAX)	330-1445		
		330-1562	562	주차관리	330-1485	485	
	도로조명	330-1563	563		330-1486	486	
	하수	330-1415	415	교통과장	330-1487	487	
		330-1416	416	330-1617	617		
	지하수	330-1417	417	온수지도	330-1618	618	
		330-1418	418	(FAX)	330-1638		
	(FAX)	330-1615		주차단속원실	330-1432	432	
	330-1547			330-1595	595		
	토목기동반대기실	394-5965		버스전용차선단속실	330-1582	582	
하수기동반대기실	330-1580	580	330-1589	589			
공원녹지과	공원	330-1395	395	실			
		330-1396	396	시책추진반	제 2 청사추진	330-1586	586
	녹지	330-1397	397		330-1587	587	
	조경	330-1433	433	여성구정평가추진	330-1600	600	
	(FAX)	330-1750			330-1601	601	
	독립공원	330-1398	398	종합상황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	330-1608	608
					(FAX)	330-1300	300
				(당직실)	330-1330	330	
			(FAX)	336-0425			

실·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외부기관	일반전화	행정
실			서대문경찰서	362-2345	465
천절민원안내	330-1458	458	서부경찰서	359-4100	466
대회의실	330-1431	431	홍연파출소	334-0112	467
지하상황실	330-1434	434	서부도로관리사업소	303-8461	
공직자윤리위원회	330-1438	438	은평수도사업소	730-3852	
전화기계실	330-1331	331	의료보험서대문·은평지사	326-0658	571
	330-1332	332	서대문등기소	382-5651	
전기실	330-1374	374	서대문세무서	2287-4200	
기관실	330-1474	474	서대문세무서(별관)	2287-4615	
등사실	330-1475	475	보 건 소		
운전기사대기실	330-1477	477	소 장		
	330-1478	478	330-1803		
위생원실	330-1359	359	3142-9532		
주차타워	330-1420	420	보건행정과	보건기획	330-1804
청사정문	330-1593	593			330-1805
청사후문	330-1594	594		운영	330-1802
중대본부	330-1479	479		방역	330-1806-7
증지판매	330-1409	409		(FAX)	3142-9533
구내식당	330-1591	591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330-1821
	330-1592	592			330-1822
청소노조지부	324-7685	464		가족보건	330-1823
구내약국	330-1488	488	건강관리	330-1824	
구내상업은행	324-1318	428	의약과	의무	330-1841-2
여행사	3142-2500			약무	330-1843
체력단련장	330-1598	598		검진	330-1844
				(FAX)	330-1854
외 부 기 관			결핵관리실	330-1826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330-1379	379	예방접종실	330-1828	
	324-5841		검진실	330-1827	
민주평화통일협의회	330-1590	590	영·유아실	330-1829	
	324-3467				

보 건 소	일반전화	행정	동	일반전화	행정
모 성 실	330-1830		북아현제3동 (FAX 363-4916)	363-4913 ~5	511 512
방 문 간 호 실	330-1825		대 신 동 (FAX 363-7545)	363-7542 ~4	513 514
	330-1833				
내 과	330-1845		창 천 동 (FAX 363-5850)	363-5851 ~3	515 516
치 과	330-1846				
물 리 치 료 실	330-1848		연희제1동 (FAX 322-1384)	322-1381 ~3	517 518
임 상 병 리 실	330-1849		연희제2동 (FAX 322-3349)	322-3346 ~8	519 520
	330-1853				
X 선 실	330-1851		연희제3동 (FAX 322-3124)	322-3121 ~3	521 522
약 국	330-1847		홍제제1동 (FAX 394-4544)	394-4541 ~3	523 524
민 원 실 (FAX)	330-1801-2				
		330-1811		홍제제2동 (FAX 733-2794)	733-2791 ~3
건 강 정 보 관 리 실	330-1817		홍제제3동 (FAX 394-3274)	394-3271 ~3	527 528
성 · 에 이 즈 상 당 실	330-1813		홍제제4동 (FAX 391-6573)	395-0201 ~3	529 530
스 트 레 스 상 당 실	330-1841				
건 강 검 진 센 터	330-1850		홍은제1동 (FAX 3216-4494)	3216-4491 ~3	531 532
당 직 실	330-1810		홍은제2동 (FAX 396-4214)	396-4211 ~3	533 534
동	일반전화	행정			
총 정 로 동 (FAX 363-2145)	363-2142	501	홍은제3동 (FAX 396-4814)	396-4811 ~3	535 536
	~4	502			
천 연 동 (FAX 363-2536)	363-2533	503	남가좌제1동 (FAX 375-7504)	375-7501 ~3	537 538
	~5	504			
북아현제1동 (FAX 363-4254)	363-4251	507	남가좌제2동 (FAX 375-6225)	375-6222 ~4	539 540
	~3	508			
북아현제2동 (FAX 363-4276)	363-4273	509	북가좌제1동 (FAX 374-7244)	374-7241 ~3	541 542
	~5	510	북가좌제2동 (FAX 375-4184)	375-4181 ~3	543 544

2. 서울시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문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서울시 「120 민원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본 청 : 국번없이 120번
 - 〔 자치구 : 해당국번 + 0120번

전화번호 및 코드 번호	민원내용
1번+#→	수 도 민 원
2번+#→	교 통 민 원
3번+#→	의 학 정 보 제 공
4번+#→	행 정 법 규 상 담
5번+#→	주 택 상 담
6번+#→	관 광 안 내
7번+#→	도 시 계 획 상 담
8번+#→	지 방 법 률 상 담
9번+#→	지 방 세 세 무 상 담
10번+#→	건 축 상 담
11번+#→	중 소 기 업 지 원 및 구 인 구 직 안 내
12번+#→	시 정 안 내
13번+#→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14번+#→	생 활 관 련 신 고 및 고 발
15번+#→	시 설 물 해 손 신 고

- [이용요령] • 버튼식(전자식) 전화기로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십시오.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이용코드번호와 전화기 0번 오른쪽의 “#”을 누르시면 해당상담센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 [운영시간] • 상수도민원, 교통민원, 의학정보제공은 24시간 운영하고 그밖의 민원신고 및 상담은 근무시간중에만 운영합니다.

3. 서울시 각 구청·구의회

구청	구청장실	대표전화	당직실	일반민원 (시민봉사실)	총무과	보건소	각구의회
종로	731-0333	731-0114	732-2000	731-0435	731-0310	725-6982	723-6813~5
중구	2260-1303	2260-1114	2266-2000	2260-1301	2260-1310	2250-4401	2269-3103~7
용산	710-3333	710-3114	710-3300	710-3301	710-3422	710-3422	790-4381~6
성동	2290-7333	2290-7114	2290-7300	2290-7435	2290-7422	2290-7422	2299-1544~7
광진	450-1333	450-1114	453-0001	450-1301	450-1422	450-1422	2201-4384~5
동대문	920-4303	920-4500	920-4300	922-3001	920-4420	920-4420	2214-8040~5
중랑	490-3303	490-3114	490-3300	433-3001	490-3422	490-3422	3423-2091~4
성북	920-3333	920-3500	920-3300	920-3301	941-2672	941-2672	927-8094~7
강북	901-6333	995-0120	901-6300	901-6435	901-6422	901-6422	901-6441~7
도봉	901-5333	903-3001	901-5300	901-5301	901-5422	901-5422	997-8813~8
노원	950-3333	950-3114	950-3300	938-3301	950-3422	950-3422	950-3441~7
은평	389-2000	350-1399	389-2000	350-1301	350-1691	350-1691	350-1441~7
서대문	330-1333	330-1114	330-1300	332-3001	390-4411	390-4411	364-5900~4
마포	324-2000	330-2114	330-2300	330-2301	330-2422	330-2422	325-1987~8
양천	2650-3333	2650-3114	2650-3300	2645-3001	2650-3422	2650-3422	2652-7234~5
강서	603-0001	600-6114	602-2000	600-6435	3664-6932	3664-6932	651-0920~2
구로	860-2333	860-2114	856-2000	853-3001	860-2266	860-2266	852-0272~4
금천	890-2303	890-2114	890-2300	890-2435	890-2422	890-2422	896-5765~7
영등포	670-3333	670-3114	633-2000	634-3001	630-0311	630-0311	670-3446~7
동작	814-2000	820-1114	814-0001	820-1301	820-1422	820-1422	823-6492~4
관악	888-0001	880-3114	874-2761	877-3001	874-2761	874-2761	880-0600~4
서초	570-6333	570-6462	588-2000	570-6301	570-6572	570-6572	570-6670~80
강남	510-1333	510-1114	545-2000	510-1420	3451-2510	3451-2510	561-9947~9
송파	415-0881	410-3114	410-3300	410-3434	410-3422	410-3422	2203-1811~4
강동	478-2000	480-1114	477-0001	476-3001	2224-0710	2224-0710	2224-9001~2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4. 타 구의회

구 청	의 장 실	사무국실장	의 정	의 사	의 안	FAX
종로	723-6813	723-6815	723-6819	723-6816	731-0445	723-7826
중구	2269-3103	2269-3104	2269-3105	2269-3106	2269-3107	2269-3108
용산	790-4381	790-4383	790-4384	790-4385	790-4386	790-4387
성동	2299-1547	2299-1544	2299-1546	2266-1543	2290-7447	2299-1549
광진	2201-4381	2201-4384	2201-4385	450-1446	450-1447	454-0438
동대문	2214-8040	2214-8042	2214-8043	2214-8044	2214-8045	2214-8048
종각	3423-2091	3423-2093	3423-0672	3423-0673	3423-0674	438-6019
성북	927-8097	927-8098	927-8094	927-8095	927-8096	927-9308
강북	901-6441	901-6443	901-6446	901-6447	901-6768	908-8665
도봉	997-8813	997-8815	997-8816	997-8817	997-8818	997-88199
노원	950-3441	950-3443	950-3445	950-3446	950-3447	938-7988
은평	350-1441	350-1443	350-1445	350-1446	350-1447	350-1701
마포	325-3322	325-3321	325-1981	325-1982	325-1983	325-1989
양천	2652-4981	2652-4985	2652-7234	2652-7235	2652-7236	2652-7223
강서	651-0423	651-0422	654-0920	654-0921	652-0922	606-1816
구로	852-4672	852-0275	852-0272	852-0273	852-0274	852-4679
금천	896-5763	890-2441~8	890-2442	890-2443	896-5765	892-0249
영등포	670-3441	670-3443	670-3446	670-3447	670-3447	631-8145
동작	823-5922	824-5500	823-6492	823-6493	880-6494	817-3184
관악	880-0600	880-0604	880-0622	880-0625	880-0628	871-9695
서초	570-6670	570-6675	570-6677	570-6678	570-6679	570-6684
강남	561-7466	561-7469	561-9947	561-9948	561-9949	515-9555
송파	2203-3101	2203-1811	2203-1812	2203-1813	2203-1814	2203-3108
강동	2224-9001	2224-9090	2224-9072	2224-9074	2224-9078	475-4605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5.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직 책	전화번호	직 책	전화번호
의장	723-6981~2	의사담당관	3702-1298
사무처장	3702-1236~7	공보실장	3702-1300~6
의정담당관	3702-1245~6		

시의원 명단

선거구	성명	소속상임위원회	전화번호
제1선거구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1,2,3동, 대신동, 창천동)	주 세 만	운영, 교통위원회	363-6050
제2선거구 (연희제1,2,3동, 홍제제1,2,4동)	이 강 옥	운영, 건설위원회	322-0678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2,3동)	김 옥 원	교통위원회	395-8145
제4선거구 (남가좌제1,2동, 북가좌제1,2동)	신 경 식	행정자치위원회	372-2655

6. 기타 유관기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마포구 공덕동 105-1)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국민생활침해사범신고	3273-3333	공안과장실	711-4382
지청장실	706-1691	공안과	711-4383
차장검사실	706-1692	사건과장실	706-8656
형사제1부장실	706-1693	사건과	706-8657
형사제2부장실	706-1694	집행과장실	706-6740
형사제3부장실	706-1695	집행과	711-4381
사무국장실	706-8291	법률구조공단	
사무과장실	706-8292	서부직할출장소	
수사과장실	711-4384	자등상담실	700-2080
1호수사관실	711-4385	법률상담실	713-6009
2호수사관실	711-4386	전담변호사실	707-3749

서대문경찰서

(미근동 163)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서장실	362-2345	형사과	393-1683
경무과	362-3304	교통과	313-9395
민원실	362-4400	경비과	362-2546
민원실	362-7000	정보과	362-4450
방범과	362-6443	보안과	362-0113
방법순찰대	312-2418	경우회	362-2368
수사과	362-2548	경목실	363-1313

서부 경찰서

(은평구 녹번동 177)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4100				
경	무	과	357-2527	정	보	과	387-0326
민	원	봉	358-0112	보	안	과	384-0113
경	비	과	385-9191	경	목	실	355-8956
교	통	과	359-0663	방	범	순	386-5210
방	범	과	384-0672	청	소	년	359-4941
수	사	과	386-3766	청	소	년	359-7000
형	사	과	386-0330	상	담	실	

파 출 소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정로 파출소	충정로.미근. 합	362-3557	홍 연 파 출 소	연희3동	334-0112
독립문 파출소	영천. 옥천동	363-5316	홍 은 1 파 출 소	홍은1동	3216-9947
	냉천. 천연동		홍 은 2 파 출 소	홍은2동	395-1775
	현저동		홍 서 파 출 소	홍은3동 일부	303-9902
북아현1 파출소	북아현1동	362-1615	홍 은 3 파 출 소	홍은3동 일부	391-5568
	북아현2동		홍 제 파 출 소	홍제1동	396-5247
북아현 파출소	북아현3동	362-3559	안 산 파 출 소	홍제2. 4동	735-8254
대 신 파 출 소	대신동일부	393-0113	문 화 촌 파 출 소	홍제3동	379-6737
	신촌. 봉원동		남 가 좌 1 파 출 소	남가좌1동	373-4762
대 현 파 출 소	대신동일부	363-0469	남 가 좌 2 파 출 소	남가좌2동	373-4113
신 촌 파 출 소	창천동	392-2113	북 가 좌 1 파 출 소	북가좌1동	372-5488
연 희 파 출 소	연희1동	334-5169	북 가 좌 2 파 출 소	북가좌2동일부	372-0520
연 궁 파 출 소	연희2동	334-0113	북 가 좌 파 출 소	북가좌2동일부	302-1443

서대문 세무서

(본관 : 홍제동 251, 별관 : 은평구 응암동 84-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안 내 (당직실)	2287-4611-2	서 장	2287-4201-2
별 관 안 내 (당직실)	2287-4615	납 세 지 원 과	2287-4231-4
납 세 서 비 스 센 타		징 세 과	2287-4261-5
민 원	2287-4251~5	세 원 관 리 1 과	2287-4301-6
신 고 등 록	2287-4241-9	세 원 관 리 2 과	2287-4381-8
부 동 산 양 도 창 구	2287-4446	조 사 1 과	2287-4501-8
	2287-4681	(별관)	
세 무 상 담	2287-4221-3	조 사 2 과	2287-4551-8
납 세 자 보 호 상 담 관	2287-4211-4	(별관)	

서대문 등기소

(은평구 응암동 95-1)

안 내	민 원 접 수 (등·초본 발급안내)
382-5651	ARS 599-9999

은평수도사업소

(홍제 4동산1-173)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소 장 실	730-3859	요 금 2 과	722-0655~7
총 무 과	730-3852~3	공 무 1 과	730-3854~6
민 원 상 황 실	730-3850	공 무 2 과	730-3857~8
상 황 계 (F A X)	722-3602	양 수 기 반	722-7136
요 금 1 과	720-9262~3		

서부교육청

(대현동 67-1)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교 육 장 실	362-1090	관 리 국 장	362-1201
학 무 국 장	362-1095	관 리 과 장	363-2751
초 등 교 육 과 장	362-0544	서 무 계	363-2755
초 등 교 육 계	364-6613	문 서 수 발 실	313-4507
유 아 교 육 계	392-6586	관 리 계	362-1420
학 사 계	363-2752	기 획 감 사 계	362-1432
중 등 교 육 과 장	364-6616	전 산 실	313-4908
중 등 교 육 계	362-0804	재 무 과 장	362-7289
과 학 기 술 계	312-2701	경 리 계	363-2753
사 회 교 육 체 육 과 장	362-9490	관 재 계	363-2754
사 회 교 육 행 정 계	362-1729	시 설 과 장	363-0170
사 회 교 육 지도 계	364-8783	시 설 1 계	364-8784
체 육 청 소 년 계	362-7288	시 설 2 계	364-8785
학 교 보 건 계	364-8782	F A X	364-6057-9
		교 육 상 담 실	362-5796
		당 직 실	363-2751

서부소방서

(은평구 녹번동 48-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359-0119	북 가 좌 파 출 소	372-0119
소 방 과	355-1119	(북 가 좌 333 - 9)	
방 호 과	357-8509	연 회 파 출 소	336-0119
구 조 · 구 급 과	382-0119	(연 회 81 - 10)	
F A X	382-1149	홍 은 파 출 소	379-0119
		(홍은2동 11-854)	

중로소방서

(중로구 수송동 146-2)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서	장	실	733-0119	구 조 · 구 급 과			725-3119
소	방	과	723-2124	서 대 문 파 출 소			312-2119
방	호	과	722-0120	(미근 1 6 5)			

우 체 국

우 체 국 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 대 문 우 체 국	참천동 98-3	324-0014
총 정 로 우 체 국	총정로 2가 8-2	362-0014
신 촌 우 체 국	대현동 90-101	362-0205
홍 제 동 우 체 국	홍제1동 158-45	379-3790
모 래 내 우 체 국	북가좌2동 424-29	373-2005
연 희 동 우 체 국	연희2동 90-15	333-6004
연 대 우 체 국	신촌동 134	392-0205
이 대 우 체 국	대현동 11-1	312-0500
명 지 대 우 체 국	남가좌동 50-3	373-0182
경 찰 청 우 체 국	미근동 209	393-2001
홍 제 3 동 우 편 취 급 소	홍제3동 278-10	391-8910
홍 은 3 동 우 편 취 급 소	홍은3동 275-28	395-2749
홍 남 우 편 취 급 소	남가좌2동 338-39	307-2005
독 립 문 우 편 취 급 소	현저동 52-3	312-0225
홍 은 미 성 우 편 물 취 급 소	홍은3동 189-33	3216-6161
미 근 동 우 편 물 취 급 소	미근동 94-1	365-0315

전 화 국

전 화 국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광 화 문 전 화 국	홍제동 전지역	국번 + 0000
불 광 전 화 국	홍은, 남가좌, 북가좌지역	국번 + 0000
신 촌 전 화 국	기타지역	국번 + 0000

의료보험조합

(연희동 134-5)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대 표 이 사	338-1307	징 수 과	3141-2752~4
관 리 과	3141-4386~9	금 여 과	3141-4386~9
총 무 과	326-0658		

초 등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미 동 초 등 학 교	미근동 36	1896	364-6524
경 기 초 등 학 교	충정로2가 70	1965	336-2908
금 화 초 등 학 교	천연동 13	1924	364-9275
대 신 초 등 학 교	대현동 67-1	1965	363-1564
이 화 여 자 대 학 교 사 법	대신동 20	1955	312-5227
대 학 부 속 초 등 학 교			
창 서 초 등 학 교	창천동 53-1	1961	332-9531
북 성 초 등 학 교	북아현 2동 215	1941	362-0669
추 계 초 등 학 교	북아현 3동 190-1	1965	312-7701
연 희 초 등 학 교	연희3동 88-1	1968	336-4597
고 은 초 등 학 교	홍제1동 320	1971	395-6034
안 산 초 등 학 교	홍제2동 산 44	1962	735-3069
홍 은 초 등 학 교	홍제3동 286-5	1974	391-2196
인 왕 초 등 학 교	홍제3동 245-1	1962	391-5972
홍 제 초 등 학 교	홍은1동 산 48	1937	3216-3354
홍 연 초 등 학 교	홍은3동 305	1975	379-6528
연 가 초 등 학 교	남가좌2동 224-228	1973	309-0587
명 지 초 등 학 교	남가좌2동 50-3	1967	309-1839
북 가 좌 초 등 학 교	북가좌1동 376-17	1969	372-4042

중·고등학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인 창 중 · 고 등 학 교	충정로 2가 69	1922	363-3393
동 명 여 자 중 학 교	천연동 31-1	1921	363-5042
금란여자중·고등학교	대신동 113	1960	392-4368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대신동 47	1955	392-2062
한 성 중 · 고 등 학 교	북아현 1동 170-1	1928	363-4943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북아현 3동 190-1	1940	393-5128
서 연 중 학 교	연희1동 산 267-1	1985	332-7376
서울외국인학교	연희3동 55-1	1958	334-3660
신 연 중 학 교	연희3동 산 2-6	1987	379-9233
연 북 중 학 교	연희3동 산 141	1985	332-7377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연희3동 89-1	1968	324-0664
홍 은 중 학 교	연희3동 186-3	1984	3216-0512
정원여자중학교	홍은3동 산 11-97	1969	379-4310
명지중·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48	305-5953
명지여자중·고등학교	홍은3동 354-1	1969	303-9230
연희여자중학교	남가좌2동 368-1	1975	372-2992
한성과학고등학교	현저동 산5	1992	365-2851

대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화번호
경 기 대 학 교	충정로 2가 71	1957	390-5114
감 리 교 신 학 대 학	냉천동 31	1895	361-9114
연 세 대 학 교	신촌동 134	1885	361-2114
이화여자대학교	대현동 11-1	1886	360-2114
서울간호전문대학	홍제3동 287-89	1954	395-8012
명 지 대 학 교	남가좌2동 50-3	1970	300-1700
명 지 실 업 전 문 대 학	남가좌2동 50-3	1974	300-1000
추 계 예 술 학 교	북아현3동 190-1	1974	362-4513

지 하 철

역 명	전화번호	역 명	전화번호
신 촌 역	334-7001	홍 제 역	391-0517
이 대 역	313-9713	무 악 채 역	736-0518
아 현 역	313-9712	독 립 문 역	733-7457
충 정 로 역 (2호선)	313-9711	서 대 문 역	392-5927
충 정 로 역 (5호선)	362-2866	서 울 시 지 하 철 공 사	520-5114

기 차 역

역 명	전화번호	역 명	전화번호
신 촌 역	363-7788	가 좌 역	373-1280

관내소재 기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경 찰 청	363-011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363-9750-1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3708-2525	증 합 사 회 복 지 관	375-5040
프 랑 스 대 사 관	312-3272	금 화 터 널 관 리 사 무 소	363-6866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390-7302	동 아 일 보	334-3689

서대문도서관

(연희동 산2-113)

부 서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전화번호
관 장 실	396-3156	열 략 과	396-3159
서 무 과	396-3157	관 외 대 출 실	379-8619
사 서 과	396-3158	F A X	391-6172